연구보고서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인 쇄 2016년 12월 26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름(주) T. 02-2273-7011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1619-5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 언

WTO DDA 협상은 예상대로 별다른 진전 없이 조기에 제11차 WTO 각료회의(2017년 12월 아르헨티나) 준비단계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등의 협상이 있었지만 주요국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질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환경상품협정(EGA)이나 복수국간서비스협상(TiSA)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주도로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협상들은 타결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쟁, 투자, 환경, 노동 등 선진국들이 신무역이슈로 DDA 편입을 주장해온 분야의 협상 역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는 WTO 회원국들의 깊은 관심 속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향후 DDA에 새롭게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DDA 협상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DDA 협상은 그 성격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60여 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해 컨센서스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기존의 다자적 접근은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관심 있는 회원국끼리 DDA 밖에서 논의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복수국간협상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의도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적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들어 국제무역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무역이 급격히 감소해 좀처럼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으로 이제는 무역과 환경이 조화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을 통해

나타난 세계적인 반무역자유화 정서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그동안 추구해온 글로벌 통상정책을 다시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는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흐름을 분석하여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① 무역자유화 혜택의 확산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나 허가, 해당국의 국내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완화(철폐) 및 투명성 제고 ②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기초로 한 복수국간 협상의 전략적 활용 ③ 무역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조화 ④ 양자 · 지역 통상정책과 다자통상정책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 대책도 주요 의제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본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이효영 부연구위원과 박지현, 이준원 전문연구원, 김도희 연구원 등이 함께 집필하였습니다. 본 연구 초기부터 최종 심의과정까지 좋은 의견을 주신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박다정 서기관, 본원의 김종덕 박사와 최낙균 원내 자문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WTO 다자통상정책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및 관련 전문가는 물론 정부의 통상정책 당국자에게도 의미 있는 보고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원장 **현 정 택**

국문요약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

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 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 2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4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 27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 28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 28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 35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 38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 41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 46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 52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 52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 53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 54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 55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 57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 58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 58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 61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 71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 73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 76
가. 개괄 ····· 76
나. 주요 의제별 전망 ····· 81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 90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 93

1. 단기 DDA 협상 대책 ····· 94
가. 농업 ····· 94
나. NAMA ····· 109
다. 규범: 수산보조금 ····· 118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 121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 121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 123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 125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132

제5장 정책 제언 ····· 135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 136
가. 농업 ····· 136
나. NAMA ····· 138
다. 규범: 수산보조금 ····· 139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 140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 140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 142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 142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143

참고문헌 ····· 144

부록 ····· 149

1. 주요국의 관세수준 ····· 150
가. 전체 ····· 150
나. 농업 ····· 153
다. NAMA ····· 157
2. 우리나라 관세 구조와 특징 ····· 160
가. 농산물 관세 구조와 특징 ····· 160
나. 공산품 관세 구조와 특징 ····· 163
다. 수산물 관세 구조와 특징 ····· 167

Executive Summary ····· 170

표 차례

표 2-1. 기후변화협약 주요 당사국총회 ····· 43
표 2-2. 주요국 국가별 기여방안(INDC) ····· 45
표 2-3.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 46
표 2-4. WTO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 ····· 48
표 2-5. WTO 회원국의 무역구제조치 ····· 49
표 2-6. WTO 회원국의 반덤핑 조사개시건수 ····· 49
표 2-7.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 50
표 3-1. 나이로비 각료선언문 구성과 관련 세부 의제 ····· 59
표 3-2. 나이로비 각료선언 농업분야 합의: 수출보조 철폐시한 ····· 62
표 3-3. 나이로비 각료선언 농업분야 합의: 수출신용 ····· 63
표 3-4. 서비스 국내규제에 대한 규범 제정 제안내용 ····· 85
표 4-1. 4차 의장수정안의 구간별 관세감축에 따른 감축률 ····· 95
표 4-2.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의 평균관세감축률 ····· 96
표 4-3. 민감품목의 관세감축과 TRQ 증량 ····· 98
표 4-4. 개도국 특별 품목 ····· 98
표 4-5.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의 평균관세감축률(특별 품목 고려) ····· 99
표 4-6. 국내보조의 종류 ····· 101
표 4-7.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 ····· 102
표 4-8. 감축보조(AMS) 감축률 ····· 103
표 4-9. 우리나라 총 AMS 한도 변화 ····· 105
표 4-10.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감축률 ····· 106
표 4-11. 우리나라의 블루박스 총액 상한 ····· 107
표 4-12.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기준 ····· 108
표 4-13.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지급 상한액 ····· 109
표 4-14. NAMA 관세감축과 신축성(개도국) ····· 110

표 4-15. 미양허품목/무관세품목 포함 여부에 따른 평균관세 변화 ····· 111
표 4-16.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평균관세감축률 ····· 111
표 4-17. 미양허품목/무관세품목 포함 여부에 따른 평균관세 변화 ····· 113
표 4-18.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평균관세감축률(수산물) ···· 114
표 4-19.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평균관세감축률 ····· 116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 24
그림 2-1. 세계 수출 물량 · 단가 · 금액 증가율 ····· 29
그림 2-2. 세계 교역량 증가율 · GDP 성장률 추이 ····· 29
그림 2-3. 그룹별 경제성장률 추이 ····· 30
그림 2-4. 그룹별 투자증가율 추이 ····· 30
그림 2-5. 중국의 경제성장률, 고정투자자산, 수입증가율 추이 ····· 31
그림 2-6. 신흥개도국의 수입물량 및 Inward-FDI 추이 ····· 31
그림 2-7. 세계 중간재 무역증가율 ····· 32
그림 2-8. 주요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 ····· 32
그림 2-9. 세계 교역의 무역장벽 추이 ····· 34
그림 2-10. 무역장벽에 따른 수입 둔화 비교 ····· 34
그림 2-11.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2008년 10월 이후 누적) ····· 51
그림 2-12. WTO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 ····· 51
그림 2-13. G20의 무역제한조치 ····· 51
그림 4-1. 감축방식별 관세감축 이후 잔여관세수준(특별 품목 미고려) ·· 97
그림 4-2. 감축방식별 관세감축 이후 잔여관세수준(특별 품목 고려) ···· 100
그림 4-3.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양허관세율 변화 ····· 112
그림 4-4.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양허관세율 변화 ····· 115
그림 4-5. 계수 8의 스위스 공식과 평균감축(77.7%)에 따른 양허관세율 변화 ····· 115
그림 4-6.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적용 시 기준 양허관세율 변화: 신축성 1과 신축성 2 ····· 117
그림 4-7.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적용 시 영향: 신축성 1과 신축성 2 ····· 117

부록 표 차례

부표 1-1.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전체) ····· 151
부표 1-2.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전체) ····· 152
부표 1-3.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농산물) ····· 154
부표 1-4.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농산물) ····· 155
부표 1-5.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NAMA) ····· 158
부표 1-6.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NAMA) ····· 159
부표 2-1. 농산물 관세 분포도 ····· 161
부표 2-2. 공산품 유별 미양허 세번 ····· 163
부표 2-3. 공산품 양허관세구조 ····· 165
부표 2-4. 수산물 미양허 세번 개수 및 분포 ····· 167
부표 2-5. 수산물 양허관세구조 ····· 168

부록 그림 차례

부그림 1-1.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전체) ····· 151
부그림 1-2.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전체) ····· 153
부그림 1-3.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농산물) ····· 155
부그림 1-4.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농산물) ····· 157
부그림 1-5.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NAMA) ····· 158
부그림 1-6.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NAMA) ····· 160
부그림 2-1. 농축산물 양허관세 ····· 162
부그림 2-2. 농축산물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 162
부그림 2-3. 공산품 양허관세 구조: 관세수준별 분포 ····· 166
부그림 2-4. 공산품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구조 ····· 166
부그림 2-5. 수산물 양허관세: 관세구간별 분포 ····· 169
부그림 2-6. 수산물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구조 ····· 169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WTO DDA 협상은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와 개발 등 일부 의제에서 각료합의를 도출하는 최소한의 성과(소위 나이로비 패키지)를 거두었다. 그러나 향후 DDA 협상의 전개방향을 가늠할 DDA 지속 여부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된 주장을 나란히 병기하고 있다.[1] 이를 반영하듯 2016년 DDA 협상은 전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2017년 12월로 예정된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준비과정으로 성과 도출이 가능한 의제를 타진해보는 수준에 머물렀다.[2]

반면 DDA 밖의 복수국간협상인 환경상품협정(EGA),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등은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미국이 이를 주도하면서 EGA와 TiSA 협상은 나름 진전을 보였다. DDA 수산보조금도 미국의 주도로 DDA 밖에서 새로운 복수국간협상이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 DDA 협상은 멈춰져 있는 가운데 관심 있는 국가끼리의 복수국간협상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주장해온 신무역이슈도 점차 그 모양을 갖추고 있다. 2016년 DDA 협상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DDA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투자, 경쟁, 중소기업 등을 DDA 신

1) 나이로비 각료 선언문은 "DDA의 지속 여부와 관련하여 2001년 DDA 출범 당시, 그리고 그 이후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결정을 재확인하고, 또한 그러한 기초 위에서 DDA를 종료해야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many Members reaffirm the DDA, and the Declarations and Decisions adopted at Doha and the Ministerial Conferences held since then, and reaffirm their full commitment to conclude the DDA on that basis)"는 개도국 주장의 표현이 있는가 하면 "다자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바 Doha 지침(mandate)을 재확인하지 않는다(Other Members do not reaffirm the Doha mandates, as they believe new approaches are necessary to achieve meaningful outcomes in multilateral negotiations)"는 선진국 주장의 표현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서진교, 이효영(2016, p. 15, 재인용).

2) 2016년 DDA 협상은 농업, NAMA, 서비스 등 전통적인 주요 협상의제에서는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1년도 더 남은 2017년 12월 각료회의에서 성과를 낼 만한 의제 찾기로 협상의 성격이 변하였다.

규의제로 선정하여 DDA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규의제로의 편입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WTO 회원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이러한 신규의제 도입 주장에 아직은 부정적이다. 이는 신규의제 도입으로 자칫 개도국의 관심의제인 농업, 개발 등 기존 DDA 의제 논의가 지연될 수 있으며, 동시에 신규의제 도입이 개도국에 이익이 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이러한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의제 안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자리잡았고, 협상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다. 기존 농업과 NAMA의 의장수정안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비록 초기이지만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DDA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30년의 평균증가율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확산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 내지는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중간재 무역이 줄어들고 정보통신 및 서비스 무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 감소에 대하여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DDA와 같은 다자무역자유화 협상의 부진도 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

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그동안 추진되어온 무역자유화 혜택이 구조적으로 대기업이나 자본가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들과 일반 중산층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정책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고, 이로 인해 국제무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의 불확실성과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구조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DDA 협상은 경우에 따라 지금까지 협상을 토대로 만든 농업과 NAMA의 의장수정안이 일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선진국의 의도대로 NAMA 대상 중 주요 부분만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그들끼리 무역자유화가 진행된다면 NAMA는 사실상 죽은 협상이나 다름없고 DDA 밖에서 그러나 WTO 틀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복수국간협상이 자리잡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DDA 전체로도 개발이나 개도국우대에 대하여 큰 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타협이 도출되지 않으면 일괄타결방식의 컨센서스에 의존한 현재의 DDA 실패와 함께 WTO의 무역협상기능 신뢰상실로 WTO 존립 자체가 의심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DDA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처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정부의 DDA 대책 수립에 긴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DDA를 포함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 대책을 포함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함에 있어 이 연구는 제10차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후

전개될 포스트 나이로비 DDA의 전개방향을 전망한 후 예상되는 분야별·쟁점별 주요 의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감안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나이로비 각료회의 합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둘째,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DDA 협상은 어떠한 의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인가?

셋째, 새로운 DDA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와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넷째, 최근 국제무역의 구조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특징 및 변화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이 다자통상질서의 변화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섯째,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기초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DDA 협상 대책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최근 국제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감소현상과 함께 복수국간협상의 확산, 신무역이슈의 부상, 기후변화, 반무역자유화 정서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이 포스트 나이로비 DDA 및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수립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을 전망하기 위해 먼저 나이

로비 각료회의의 의미를 파악하고 평가한 후 향후 전개될 DDA 협상의 방향을 전망하였다.

이후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결과에 기초하여 단기적으로 새로운 DDA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책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무역구조의 변화 및 DDA 협상을 포함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이 연구의 결과로서 정책제안을 담았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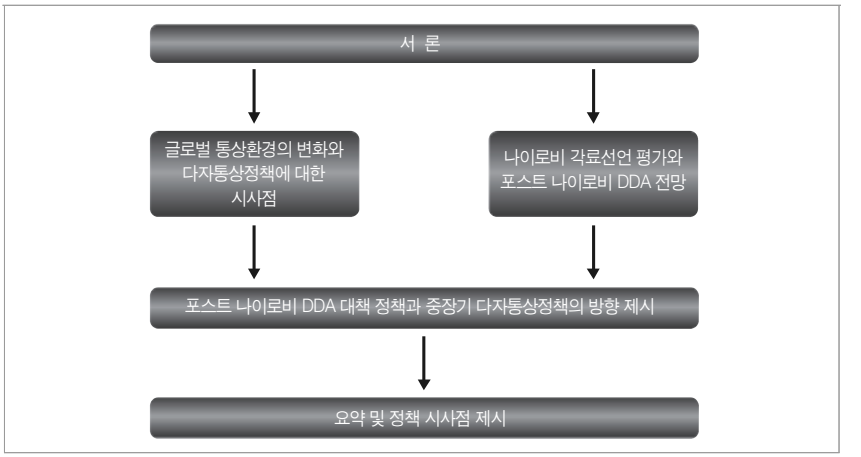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WTO DDA 협상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WTO DDA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떨어진 데도 기인하지만 DDA 논의 자체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져 계속해서 DDA 동향을 추적하

지 않으면 최근의 논의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통상연구를 계속 이어간다는 데 이 연구가 갖는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나이로비 각료결정의 의미를 평가하고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 방향을 전망해 2017년 12월로 예정된 제11차 각료회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크다. 국내에서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WTO 및 DDA 협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이 연구가 최초다. 그러함에 있어 DDA의 개별 의제별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심층분석해 포스트 나이로비 협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정책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DDA 협상의 핵심 의제인 농업과 NAMA에서의 주요 이슈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향후 협상 대책 수립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DDA 협상 대책은 이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차별성과 기여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및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기존 관련 연구들은 글로벌 무역감소나 메가 FTA, 브렉시트, 반무역정서 등 개별 이슈에 대한 처방에 치중한 결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보는 거시적 정책 처방이 미흡하였다. 반면 이 연구는 최근 글로벌 무역 감소라는 국제무역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시작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화와 그에 따른 특징, 정보통신 및 서비스무역의 증가현상, 선진국 주도의 새로운 DDA 2.0의 개시,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약속과 신규 무역장벽으로서의 환경규제 가능성, DDA 밖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연구만이 갖는 차별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이 장에서는 최근 국제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상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그것이 DDA 및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글로벌 무역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 주기적인 원인도 있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이 안정화되면서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다. 아울러 서비스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확산도 글로벌 무역 감소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TPP, TTIP 등 메가 FTA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 정부조달협정(GPA), 정보통신확대협정(ITAII), 환경상품협정(EGA), 복수국간서비스협상(TiSA) 등과 같이 DDA를 벗어나 WTO 안에서 관심 있는 국가끼리의 복수국간협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도출로 인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국의 EU 탈퇴 등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정서의 확산 등으로 통상정책의 일대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세계교역은 2003~08년 세계경제의 호조와 국제분업의 확대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다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2012년 이후는 실질 세계 수출증가율이 3%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세계 교역증가율은 1987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약 30년 동안 연평균 7%씩 증가해 세계 GDP 증가율의 약 2배를 넘어선 것과 비교해보면 단순히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림 2-1. 세계 수출 물량 · 단가 · 금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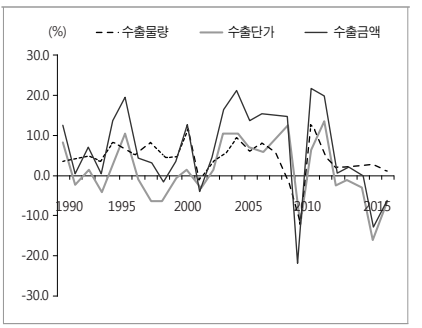

자료: 문병기(2016, p. 1, 재인용).

그림 2-2. 세계 교역량 증가율 · 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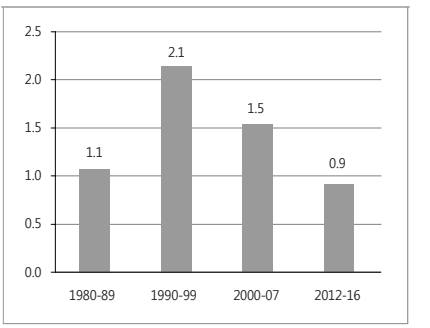

자료: IMF(2016.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6. 10. 5).

이러한 글로벌 무역 감소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3] 먼저 경기순환적인 요인으로 ①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경기회복의 지연 ② 중국 등 신흥국들의 투자 부진 ③ 자원수출국 경기침체 등이 글로벌 무역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기순환적인 원인 이외에 다음과 같은 ① 선진국 경제의 중심축 변화 ② 글로벌 공급과잉 ③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안정화 내지 성숙 ④ 중국의 상대적인 부품제조 경쟁력 강화 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무역 확대 등도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확대도 글로벌 무역 감소의 원인으로 추가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및 정보통신 산업으로 변함에 따라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것이 제조업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였으며 공급과잉 속에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조치가 심화되었고, 결국 글로벌 무역 감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4] 다음에

3) 글로벌 무역 감소의 원인에 대하여 많은 기존 연구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주로 다음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A VoxEU(2015),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 edited by Hoekma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6), "Does the Global Trade Slowdown Matter?"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673, World Bank Group; Hong Gee Hee *et al.*(2016), "China and Asia in Global Trade Slowdown," IMF Working Paper WP/16/105.

서는 이와 같은 글로벌 무역 감소의 원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1) 경기순환적 요인

글로벌 무역 감소의 경기순환적 요인 중 첫 번째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이다. [그림 2-3]에서 보듯이 세계경제 성장률은 최근 들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추세를 비교하면 선진국의 경기회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4%대 성장세를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2% 이하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도국도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각국의 투자증가율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2-4).

두 번째로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투자부진을 들 수 있다. 2015년 10월 중국의 18기 5중 전회에서 13차 5개년계획(2016~20년)기간 중속성장이 발표된 바 있다. 중국의 중속성장정책 채택으로 과거 30년 동안의 고속성장시대가 끝나고 중속성장시대로 돌입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추세는 향후

그림 2-3. 그룹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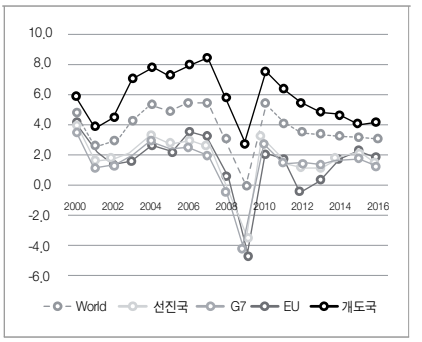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검색일: 2016. 10. 5).

그림 2-4. 그룹별 투자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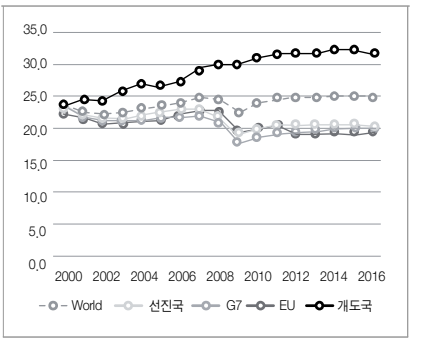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Database (검색일: 2016. 10. 5).

4) IMF(2016. 9. 27)에 따르면 2012~15년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조치의 적용을 받은 상품의 실질 수입 증가율이 2003~07년대비 약 7.5% 감소하였다.

10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투자와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중심 성장으로의 변화가 중국의 수입증가율을 떨어뜨렸으며,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역시 2013년 19.1%에서 2015년에는 9.8%까지 하락하였다.

중국 이외에 신흥국들 또한 투자가 부진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신흥국의 FDI 유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면서 2012년 이후 한 자릿수 증가로 떨어졌다. 신흥국들의 투자 역시 M&A형 FDI 비중이 늘어나면서 투자와 생산에 영향을 주는 그린필드형 FDI 비중이 낮아진 점도 신흥국의 수입수요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5)]

세 번째, 원자재 수출국의 수출가격 하락에 따라 자원수출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무역이 감소했다. 최근 에너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가격은 2014년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수출국은 경기침체를 겪게 되고,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글로벌 무역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6)]

그림 2-5. 중국의 경제성장률, 고정투자자산, 수입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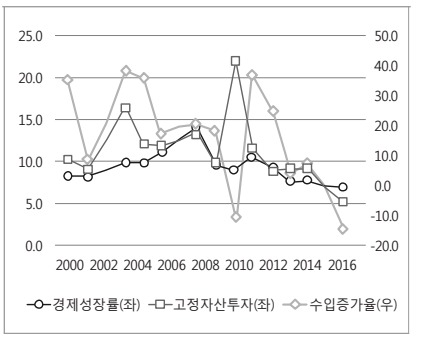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검색일: 2016. 10. 5).

그림 2-6. 신흥개도국의 수입물량 및 Inward-FD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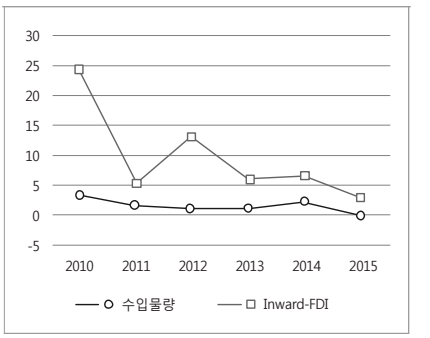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Database (검색일: 2016. 10. 5).

5) UNCTAD(2015),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또한 신흥국의 FDI 유입과 수입물량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약 0.83으로 투자 둔화가 수입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6) 문병기(2016), p. 6.

2) 구조적 원인

경기순환적 요인만으로 글로벌 무역 감소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구조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첫째는 선진국 경제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및 ICT 산업으로 이동한 것을 들 수 있다. 과거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제조업 관련 품목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동력이 서비스와 ICT 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제조업 상품의 교역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세계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상품교역이 둔화되면서 글로벌 무역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성숙 내지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 감소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GVC의 성숙으로 인해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둔화되었는데 세계 중간재 무역증가율은 1991~2000년 45.1%였으나, 2001~10년 9.2%로 급락했으며, 2011~14년에는 4.4%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은 선진국의 생산시설 복귀(Reshoring)현상과 맞물려 글로벌 무역 감소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1990~2000년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Offshroing)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생산시설 복귀가 일어나면서 선진국의 소비시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현상이 늘어났다. 이

그림 2-7. 세계 중간재 무역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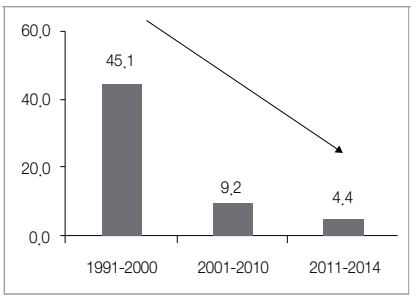

자료: 문병기(2016, p. 7, 재인용).

그림 2-8. 주요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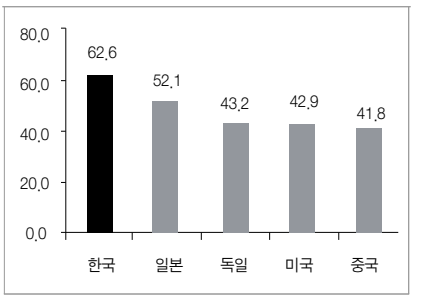

자료: 문병기(2016, p. 7, 재인용).

런 생산시설 복귀현상의 원인으로 개도국에서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선진국과의 임금차이 축소와 개도국 경제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노사분규의 확대, 신규 노동 인력의 진입 둔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약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률과 유연 근로제 확대, 선진국 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확대, 비즈니스 환경 및 소비자 접근성 우위,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 복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7)]

다른 한편 개도국 요인으로 대규모 생산시설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재고 부담 및 품질관리비용의 증가, 선진 소비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어려움 등과 같은 공급 측면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시장규모, 수송거리, 산업클러스터 활용 등을 감안한 소비국에서의 적정규모의 생산기지 건설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Lenovo사가 미국 소비자를 위한 신속한 운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현지 컴퓨터 조립공장을 준공한 것을 들 수 있다.[8)] 이렇게 생산기지의 복귀 및 현지화(Localization)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세 둔화 내지 안정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는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로 인해 가공무역이 감소하여 세계적인 무역 감소가 나타났다. 중국의 성장정책 변화에 따라 내수 중심의 성장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내 생산부품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중간재를 이용한 가공무역이 감소하게 되었다. 중국의 해관통계에 따르면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 전체 무역의 31.5%를 기록하였다. 반면 가공무역의 현지 조달률은 2000년대 초반 30% 수준에서 2010년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8감소에 일조했다고 보는 것이다.[9)] 또한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부품을 중국 국내에서 조달하면서 최근 GVC의 비중이 하락하며 무역 감소를 초래하였다.

---

7) 장상식, 강내영(2014), p. 8.
8) 위의 책.
9) 중국해관통계 DB(검색일: 2016. 10. 5).

넷째는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어 실제 상품이 아닌 데이터 거래가 늘어나 집계되는 교역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내외 상품과 거래에 기술이 도입되고 인터넷 인프라, 기업 내 전자적 업무,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디지털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무역이 증가하고, 개인소비자들이 인터넷상 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실제 상품이 아닌 데이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2014년 2,360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에는 9,94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Ali Research 2016. 9).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세계무역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세계무역을 주도하는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왔다. 또한 교역효과가 낮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내수성장을 추진하면서 국가간 교역수요도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아 글로벌 수입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세계 교역의 무역장벽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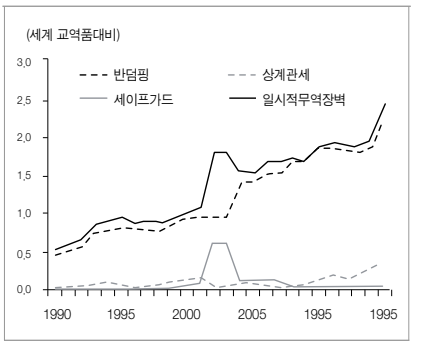

자료: 장상식, 강내영(2014, p. 9, 재인용).

그림 2-10. 무역장벽에 따른 수입 둔화 비교

(단위: %p)

자료: 장상식, 강내영(2014, p. 9, 재인용).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1)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원인

가) 다자통상협상방식의 한계

DDA 밖에서 복수국간협상이 확산하게 된 근본원인은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 자체의 한계에 있다.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은 15년이 지났음에도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사실상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교착상태의 지속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164개 WTO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각각의 이해를 조율하여 타협점을 도출하는 컨센서스 방식의 의사결정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160여 개 회원국 모두의 협상이 아닌 관심 있는 회원국끼리, 또는 상호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회원국간의 대안적 무역자유화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10)]

이러한 복수국간협상은 상대적으로 타협안 도출이 용이하며, 실제로 DDA 출범 이후 성과로 꼽히는 협상은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는 정부조달협정, 정보통신확대협정 등 모두 복수국간협상이었다. 이에 지난 나이로비 각료회의부터 선진국들은 현재와 같은 DDA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는 불가능하고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해 여기서의 합의결과를 점진적으로 다자화하는 협상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WTO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국 전체의 이해를 조정하는 협상은 합의안 도출이 그만큼 어려운 반면, 세계 시장이나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국가들끼리 모여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이를 이행하면

---

10) 물론 이것의 다른 한 방향은 양자 내지 다자 FTA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양자 FTA가 확대되면서 FTA의 배타적 선점효과(혹은 배타적 특혜이익)는 줄어들고 대신 스파게티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양자 FTA보다 지역 내 공통의 무역규범 적용이 가능한 광역화 또는 다자화된 FTA가 부상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형태가 TPP와 같은 메가 FTA이다.

서 참여국 수를 늘려 점자 다자화하는 방안은 다자협상방식이 갖는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다.[11)]

나) 선진국의 주도권 유지 및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복수국간협정이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다자협상에 대한 선진국들의 불만이 복수국간협정의 확산 밑바닥에 내재되어 있다. 먼저 기존 다자협상에서의 논의는 WTO 전체 회원국의 3/4이 넘는 다수 개도국들이 참여하는 만큼 개도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DDA 협상에서는 개발이 근본정신이기 때문에 이전 라운드와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자연히 협상 결과는 이전보다 대폭 확대된 개도국우대로 귀착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개도국우대 논의가 적은 대안을 찾게 되었고 복수국간협정은 이러한 대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복수국간협정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예외 논의가 기존의 DDA 다자협상만큼 강하지 않다. 특히 DDA 밖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개발'이란 근본적인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자연히 선진국들은 복수국간협정을 선호하면서 이를 통해 다자협상에서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복수국간협정의 이면에는 선진국들이 주요 이슈를 이끌어 나가면서 세계무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우대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신무역이슈 또한 복수국간협정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실제 무역현장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신무역이슈는 글로벌 무역규범의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WTO 다자 차원에서의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그

11) 복수국간협상이 합의결과를 놓고 최혜국대우원칙에 기초해 WTO 전체 회원국에 적용할지 아니면 협정에 서명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한다는 다자화에는 이견이 없다.

마저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곧바로 다른 대안을 찾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진국들이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면서 신무역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역시 복수국간협정을 확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12)]

2) 복수국간협정의 특징

가) 대부분 즉시 관세철폐가 목표

복수국간협정은 기본적으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NAMA의 분야별 무세화(sectoral)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협상 초기 대상품목을 선정할 때부터 참가국간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된다. 그리고 협상을 거듭하면서 주고받기 끝에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

초기부터 대상품목 선정에 참여국간 입장 대립이 큰 이유는 시장개방의 폭 때문이다. 일단 대상품목에 포함되면 즉시 관세철폐를 목표로 빠른 관세철폐가 일어나고 예외도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초기 협상에서 대상품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협상의 90%를 좌우한다. 물론 협상 대상품목이 되어도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즉시 관세철폐보다는 일정한 이행기간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즉시 관세철폐가 협상의 원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수국간협상은 일반무역자유화 협상보다 개방 폭이 크며, 속도도 급진적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WTO 회원국에도 MFN 차원에서 개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그만큼 협상에 신중해지는 특성도 있다.

나)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예외 인정

복수국간협정이 즉시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매우 제한된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약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이외에 대부분의

12) 물론 이러한 이유들이 메가 FTA 등 다자 FTA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의무이행은 선진국과 동일하다. 따라서 개도국우대가 그만큼 적용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는 복수국간협상의 태생적 특징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순간 이미 즉시 관세철폐라는 분야별 무세화의 특성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개도국의 상당수는 대개 복수국간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세계무역에서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경우 무언의 참여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수국간협정의 성공 여부가 해당 분야의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보통 세계무역의 85~90%가 복수국간협정 출발의 필요조건이다) 세계무역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개도국들의 해당 품목 복수국간협정의 참여 압박은 큰 편이다.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1) 신무역이슈 부상의 배경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심화와 함께 국경간 거래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기존의 상품 및 관세 중심의 무역현안이 무형의 서비스 및 국내 규제 등 비관세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자상거래나 국영무역, 노동, 환경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무역이슈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무형의 무역장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제통상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주목되는 분야가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및 경쟁, 환경 등이다.

전자상거래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른 국제무역규범의 정립이 요청되는 분야로 부상하였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중소기업들도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 회원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상거래의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한편 향후 무역과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가능하게 할 신분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13)]

경쟁정책은 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어 무역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불가분의 보완재이다. 특히 경쟁정책은 그 효과적 집행을 통해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성장기회를 박탈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중소 경제주체도 무역과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포용적(inclusive)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쟁정책의 핵심은 세계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영기업 문제이다. 즉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상업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특혜조치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포용적 경제성장에도 저해된다는 논리이다.

그동안 경쟁정책은 지난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를 통해 DDA 의제로 정식 도입되었으나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반발로 의제에서 사라진 경험을 가지고 있어 아직은 선진국들도 경쟁이슈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국영기업이라는 특정 이슈로 좁혀 개도국, 특히 시장경제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회원국들의 국내 국영기업을 적절히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각국의 동참을 통해 해결가능한 글로벌 기후변화문제와 생물자원의 보존문제는 어제오늘의 현안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는 규제 및 정책수단들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도입과 이행이 국제무역규범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13) ICTSD and WEF(2016), "Strengthening the Global Trade and Investment System in the 21st Century," pp. 38-40.

2) 신무역이슈 관련 무역규범 동향

기존 GATT/WTO 체제하에서는 신무역이슈에 대한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자적 차원에서의 규범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 사이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개도국들의 우려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 현안들은 다자협상 의제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한편 신무역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는 교역국들에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 지역무역협정 또는 FTA를 통해 신무역이슈에 대한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양자 FTA를 통한 무역규범은 체결당사국에만 강제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FTA별로 상이한 자유화 수준과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국제통상 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우며, 법적 구속력 또한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TPP와 같은 메가 FTA에서의 협정은 12개국에 적용되므로 보다 다자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TPP 역시 WTO 다자규범에 비하면 부분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 협정은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환경, 노동 관련 별도의 챕터를 도입하여 이 분야들의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챕터는 이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간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영기업 관련 챕터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상업적 활동영역에서 공기업이 특혜지원을 받아 불공정경쟁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다. 환경 챕터는 해양환경의 보호,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보조금 금지 등 그동안 무역규범에서 다루지 못한 환경 관련 의제들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어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노동 챕터는 그동안 미국 중심의 양자 FTA에서만 규율하던 노동 관련 규정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에도 적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무역이슈의 국제규범화는 TPP와 같은 메가 FTA뿐 아니라 해당 이슈만을

다루는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형태로도 도입되고 있다. 2015년 말 타결된 확대 정보통신기술협정(ITA)이나 2016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한창인 환경상품협정(EGA), 서비스무역협정(TiSA)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EGA는 글로벌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304개 품목으로 구성된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환경상품의 관세율 인하 및 철폐를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미국은 수산보조금 규제를 위한 복수국간협상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복수국간무역협정 형태의 이슈별 규범화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향후 국제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 중 하나는 기후변화협상이다.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이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기후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후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기후변화체제 진행과정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처음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개별 국가의 능력을 고려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작성, 갱신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특징은 국가별로 차등화된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으

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당시 OECD 국가들을 위주로 의무가 부여되었다. 개도국들은 감축의무가 없는 가운데 일부 국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범주로 분류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획기적인 이정표는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먼저 주요 온실가스[14]를 정의하고,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8~12년 제1차 공약기간 동안 부속서 I 국가[15]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또한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 등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1차 공약기간 종료에 대비,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을 채택하고 post-2012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감축의무, 개도국 재정지원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대립으로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post-2012 체제 출범은 제15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2012년 제18차 당사국회의(COP18)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을 2013~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이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18% 감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2차 공약기간 중에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드러냈다.[16]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

14)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수소불화탄소(HFC_S), 육불화황(SF_6), 삼불화질소(NF_3), 과불화탄소(PFC_S), 아산화질소(N_2O).

15) 부속서 I에는 감축의무를 가지는 국가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협약 당시 OECD 회원국들 중심의 선진국이다. 부속서 II 국가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축의무를 가지지 않는 개도국들은 비부속서 I(non-Annex I)로 분류되었다.

16)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캐나다는 1차 공약기간 이후 탈퇴하였다.

감축의무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주장에 대해 개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왔다는 책임을 들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는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협상을 출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상에서는 2015년까지 post-2020 체제를 위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모든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의정서와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문

표 2-1. 기후변화협약 주요 당사국총회

구분	일시	주요 진행경과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2. 6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에 따라 당사국 능력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감축 약속
기후변화협약 발효	1994. 3	
제3차 당사국총회 (COP3)	1997. 12	교토의정서 채택, 제1차 공약기간(2008~12년) 동안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 규정
제7차 당사국총회 (COP7)	2001. 3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채택(마라케시 합의문)
제13차 당사국총회 (COP13)	2007. 12	발리행동계획 채택, post-2012 체제 출범 합의
제16차 당사국총회 (COP16)	2010. 12	칸쿤 합의문 채택, 선진국,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약속 이행 합의
제17차 당사국총회 (COP17)	2011. 11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년) 설정, 더반 플랫폼 협상 출범 합의(post-2020 협상 개시)
제18차 당사국총회 (COP18)	2012. 12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
제20차 당사국총회 (COP20)	2014. 12	기후행동(climate action)에 대한 결정문 채택, 국가별 기여방안(INDC) 결정문 채택
제21차 당사국총회 (COP21)	2015. 12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 채택

자료: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ihoo.or.kr/portal/2013_Portal/measure/international.jsp(검색일: 2016. 10. 19); 외교부, http://www.mofa.go.kr/trade/greengrowth/climatechange/index.jsp?mofat=001&menu=m_30_150_20(검색일: 2016. 10. 20)을 참고로 저자 정리.

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에서는 '의도된 국가별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해당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INDC를 담은 결정문이 채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제21차 당사국회의(COP21)에서 선진국, 개도국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2)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채택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자통상정책 수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리협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목표)에서 산업화 이전대비 온도상승을 2℃보다 상당 수준 낮게 유지하고,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4조에서 당사국은 스스로 정한 감축목표(국가별 기여방안, INDC)를 5년마다 제출해야 하고, 5년마다 제출되는 새로운 INDC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제6조에서 당사국은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이 허용된다. 또한 선진국은 개도국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제9조), 선진국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개도국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이전을 강화하고(제10조),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1조).

특히 이번 협약은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차원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이와 같이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재원,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이행점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달리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서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INDC)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NDC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2016년 10월 현재 감축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190개 당사국이다.[17]

한편 공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의 종료 시 새로운 협상이 지속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이번에 합의된 파리협정은 종료시점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파리협정의 발효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 및 55개 국가 이상의 당사국이 비준한 뒤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표 2-2. 주요국 국가별 기여방안(INDC)

국가	기준연도	목표연도	감축목표(%)	목표유형
미국	2005	2025	26~28	절대량
EU	1990	2030	40	절대량
중국	2005	2030	60~65	집약도
러시아	1990	2030	25~30	절대량
캐나다	2005	2030	30	절대량
호주	2005	2030	26~28	절대량
인도	2005	2030	33~35	집약도
일본	2013	2030	26	절대량
한국	-	2030	37	BAU

주: 절대량은 기준연도 배출량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집약도는 배출량/GDP 기준으로 목표 설정, BAU는 목표연도의 배출 전망치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자료: UNFCCC, INDC portal, http://unfccc.int/focus/indc_portal/items/8766.php(검색일: 2016. 10. 24); 환경부(2016), 『파리협정 길라잡이』, p. 22.

17) UNFCCC, INDC portal, http://unfccc.int/focus/indc_portal/items/8766.php(검색일: 2016. 10. 24).

표 2-3.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범위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 강화, 투명성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1차 공약기간: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2% - 2차 공약기간: 평균 18% 감축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2℃보다 상당 수준 낮게 유지, 온도수준을 1.5℃ 이하로 제한
감축대상국	선진국 위주	선진국, 개도국
감축목표 설정 방식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지속 가능성	공약기간에 종료시점 있음.	종료시점을 규정하지 않음.
참여자	국가 중심	국가, 다양한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 독려
적용기간	1차 공약기간: 2008~12년 2차 공약기간: 2013~20년	2020년 이후

자료: 외교부, http://www.mofa.go.kr/trade/greengrowth/climatechange/index.jsp?mofat=001&menu=m_30_150_20(검색일: 2016. 10. 20); 환경부(2016), 『파리협정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1) 반무역자유화와 보호주의 확산 원인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무역자유화 및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원인은 먼저 세계경제의 회복이 둔화됨에 따라 많은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경기회복 둔화로 자국 산업 성장 중심의 내수성장과 자국 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국제무역이 위축되고 반무역정서가 증대되었다.

다른 한편 그동안 추구해온 무역자유화 정책도 반무역자유화 정서 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상품의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에서의 장벽 이외에 국경 너머의 다양한 통관절차나 국내규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

벽 및 규제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는데,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 너머의 절차나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 등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국경 너머의 복잡한 절차와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고, 대기업만이 시장진입에 성공해 상대적으로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같은 논리가 자본가 계층에도 적용되어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18)]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나타난 것이 영국의 EU 탈퇴로 해석해볼 수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역시 그동안의 무역자유화가 초래한 소득격차 확대나 불평등의 심화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반무역자유화와 보호주의의 확산은 WTO 등 다자무역협상의 부진과도 연결되어 있다. WTO/DDA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경제성장동력으로서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관심 있는 국가들만의 양자 FTA나 메가 FTA, 복수국간협상으로 나타나 무역자유화나 혜택이 다자 차원에서 공유되기보다 특정 그룹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보호무역주의 최근 현황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0월 중순~2016년 5월 중순 사이 총 154건(전년대비 48% 증가)의 무역제한조치가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월평균으로도 22건으로 2011년(23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18) 물론 글로벌 무역자유화에 따라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부문의 인력을 재교육시켜 생산성을 높이면서 그들에게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분배하는 국내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실패도 반무역자유화 정서 확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기성세대, 기성정치, 기성제도에 대한 불만을 초래했고 브렉시트나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수입 관련 무역제한조치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가장 높으며, 뒤를 이어 통관절차가 22%를 차지하였다. 한편 무역구제(trade remedy)[19]조치는 174건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다. 이 중 반덤핑조치가 133건으로 전체 무역구제조치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의 월평균 신규 조사개시건수는 17건으로 전년도 13건에 비해 31% 증가하였다. 신규로 조사개시된 무역구제조치(118건)는 세계 상품수입의 0.38%로 종료(56건)된 조치의 0.0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20]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덤핑의 조사개시건수를 보면,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173건, 165건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도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770건으로 반덤핑 조사개시건수가 가장 많고 그 다

표 2-4. WTO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

(단위: 건 수)

	2011. 10 ~2012. 10	2012. 10 ~2013. 11	2013. 11 ~2014. 10	2014. 10 ~2015. 10	2014. 10 ~2015. 5	2015. 10 ~2016. 5
수입	**118**	**153**	**119**	**136**	**77**	**116**
- 관세	54	106	74	88	52	66
- 통관절차	38	25	26	20	10	25
- Tax	6	6	7	11	4	11
- 수량제한	20	15	11	11	6	10
- 기타	0	1	1	6	5	4
수출	**32**	**27**	**36**	**31**	**18**	**24**
- Duties	8	4	12	13	8	4
- 수량제한	24	11	12	5	1	7
- 기타	0	12	12	13	9	13
기타	**14**	**10**	**13**	**11**	**9**	**14**
합계	**164**	**190**	**168**	**178**	**104**	**154**
월평균	13.7	14.6	15.3	14.8	14.9	22.0

자료: WTO(2016e), WT/TPR/OV/W/10, p. 23.

19)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20) WTO(2016d), WT/TPR/OV/W/10.

음으로 미국(569건), EU(480건), 브라질(392건) 순이다. 우리나라는 131건으로 12번째이다. 2015년 들어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 조사개시건수가 증가하였다.

표 2-5. WTO 회원국의 무역구제조치

(단위: 건 수)

	2013. 11~2014. 10		2014. 10~2015. 10		2014. 10~2015. 5		2015. 10~2016. 5	
	개시	종료	개시	종료	개시	종료	개시	종료
반덤핑	134	133	130	111	74	62	88	45
상계관세	21	15	21	14	13	9	17	5
세이프가드	16	18	14	7	5	6	13	6
합계	171	166	165	132	92	77	118	56
월평균	15.5	15.1	13.8	11.0	13.1	11.0	16.9	8.0

자료: WTO(2016d), WT/TPR/OV/W/10, p. 22.

표 2-6. WTO 회원국의 반덤핑 조사개시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995년 이후 합계
인도	47	55	31	41	19	21	29	38	30	**770**
미국	28	16	20	3	15	11	39	19	42	**569**
EU	9	19	15	15	17	13	4	14	12	**480**
브라질	13	24	9	37	16	47	54	35	23	**392**
아르헨티나	7	19	28	14	7	12	19	6	6	**322**
호주	2	6	9	7	18	12	20	22	10	**299**
남아공	5	3	3	-	4	1	10	2	-	**229**
중국	4	14	17	8	5	9	11	7	11	**229**
캐나다	1	3	6	2	2	11	17	13	3	**199**
터키	6	23	6	2	2	14	6	12	16	**196**
멕시코	3	1	2	2	6	4	6	14	9	**138**
한국	15	5	-	3	-	2	8	6	4	**131**
기타	25	30	71	39	54	51	64	48	64	**1033**
합계	**165**	**218**	**217**	**173**	**165**	**208**	**287**	**236**	**230**	**4,987**

자료: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16. 10. 24).

세계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도 증가하고 있다. G20 국가들의 무역 관련 조치를 분석한 WTO(2016)[21]에 따르면, 2015년 10월 중순~2016년 5월 중순 기간 동안 G20 국가들의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145건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월평균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21건으로 전년도 17건에 비해 24%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45건의 무역제한조치 중 무역구제조치가 89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구제와 수입제한적인 조치들은 G20 수입액의 0.94%, 세계 상품수입액의 0.73%를 차지하고 있다.[22]

표 2-7.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단위: 건 수)

기간	무역구제	수입	수출	기타	전체	월평균
2011.10~2012. 5	66	39	11	8	124	17.7
2012. 5~2012.10	46	20	4	1	71	14.2
2012.10~2013. 5	67	29	7	6	109	15.6
2013. 5~2013.11	70	36	8	2	116	19.3
2013.11~2014. 5	66	25	17	4	112	18.7
2014. 5~2014.10	54	25	9	5	93	18.6
2014.10~2015. 5	71	32	10	6	119	17.0
2015. 5~2015.10	48	26	11	1	86	17.2
2015.10~2016. 5	89	38	8	10	145	20.7

자료: WTO(2016e), "Reports on G20 Trade and Investment Measures," p. 17.

G20 국가들의 2008년 이후 신규 무역제한조치 누적건수는 2016년 5월까지 1,583건을 기록하였고, 이 중 387건은 종료되었다. 현재 1,196건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해 10% 증가한 수치이다.

21) WTO(2016e), "Reports on G20 Trade and Investment Measures."
22) WTO(2016e), "Reports on G20 Trade and Investment Measures," p. 19.

그림 2-11.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2008년 10월 이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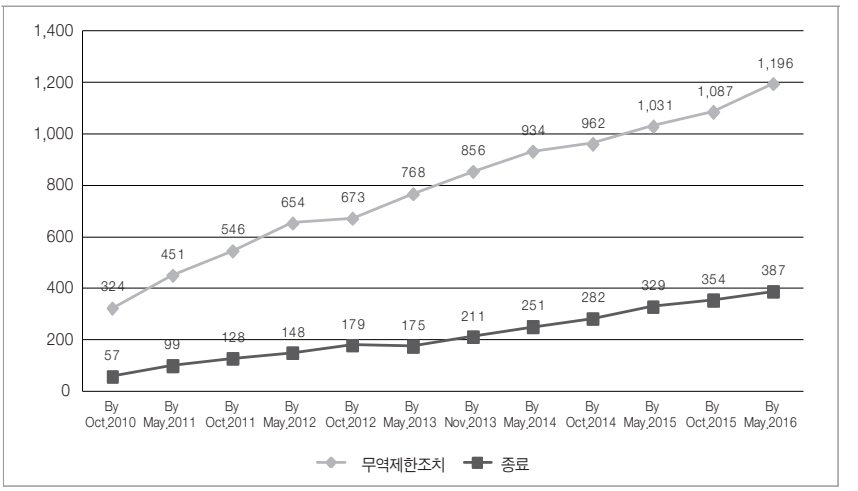

자료: WTO(2016e), "Reports on G20 Trade and Investment Measures," p. 23.

WTO 회원국들의 무역제한조치는 2008~16년 5월 중순까지 총 2,835건으로 이 중 708건이 종료되었고, 2,127건이 시행 중이다. 2010년 10월까지는 총 546건으로 이후 약 5년 7개월 동안 2,289건이 증가하였다.

그림 2-12. WTO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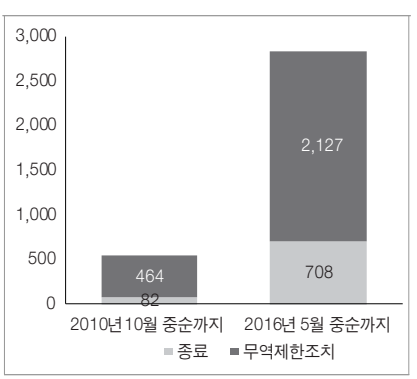

자료: WTO(2016d), WT/TPR/OV/W/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3. G20의 무역제한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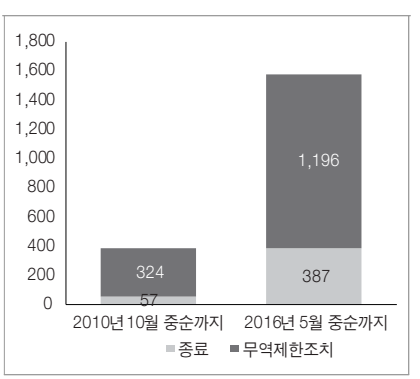

자료: WTO(2016e), "Reports on G20 Trade and Investment Measures"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만큼 글로벌 무역 감소현상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교역과 세계경제 성장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세계교역 부진이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교역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선진국의 생산기지 복귀 및 현지화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의 둔화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산품 중심의 무역은 앞으로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도 이러한 글로벌 무역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우선 큰 틀에서 제조업 상품 중심이 아닌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의 통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서비스 무역과 전자상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고 다자통상정책에서도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우리 시장 및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전제는 지식재산권 시장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방향에서도 통상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

무역 감소와 함께 나타난 글로벌 생산기지의 추세는 소비자 접근성 등 품목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 또한 국내외 생산기지의 입지 최적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통상협상분야에서도 기존 상품 위주의 시장접근 이외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그리고 국경장벽 너머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해당 국가의 관련 국내규제 투명성 강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무역 감소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산업구조 재편도 요청된다. 다자통상정책도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와 상응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는데 통상정책이 해당 산업을 보호하는 높은 국경장벽을 만들어 국제경쟁을 저해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자 차원의 DDA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선진국 위주의 복수국간협상이 활발한 가운데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존 DDA의 종결을 의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복수국간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WTO 다자통상은 기존 다자 DDA 축과 새로운 복수국간협상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히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도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선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복수국간협상은 일단 참여가 이루어지는 순간 대상품목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므로 참여 자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전체 공산품을 대상으로 즉시 무세화가 가능한 분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경쟁력이 앞선 분야는 복수국간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시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복수국간협정이 꼭 상품분야의 관세철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규범분야나 서비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서비스는 TiSA라는 복수국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규범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수산보조금분야에서 취약한 우리나라가 해당 복수국간협정에 불참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역으로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하는 국제규범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

에서 복수국간협정의 확대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특정 산업이나 서비스 또는 규범 분야에서 시장 확보 측면과 특정 비관세장벽 철폐 차원에서 복수국간협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동시에 우리나라가 민감한 분야에서의 복수국간협정에 참여를 요청받을 때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신무역이슈는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정립할 때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일단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도 강점이 있는 만큼 향후 신무역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작업반을 만들어 향후 국제논의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나 환경도 과거와 같이 수동적인 방어자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무역, 포용적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친기후변화적, 친환경적 무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단 환경상품협상에 적극적 참여 및 결과 이행에 추가하여 제2의 EGA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국제무역이나 세계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0여 개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상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국내 법이나 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신규 도입하게 되며, 이는 이 국가들과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당사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내조치가 또 하나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INDC 감축목표 달성이 구체화되면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탄소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호무역을 위한 수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는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또 다른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로 환경상품협정을 들 수 있다.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협정이 2014년 7월 공식 출범, 2016년 말 타결을 목표로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303개 상품이 협의 중에 있지만 향후 제 2, 3의 환경상품협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신기후체제로 들어서면서 에너지신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에서도 친환경, 저탄소 제품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그 예외적 인정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최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추세는 무역구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제한조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조치 및 반무역자유화의 흐름은 향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호주의와 반자유무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특히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명목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다른 한편 반무역자유화에 나타난 정서를 감안하여 무역정책 수립 시에도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나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이 무역거래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들을

협상의제로 올리고 이를 해소해줄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경에서의 조치와 동시에 국경 내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외국기업을 차별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장벽을 철폐,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본 장에서는 제10차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포스트 나이로비 DDA를 전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각료선언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이후 우리나라 입장에서 각료합의를 평가한 다음 이러한 평가와 앞서의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전개방향을 예측한다.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23)]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DDA 협상은 2015년 하반기부터는 의견 차가 큰 관세감축방식 등의 논의를 지양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의제 마련 모드로 전환하였다. 아제베도 사무총장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세 부분으로 구성된 나이로비 각료선언문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조정자(facilitator)를 선정해 조정자를 중심으로 각료회의 직전까지 논의를 계속하여 제시된 의제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자 노력하였다.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제시한 나이로비 각료선언문(안)은 ① WTO 20년의 평가 ② 나이로비 각료회의 성과 ③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DDA 전개방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성과 부분은 ① 농업(농산물 수출경쟁,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 ② 개발(개도국우대 포함) ③ 최빈개도국 이슈(무관세무쿼터(DFQF), 특혜원산지, 서비스 의무면제, 면화) ④ 투명성 제고(수산보조금, 지역무역협정, 서비스 국내규제) ⑤ 규범(금지보조금 등) 등과 같이 5개 세부 의제로 구분된다.

---

23) 이 부분은 서진교, 이효영(2016, pp. 3~19, 재인용).

각료선언문안의 첫 번째 부분인 WTO 20년 평가 부분은 회원국간에 특별한 대립이 없어서 쉽게 합의문(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인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성과 부분은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문안 도출에 실패한 채 각료회의에 임하였다.

두 번째 부분을 쟁점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수출경쟁부문에서 미국과 그 외 국가가 대립하는 형국이었다. 미국은 농산물 수출보조의 완전철폐를 주장한 반면 그 외 수출신용이나 식량원조에 대한 규제는 주저하였다. 반면 EU와 브라질은 수출보조철폐 외에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수출신용과 수출국영무역도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조치(SSM)는 G33이 수출보조가 논의되는 만큼 수출보조에 따른 교역 왜곡으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나이로비

표 3-1. 나이로비 각료선언문 구성과 관련 세부 의제

	대주제	세부 의제		비고
Part I	WTO 20년 평가			각료회의 이전 합의문안 도출
Part II	농업	수출경쟁	① 수출보조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
			② 수출신용	
			③ 수출국영무역	
			④ 식량원조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SSM)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		
	LDC 이슈	무관세 · 무쿼터(TFQF)		각료회의 이전 논의에서 삭제
		특혜 원산지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
		서비스 웨이버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
		면화		각료회의에서 일부 합의
	개발	개발 관련 개도국우대조항 신설		미합의
	투명성	서비스 국내제도 투명성 강화		미합의
		RTA WTO 통보 투명성 강화		미합의
		수산보조금 통보 투명성 강화		미합의
	규범	금지보조금(수산보조금) 규제		미합의
Part III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DDA 지속 여부			각료회의에서 입장 병기

자료: 서진교, 이효영(2016, p. 5, 재인용).

각료회의에서 SSM이 성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수출개도국은 SSM은 시장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시장접근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이상 SSM에 대한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개발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개도국그룹인 G90이 약 20여 개의 기존 WTO 규범에 개도국우대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의 규범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면서 G90의 제안이 반대에 직면하였다. LDC 관심 중 무관세 · 무쿼터(DFQF)는 미국이 각료회의 이전부터 논의를 거부해 초기에 의제에서 배제되었다. 대신 LDC를 위한 특혜원산지와 서비스웨이버(waiver)가 논의되었다.

세 번째 부분인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DDA 협상의 방향 설정문제는 기존과 같은 DDA는 종료되어야 한다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입장과 DDA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입장이 각료회의 직전까지 첨예하게 대립된 분야였다. 선진국들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DDA 협상은 무의미하며 이번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통하여 DDA를 종료하고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앞으로의 DDA는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협상은 기존 농업 및 NAMA 세부 원칙 수정안과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DDA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제(예: 전자상거래 등)가 DDA에 편입되어야 하며, 아울러 개도국우대도 해당국의 경제발전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은 발리 패키지 등을 들어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DDA는 나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DDA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은 DDA 출범 당시의 기본정신인 개발(development)에 기초하여 DDA의 계속을 주장하면서 선진국의 신규의제 도입 및 개도국우대의 세분화 등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나이로비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각료회의 초기까지 과연 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1) 농업

가) 농산물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농산물 수출경쟁의 핵심 쟁점은 ① 수출보조 ② 수출신용 ③ 수출국영무역 ④ 식량원조 등으로 구분된다. 농산물 수출보조 논의에서 쟁점은 수출보조 철폐 시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는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당시 선진국은 2013년, 개도국은 2016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24] 다만 이러한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는 DDA의 다른 분야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었고, 다른 분야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자연스럽게 수출보조 철폐 이행도 연기되었다.

2013년 발리 각료회의에서 수출보조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없는 수출보조금 철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각료 합의가 이루어졌다.[25] 이에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를 합의 도출이 가능한 최우선의제로 보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초 수출보조 철폐시한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가 수출신용과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등 농산물 수출경쟁분야의 전체 이슈로 확대되었고, 결국 미국의 강력한 타협의지에 따라 농산물 수출경쟁 전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진국은 수출보조를 즉시 철폐하되 일부 선진국의[26] 사정을 감안하여 가공농산물 및 유제품,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27]하에 2020년까지 철폐시한을 연장해주었다. 개도국은 선진국보

---

24) 단 UR 농업협정문 9.4조상 개도국이 이용하는 수출물류비 지원은 2021년까지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5) 서진교 외(2013), 「WTO 발리 각료회의의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24, pp. 10~11.

26) 노르웨이, 스위스 등을 말한다.

27) 일정 요건이란 다음의 4가지 조건이다. ①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빈개도국(LDC)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출보조 철폐 ② 나이로비 각료 결정 채택 이전 3개년 가운데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해당

표 3-2. 나이로비 각료선언 농업분야 합의: 수출보조 철폐시한

	홍콩 각료선언	2008년 모델리티 의장 수정안	나이로비 패키지
수출보조 철폐	선진국 2013년	좌동(단 2010년까지 50% 즉시감축)	선진국은 이 결정문 채택 즉시[1)]
	개도국 2016년	좌동	개도국 2018년
	단 개도국 수출물류보조 2021년 철폐	좌동	단 개도국 수출물류보조 2023년 철폐[2)]

주: 1) 단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가공농산물, 유제품, 돈육에 한해 2020년까지 수출보조 지급이 가능.
2) 단 최빈개도국과 농산물 순수입개도국의 경우는 2030년까지 가능.
자료: 서진교, 이효영(2016),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의 [표 2]를 변형하여 인용.

다 3년 긴 2018년 말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농업협정문 9.4조 수출물류비 보조는 이보다 5년이 긴 2023년 말까지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Export Credits)에서 핵심 쟁점은 수출보조와 같은 효과를 갖는 수출신용의 최대 상환기간(maximum repayment term) 및 자생기간(self-financing)[28)]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수출신용의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출신용은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출국들은 상환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인 반면 수출신용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수출신용의 최대 상환기간은 비록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2005년 홍콩 각료선언에서 180일(6개월) 이하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었으며, 해당 정책이 자생적이어야 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루어졌다.[29)] 이후 2008년 농업부문 4차 의장수정안(Rev4)에 수출신용의 최대 상환기간으로 180일(6개월), 자생기간 4년이 제시되어 있었다.[30)] 미국은 4차 의장수정안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는 미국

품목의 수출보조를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한 적이 있어야 한다 ③ 수출보조물량이 2003~05년 평균 수준 이하일 것 ④ 신규 품목이나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보조 금지 등이다. 서진교, 이효영(2016),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참고.

28) 자생기간(self financing)이란 수출신용제도나 관련 수출신용정책을 운용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해당 제도나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9) WTO(2005), WT/MIN(05)/DEC. (22 December)

30) WTO(2008), TN/AG/W/4/Rev.4. (6 December)

이 운용하고 있는 수출신용의 최대 상환기간이 18개월로 되어 있어 4차 의장수정안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만일 수출신용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 내용은 미국이 수용가능한 수준이어야 함이 진작부터 회원국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결국 수출신용의 최대 상환기간은 18개월로 설정되었고 선진국은 2017년 말, 개도국은 2020년 말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31]

한편 개도국은 20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이행하되, 2016년에 시작되는 새로운 수출신용의 경우 최대 상환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7년도 신규 수출신용의 경우는 27개월, 2020년부터는 최대 상환기간이 18개월로 적용된다.[32]

표 3-3. 나이로비 각료선언 농업분야 합의: 수출신용

	홍콩 각료선언	2008년 모델리티 의장 수정안	나이로비 패키지
수출신용 최대 상한기간	최대 상환기간 180일 이내로 의견이 모아짐.	· 최대 상환기간 180일 · 선진국은 2010년 말부터 적용 · 개도국은 2013년 말부터 단계적 적용[1]	· 최대 상환기간 18개월 · 단 선진국은 2017년 말부터 적용 · 개도국 2020년 말부터 적용하되 4년의 이행기간[2]
자생기간	운영은 자생적	· 4년	· 자생적이며 장기 운용비용 및 손실을 충당할 의무

주: 1) ① 2013년 말부터 신규 수출신용 최대 상환기간은 360일 이하, ② 2014년 말부터 신규 수출신용 최대 상환기간은 270일 이하, ③ 2016년 말부터 신규 수출신용의 최대 상환기간은 180일 이하.
2) ① 2016년 말부터 신규 수출신용의 최대 상환기간은 36개월 이하, ② 2017년 말부터 신규 수출신용의 최대 상환기간은 27개월 이하, ③ 2020년 말부터 신규 수출신용의 최대 상환기간은 18개월 이하.
자료: 서진교, 이효영(2016),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의 [표 3]을 변형하여 인용.

31) 단 각료 결정 채택 이전에 이루어진 신용계약은 설령 상환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해도 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32) 서진교, 이효영(2016, pp. 8~9, 재인용).

농산물 수출국영무역은 수출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의 무역왜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국영무역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호주나 캐나다 등)가 방어적 입장이며, 최근 중국도 수출국영기업 규제로 인하여 자국 내 국영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규제에 반대해왔다. 반면 미국이나 EU, 농산물 수출국그룹인 케언즈그룹 등은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원했다. 수출국영기업이 그들의 독점력을 이용해 수출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해왔기 때문이다.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국영기업이 많은 중국이 수출국영기업의 독점력 규제에 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반면 여타 회원국들의 국영무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 결국 '농산물 수출국영기업의 수출독점력이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고 여타 회원국의 수출을 대체하거나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었다.[33]

농산물 식량원조는 식량원조가 자칫 우회적인 수출보조로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논의되었다. 핵심 쟁점은 식량원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이 경우 식량원조는 사실상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금으로 된 식량원조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수출국들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현금지원 성격의 식량원조가 많아 이를 강하게 규제하는 데 반대하였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 현금지원의 식량원조를 허용하고 있다. 즉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식량원조의 현금화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대신 현금화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현금 식량원조를 인정하되 사전에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현금 식량원조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식량원조 현금화(monetization)는 유통·수송 등의 목적상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또는 최빈개도국/식량 순수입 개도국의 만성적인 기아 및 영양부족을 야기하는 불충분한 농업생산이나 장단기 식량부족

33) 서진교, 이효영(2016, p. 9, 재인용).

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4]

나)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SSM)

SSM은 현행 UR 농업협정상 농산물 세이프가드(SSG: Special Safeguard)를 활용할 수 없는 개도국들이 DDA에서 새롭게 도입한 무역구제조치이다. G33은 각료선언에 수출경쟁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역구제조치로서 SSM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수출개도국의 반대로 SSM은 향후 농업위원회의 특별 세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다)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35]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 문제는 발리 각료회의 및 2014년 11월 일반이사회를 통해 항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이에 인도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항구적 해법 마련을 추진했으나, 이에 대한 선진국과의 첨예한 이견 대립을 인식하고 각료회의에서 이를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인도는 SSM과 마찬가지로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향후 농업위원회 특별 세션에서 이를 계속 논의, 기존 농업협상과 구분하여 신속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2) 최빈개도국(LDC) 이슈

가) 특혜 원산지[36]

최빈개도국의 특혜 원산지에 대한 우대는 발리 각료 결정에서 이미 구체적인

34) 서진교, 이효영(2016, p. 10, 재인용).
35) 서진교 외(2013), 「WTO 발리 각료회의의 평가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하여 저자 정리.
36) 서진교, 이효영(2016),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참고하여 저자 정리.

권고안이 합의된 바 있었다.[37] 따라서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위한 제네바 논의에서도 큰 이견이 대두되지 않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쉽게 합의가 도출되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LDC를 위해 LDC 수출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상당한 또는 실질적 변형요건을 완화하거나 단순화하는 한편 그 외 최빈개도국간 원산지 누적 확대 노력을 독려하고 LDC 자체의 자가 증명을 허용하는 등 관련 서류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38]

최빈개도국의 서비스무역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여된 특혜는 원산지 특혜와 마찬가지로 발리 각료선언에 포함되었던 내용[39]으로, 나이로비 각료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적절히 조정되어 쉽게 합의문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WTO 서비스협정문(GSTS)상 최혜국대우 의무면제 적용기간을 2030년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하고, 최빈개도국의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와 장벽을 우선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서비스 공급자들을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 면화[40]

면화는 당초 최빈개도국(LDC)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었으나, 각료회의 논의 과정에서 농업부문에 포함되어 면화의 국내보조를 제외한 무관세 · 무쿼터 및 수출보조 철폐가 합의되었다. 당초 면화문제는 미국이 면화 국내보조감축에 반대하여 협상 진전이 없었다. 이에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이 반대하는 면화 국내

37) 서진교 외(2014),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연구보고서 14-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하여 저자 정리.
38) 서진교, 이효영(2016, p. 12, 재인용).
39) 서진교 외(2014),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연구보고서 14-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하여 저자 정리.
40) 서진교, 이효영(2016, p. 11, 재인용).

보조감축문제를 논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특별한 이견 없이 수월하게 합의문이 만들어졌다.

면화 시장접근에서는 선진국과 역량 있는 개도국이 최빈개도국에서 생산 · 수출된 면화에 대해서 2016년부터 무관세 · 무쿼터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면화 국내보조감축은 미국을 의식하여 이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WTO 농업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다만 면화 수출경쟁에서는 면화 관련 수출보조, 수출신용 등은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단 개도국은 2017년부터 이행).

3) 개발, 투명성 및 규범

가) 개발(Development)[41]

제네바에서의 개발논의는 나이로비 각료회의 직전까지 아프리카 개도국그룹인 G90의 제안과 그 수정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G90은 기존 WTO 규범을 검토하여 개도국우대조항이 필요한 조문을 선별해 약 20개의 현 WTO 규범에 개도국을 위한 우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도국우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선진국들은 G90 제안을 검토하여 그 중 수용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7개 정도의 조항에 개도국우대를 고려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이 제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G90이 선진국 수정안을 거부하고 선진국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의 최종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이는 G90의 양보로 볼 수 있다. G90은 선진국이 제안한 수정안이 당초 그들이 요구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중심으로 개도국우대를 성과로 도출하기보다 향후 추가논의를 통해 G90이 재수정안을 만들어 모두 광범위하게 개도국우대를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양보하였다.[42]

---

41) 서진교, 이효영(2016, pp. 12~13, 재인용).
42) 아프리카 개도국그룹이 개발이슈에 집착하는 바람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나이로비 각

나) 투명성[43]

투명성 논의는 당초 서비스분야의 국내 규제나 지역무역협정 결과의 WTO 통보, 각국의 보조금 지급내용에 대한 WTO 통보 등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규제 내지 철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어 사실상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오히려 규범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다.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으나, 다른 주요 의제에 밀려 별다른 진전 없이 겉돌았으며, 그마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대립으로 최종적으로 각료선언문에서 제외되었다.

다) 규범[44]

투명성 논의에서 확대된 규범협상은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지역무역협정(RTA) 논의와 반덤핑 논의, 그리고 수산보조금, 특히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보조금을 규제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RTA에 대한 논의는 브라질 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이 브라질 제안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향후 브라질이 지금까지 논의된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각료선언의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반덤핑 논의는 주로 러시아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이 러시아 제안에 반대하면서 이번 나이로비 각료 결정에 포함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에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차후 재논의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산보조금 논의는 EU · 호주 공동제안과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 페루 제안을 중심으로 막판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어족

료회의가 결렬되었다는 비난을 우려해 G90가 양보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서진교, 이효영(2016, p. 13, 재인용).

44) 서진교, 이효영(2016, pp. 13~14, 재인용).

자원의 보호를 위해 과잉어획 및 불법어획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의 규제에 찬성하는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세네갈 등과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도국우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대립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우대조항 도입 주장에 미국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전체 나이로비 각료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자 이번 반덤핑과 같이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규범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회원국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루면서 각료선언에서 제외되었다.

4) DDA 지속 여부 [45]

각료선언의 세 번째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DDA 지속 여부'에 관한 논의는 다른 의제와 달리 각료회의 종료 직전에 개시되었다. 각료회의 초기, 제네바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온 핵심 쟁점인 'DDA 지속 여부' 논의를 뒤로 미루고 대신 타결에 가까이 접근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과 농산물 수출경쟁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타협안 도출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이슈를 처음부터 다루어 전체 각료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기보다 잔여 쟁점을 먼저 논의하여 어느 정도 타협안을 도출한 뒤, 이후 상황을 보아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DDA 지속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성공적 타결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각료회의 집행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이나 중국 등 개도국 대표들도 각료회의 직전까지 DDA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이는 농산물 수출경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료회의 자체가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굳이 DDA 지속 여부와 같은 첨예한 쟁점을 각료회의 초기에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각료회의 집행부의 생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

45) 서진교, 이효영(2016, pp. 14~15, 재인용).

그러나 논의가 시작되자 선진국과 개도국은 예상대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 기존에 도출된 합의사항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마지막 단계에서 타협안 도출을 위한 문안 절충보다 각자의 입장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임시봉합 성격의 합의문이 만들어졌다. 즉 각료선언문은 "2001년 DDA 출범 당시, 그리고 그 이후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결정을 재확인하고, 또한 그러한 기초 위에서 DDA를 종료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many Members reaffirm the DDA, and the Declarations and Decisions adopted at Doha and the Ministerial Conferences held since then, and reaffirm their full commitment to conclude the DDA on that basis)"는 개도국 주장의 표현과 "다자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바 Doha 지침(mandate)을 재확인하지 않는다(Other Members do not reaffirm the Doha mandates, as they believe new approaches are necessary to achieve meaningful outcomes in multilateral negotiations.)"는 선진국 주장의 표현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각료선언은 새로운 협상 접근의 틀 및 신규의제의 도입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각료선언 32항은 "남아 있는 DDA 이슈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 방법에서 기존 도하구조(Doha structure)에 기초해야 한다"와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한다(explore new architectures)"는 두 개의 일치하지 않는 입장을 병렬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특히 33항에서 "비록 다른 회원국이 원하지 않지만 일부 회원국은 새로운 협상이슈(issue for negotiation)를 찾아 논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밝히고 있어 추가의제 선정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1) 결렬을 피하기 위한 임시봉합의 성격[46]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 등 일정한 성과를 도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결렬시키기에는 회원국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각료회의 성과에 기초해 평가하기보다 결렬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과 도출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나이로비 각료회의는 개최 이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최초의 WTO 각료회의인 만큼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관심사항에 관해 최소한의 성과 도출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근본적으로 각료회의를 결렬시키기는 어려운 협상구조였다. 특히 2016년은 미국 대선으로 DDA의 실질적 진전이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DDA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각료회의에서 최소한의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이로비 각료회의는 농산물 수출경쟁에서 거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리 각료회의와 마찬가지로 주요 핵심 의제는 남겨두고 일단 결렬은 피하자는 의도로 비교적 타협이 용이한 과제를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이며, 그마저도 핵심 쟁점인 DDA 지속 여부는 서로 상이한 의미의 문안을 나열함으로써 결렬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 성격의 성과 도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조정[47]

나이로비 각료선언은 최소한의 임시봉합적 성격의 성과 도출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적절히 반영시켜 나름 주요국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된 균형을 이룬 각료선언으로 볼 수도 있다.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수출경쟁은 대부분 미국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문이 만

46) 서진교, 이효영(2016, p. 16, 재인용).
47) 서진교, 이효영(2016, p. 16, 재인용).

들어졌다. 당초 농산물 수출보조만을 철폐하자는 논의가 미국이 우려하는 수출신용과 식량원조까지 확대됨으로써 EU나 농산물 수출국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용은 미국의 현재 정책운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어 미국으로서도 불만이 없다. 그 과정에서 스위스나 노르웨이도 수출보조 철폐기간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이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도 농산물 수출국영무역에서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제가 선언적 수준에 그쳐 나름 중국의 이해도 반영되었으며, 인도도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를 당초 원했던 내용으로 재확인하는 데 성공하였다.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 역시 면화와 특혜 원산지 및 서비스 의무면제 등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나이로비 각료 합의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해볼 수 있다. 문제는 농산물 수출경쟁분야에서 특별한 이해가 없는 수입국(예: 우리나라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부분 손해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협상에서 수출경쟁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시장접근이나 국내보조 등에서 이익을 추구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출경쟁분야만 먼저 합의를 도출한 것이 오히려 손해로 평가할 수도 있다.

3)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원의 법적 기틀 확립[48)]

농산물 수출경쟁분야에서의 합의 도출로 인해 그간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수출경쟁 논의 자체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개도국에 허용된 수출물류비 지원의 법적 근거는 불분명했다는 것이 통상법 학자 일부의 주장이었다. 즉 UR 농업협정문 9조 4항에 따라 허용되었던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감축면제규정은 이행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호주로부터 제기된 바가 있었다. 이에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될 수 있었으나, 이번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 수출보조 철폐시한이 합의됨에 따라 개도국 수출물

48) 서진교, 이효영(2016, p. 17, 재인용).

류비 지원도 2023년 말까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나이로비 각료선언은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4) WTO 의사결정문제 노정[49]

나이로비 각료선언 도출과정에서 WTO 의사결정의 문제점이 다시 노출되었고 이후 주요한 쟁점의 타협과정에서 회원국들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DDA 지속 여부에 대한 최종 합의문안 도출은 주요 5개국(미국, EU, 인도, 중국, 브라질)만의 비공식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여타 회원국들이 합의문안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실제 각료회의는 폐막식까지의 시간부족을 이유로 합의문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폐막식으로 연결되었고, 결국 여타 회원국은 주요 5개국이 합의한 문안을 검토 없이 추인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50]

이에 따라 WTO 개혁 차원에서 향후 주요국 중심의 DDA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회원국들의 참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1) 기존 DDA 협상은 형식적이나마 계속 추진

나이로비 각료합의는 위기에 빠진 DDA 협상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반면 나이로비 이후 DDA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불확실성만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단 기존 DDA가 계속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어떻게 되었든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의 DDA 주요 의제에 대한 협상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라

---

49) 서진교, 이효영(2016, p. 17, 재인용).

50) 각료회의 폐막 직전 합의문이 도출되는 바람에 계속 이어진 비공식 대표회의(HOD: Head of Delegation)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종료되고 바로 폐막식이 거행되었다. 따라서 주요 5개국 합의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도 계속될 것이고 각료선언 역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2016년 DDA 협상은 의제별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형식적인 추진 내지는 미국 등 주요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DDA 의제별 협상은 실질적 진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로비 각료선언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 예를 들어 수출보조금의 철폐 약속 이행을 구체화할 세부 논의 등은 계속될 것이고, 그 외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나 SSM 등은 논의가 계속 이어질 주요 의제이다. 그러나 나이로비 각료선언에서 언급되지 않은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 선진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정의 확대

나이로비 각료선언은 기존 일괄타결방식의 다자적 협상이 아닌 새로운 협상접근의 틀 도입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더 이상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괄타결방식의 컨센서스 베이스의 다자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로부터 어떤 합의 도출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관심 있는 회원국끼리의 복수국간협상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DDA 협상은 일괄타결 및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 등 기존의 협상방식과 함께 복수국간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병렬적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6년 DDA 협상은 기존 의제에서는 일괄타결방식의 다자협상이 계속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DDA 밖에서의 복수국간협상(예: EGA 등)이 보다 큰 관심을 받으며 추진되었다.

선진국들이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복수국간협상이 합의안 도출에 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유리한 협상구도를 이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소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DDA 협상보다 합의나 타협안 도출이 물리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선진국들은 협상을 통해 과도한 개도국우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수용하기 어려우면 복수국간협상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개도국 시장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복수국간협상이 다자협상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DDA와 달리 개발 및 개도국우대가 협상의 근본정신이 아니라는 점도 선진국들이 복수국간협상에 관심을 갖는 중요 이유이다.

3) DDA에 새로운 의제의 도입가능성 제시

나이로비 각료선언은 향후 DDA 협상에서 신규의제의 도입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즉 각료선언 32항은 "비록 다른 회원국이 원하지 않지만 일부 회원국은 새로운 협상이슈(issue for negotiation)를 찾아 논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나이로비 각료선언은 비록 일부 회원국(개도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이슈가 기존 DDA 협상에 도입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에서 신규의제 도입을 원하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상의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6년 DDA 협상에서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 경쟁, 투자, 중소기업,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신규의제로 거론한 바 있다.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신규의제의 추가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이른 시간 안에 DDA 협상에 신규의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 많은 회원국이 위에서 언급한 의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의제 도입에 따른 유·불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들이 신규의제 도입을 추구하는 이유는 현재의 DDA 의제로는 협상에 참여할 충분한 유인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DDA 의제만으로는 선진국들이 일정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대신 그로부터 기대되는 DDA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나마 시장성이 있는 중국 같은 개도국들은 개도국우대를 이용하여 대부분 시장개방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선진국의 기대이익은 더욱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대이익의 창출이 필요하였고, 이를 통해 DDA 전체의 이익균형을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비교적 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투자, 경쟁, 노동, 환경 등을 DDA 추가의제

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나 투자 등은 사실상 지난 1996년 만들어진 싱가포르 이슈로서 2003년 칸쿤 각료회의를 통해 개도국들의 큰 반대에 직면하여 DDA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DDA 협상의 전개방향을 전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① 각료회의에서의 합의내용(소위 나이로비 패키지)와 ② 각료회의 이후 2016년 DDA 협상 동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이후 기술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조문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산물 수출보조의 감축은 법률적 검토가 곧바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보조감축의 이행은 그 당시까지 DDA 협상 동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SSM이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항구적 해법 마련도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DDA를 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그 바탕에는 ① 농업과 NAMA 모델리티 의장수정안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② 신무역이슈의 DDA 편입 여부 ③ 협상방식 등의 쟁점이 내재되어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이슈를 관통하는 것은 개발 내지 개도국우대이다. 의장수정안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주장에는 현 의장수정안이 과도한 개도국우대를 허용하고 있어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바탕

에 있다. 신무역이슈 역시 현 상태의 DDA 협상으로는 선진국의 기대이익이 적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기대이익을 높일 수 있는 추가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다. 협상방식도 지금과 같은 일괄타결방식의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수적으로 우세한 개도국의 과도한 영향력 배제가 어려운 바, 선진국들은 그들의 협상력 배가 및 이익 관철에 유리한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의 복수국간협상을 선호하는 것이다.

1) 기존 농업과 NAMA의 모델리티 수정안의 유효성 여부

선진국은 기존 모델리티 수정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2001년 DDA 출범 이후 2008~09년 세계금융위기 발생,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 메가 FTA 등 지난 15년 동안 국제무역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같은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행 모델리티 수정안은 문제가 있고, 이에 연연하기보다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선진국들이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시각과 방식은 대체적으로 '의무분담의 조정', 또는 '과도하게 부여된 개도국 융통성(flexibility)의 축소'라는 시각에서 해석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업보조감축에서 선진국들은 최근 감축보조 지급이 급격히 증가한 신흥개도국도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모델리티 수정안에 따르면 감축보조가 급격히 증가했더라도 기존에 감축보조(AMS)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감축보조의 감축의무는 없으며, 최소허용보조 이내에서 얼마든지 감축보조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등 일부 감축보조가 증가한 개도국도 경제발전 정도에 상응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세감축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감축률을 높인다고 해도 기존 모델리티 수정안에서 개도국에 주어진 다양한 융통성 때문에 선진국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에서 선진국은 관세감축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개도국 특별 품목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시장접근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SSM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의 반감이 크다.

NAMA에서도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융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계수 25의 스위스 공식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평균관세감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51] 아울러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차가 커 관세감축의 효과성이 없다는 것도 선진국들의 계속된 주장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선진국의 요구는 ① 관세감축에서 개도국의 융통성 축소 및 실질적인 시장접근 확보 ② 농업보조감축에서는 개도국도 발전에 상응한 의무 이행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협상해온 결과로서 모델리티 수정안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며, 따라서 향후 협상도 이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이 기존 모델리티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모델리티가 개도국에 다양한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진국의 의무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개도국의 융통성이 축소되어 개도국의 의무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존 모델리티를 두고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평균감축방식은 포스트 DDA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평균감축방식은 자체에 융통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도국이라고 해서 감축률 이외 추가적인 융통성을 요구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도국의 융통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평균감축방식은 선진국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개도국 입장에서도 평균감축방식의 자체 융통

51) 평균감축방식은 세번별 최소감축률만을 설정한 채 실제 감축률은 최소감축률 이상에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설정한 후, 최종적으로 평균감축률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관세감축방식 자체에 큰 융통성이 내포되어 있다.

성은 기존 모델리티 수정안에서 제시된 융통성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문제는 평균감축률과 최소감축률로서 이는 기존 논의보다 훨씬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쉽다.

2) 신무역이슈의 DDA 편입 여부

앞서 언급한 대로 나이로비 각료선언은 새로운 의제의 DDA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향후 DDA에서 논의할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투자와 경쟁,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국영기업 등을 신규의제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명시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의제가 DDA에 추가될 경우 기존 개도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이나 개도국우대, 개발 등 DDA 출범 당시의 개도국을 위한 개발정신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의제 추가로 인해 농업부문의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등은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자칫 개도국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고 있다. 물론 급속히 커지는 신산업에 대해 개도국들도 관심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요구를 마냥 모른 체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개도국들의 입장은 새로운 의제의 추가를 반대하지 않으나, 일단 기존 의제 논의에 충실하여 개도국들의 관심이 큰 농업 등의 협상을 가속화시키자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이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현재 DDA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전자상거래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향후 DDA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등이 추가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하며, 그 외에도 개도국과의 타협을 통해 선진국이 강조하는 신무역이슈의 일부가 DDA에서 논의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협상방식

나이로비 각료선언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선진국은 일괄타결방식의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 등 DDA 협상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WTO 모든 회원국이 참여해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상방식을 가지고는 주고받기식 타협이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통상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복수국간협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이나 확대정보통신협정(ITA)뿐 아니라 환경상품협정(EGA), TiSA 역시 복수국간협상으로 협상 추진의 효율성, 성과 도출의 상대적 용이성 등이 이 협상들이 갖는 최대 장점이다.

이에 개도국들은 복수국간협상이 자칫 선진국들만 또는 선진국 중심의 협상그룹을 만들어 그들만의 이익을 반영하는 협상이 되고, 이후 이 결과가 다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이익에 맞는 분야만을 골라서(예: 서비스분야) 개도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사실상 개도국을 배제하고 그나마 어렵게 참여한 개도국이라도 이들에게 주어지는 개도국우대수준 역시 낮아서 참여 개도국의 시장이 선진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점령당하는 형태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들도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및 비민주성 등 현행 일괄타결방식을 토대로 한 DDA 협상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선진국 주도의 복수국간협상방식에도 선뜻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복수국간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개도국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WTO 일부 회원국이 참여하는 부분적인 복수국간협상이 보다 대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세계교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critical mass를 형성한 다음 이들 안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기초로 서명국에 한해, 또는 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않는 국가들도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과정에서 개도국우대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감안된다면 향후 DDA 협상에

서 복수국간협상방식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주요 의제별 전망

1) 농업

가) 국내보조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분야의 합의로 농업분야에서 남은 핵심 쟁점은 농업보조감축과 시장접근, 특히 관세감축이다. 농업보조금감축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미국은 최근 농업보조가 급격히 증가한 중국 및 인도의 감축이 중요하며, 발전수준에 따라 상이한 적절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농업보조감축 없이는 미국의 감축 이행도 불가능하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EU, 브라질 등은 MC11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해 농업보조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EU, 케언즈그룹 등은 브라질 제안서[52]를 바탕으로 국내보조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53]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G10 국가들은 옵션 1에서 VOP(Value of Production)를 활용하는 것과 옵션 3의 품목특정 AMS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이다.[54]

향후 협상은 MC11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의제 선정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업분야에서는 특히 EU와 브라질이 중심이 되어

---

52) WTO(2016a), "Domestic support," JOB/AG/72.

53) 최근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라과이가 공동으로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OTDS)감축을 대안으로 4가지 접근법(옵션 1은 무역왜곡보조에 대해 농업생산액(VOP)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 옵션 2는 AMS,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감축 등 기존 규율 활용 강화, 옵션 3은 품목특정 AMS 도입, 옵션 4는 국내보조 지급품목의 수출 규율)을 제시하며 국내보조 논의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54) 일본은 생산액에 비례해서 상한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쌀 등 핵심 품목에 부담되지 않도록 품목특정 AMS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VOP 연계를 통해 보조총량을 규율하는 방식은 감축수준에 따라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보조감축 논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국내보조감축에 대한 입장차이가 타협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전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6년 10월 오슬로 미니각료회의[55]에서 미국은 주요 보조금 지급국(예: 중국 등)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분담을 할 경우에만 국내보조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보조감축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국내농업보조감축 논의는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업보조는 향후 DDA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농업보조가 국내 농업정책의 운용과 직접 연계되어 있느니만큼 협상에서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은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인 타협의지 없이는 합의 도출이 어려운 분야이다.

나) 시장접근

시장접근의 핵심 쟁점은 관세감축공식과 관세상한, 특별 품목, SSM 정도로 판단된다. 만일 평균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된다면 특별 품목 등 감축의 예외가 매우 제한적으로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SSM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R 방식의 평균감축률 논의는 평균감축률과 최소감축률에 논의가 집중되어 그만큼 타협안 도출은 용이해질 수도 있다.

한편 SSM은 G33이 과거 SSG 수준으로 SSM의 융통성을 축소시켜 제안한 적이 있기 때문에 SSM이 갖는 융통성은 과거 SSG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선진국들은 신규 SSM을 기존에 경험한 SSG의 연속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관세화에 관계없이 모든 개도국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협의 발판이 된다.

관세상한은 일부 수입개도국을 제외하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큰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아 설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일부 예외로 인정될 경우 일정 부분 TRQ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 품목도 평균관세감축이 가지고 있는

55) WTD(2016), The Oslo Mini-Ministerial 참고하여 저자 정리.

자체의 융통성 때문에 상당히 제약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접근분야는 국내보조에 비해 협상 부진으로 향후 성과 도출에 필요한 균형된 패키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현 의장수정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인식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C11을 위한 성과 도출이 가능한 의제 논의과정에서도 시장접근분야는 떨어져 있다. 참여국들이 목표수준(level of ambition)을 낮추고 서로 양보하여 타협을 이루려는 의지가 없는 이상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도국우대를 공식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평균관세감축공식은 향후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유일한 공식이다. MC11에서 당장은 논의되기 어렵다고 해도 시장접근분야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개도국우대의 폭을 낮추면서 시장접근의 관세감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2016년 NAMA 협상은 잔여 DDA 의제로서 협상의 중요성에는 다수의 WTO 회원국이 공감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뚜렷한 협상 주도국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협상은 공전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NAMA 협상의 진전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복수국간협상에 주력하고 있어 NAMA 협상의 추동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 인도 등 개도국은 종전 입장을 고수하며 불완전 상호주의, 개도국우대원칙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MA 협상의 전망은 밝지 않다. 기본적으로 ITA, EGA 등과 같은 분야별 복수국간협상을 통하여 NAMA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관심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감축에서 목표수준을 낮춰 감축 폭 자체보다 양허범위의 확대 또는 Water[56] 축소 등을 추진할 수

56)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와의 차이.

있으나, 이마저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개도국들이 Water가 자국의 정책재량임을 강조하면서 농업협상과의 균형, 불완전 상호주의, 개도국우대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NAMA는 전체적으로 MC11에서 성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이며,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NAMA 협상을 통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확대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복수국간협상에 주력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NAMA 협상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다만 농업에서처럼 개도국의 신축성을 줄인 평균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할 경우 그나마 선진국과 개도국의 타협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경우 최고감축률과 평균감축률이 타협의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3) 서비스

서비스협상 역시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수의 회원국들이 제11차 각료회의(MC11)에서 성과 도출이 가능한 분야로 서비스 중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와 전자상거래를 언급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시장접근(market access)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6년 서비스협상은 국내규제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 국내규제 관련 각국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문직 서비스 교역을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licens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기술표준, 인허가요건과 관련하여 국내규제가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각국의 국내규제 도입 시 정보제공 및 투명성 의무, 개도국 특별대우(S&D)에 대한 내용도 거론되었다.[57]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57) WTO(2016c).

표 3-4. 서비스 국내규제에 대한 규범 제정 제안내용

구 분	제안내용
적용범위	- 자격 요건 및 절차, 인허가 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 구체적 양허분야 - 일반적 적용조치(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에 적용가능한 규범
일반적 의무	- 일반적 적용조치를 합리적, 객관적, 공정한 방식으로 수립 및 운용 - GATS 제6조 제4항의 (a)-(c)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규범 수립 -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한 절차 및 요건 수립 -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지양 - 자격 및 인허가 요건 간소화 - 규제대상서비스 및 정책목표와의 직접적 연관성 - 합법적 규제목적을 위한 규제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자격 및 인허가 요건	- 자격 및 인허가 요건의 객관적 및 독립적 수립 및 집행 - 모든 신청인에 대한 객관적 절차 수립 - 합리적이며 불필요하게 과도하지 않은 절차 - 필요절차의 최대 간소화 - 서비스의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절차 - 신청서의 처리 관련 단계별 목표시한(timeline) 수립 - 전자신청서 접수, 복사본 접수, 신청서의 수정 및 재제출 허가 등 - 자격 및 인허가 승인 후 서비스 제공시기 최대 단축
기술표준	- 기술표준의 객관성, 투명성 및 접근성 보장 - 서비스 관련 기술표준 수립 시 투명한 절차 및 국제표준 반영 - NGO 개발 표준의 투명성 보장 - 국제서비스 표준 개발 시 개발도상국의 효율적 참가방안
투명성	- 관련 법, 규정 및 시행령 등 공개 - 인허가 등 승인 관련 요건 및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 공개 - 규제 도입 사전 공표 - 규제 도입 전 의견 수렴 및 이행 전 유예기간 - 과도한 투명성 요건 자제
개도국 예외	- 규제 적용 시 개도국에 대한 개별적 예외 인정 - 개도국에 대한 과도적 유예기간 자체 지정 - 역량에 따른 의무 부과 - 선진국과 개도국 간 다른 의무 부여

자료: WTO(2016c) 내용 저자 정리.

다만 제11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 분야로 국내규제분야에서 상당한 논의 진전을 예상할 수는 있다. 특히 서비스와 중소기업(SME)의 무역확대방안과 관련해 서비스 관련 무역원활화 협정 출범을 위한 협상가능성이 제기된 바, 향후 협상에서는 전통적인 서비스분야 의제인 국내규제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분야 무역원활화와 함께 신무역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장 표명이 예상된다.

반면 서비스분야의 규범에 대한 논의는 복수국간서비스협상(TiSA)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2016년 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TiSA 협상은 2016년 상반기 네 차례의 공식협상과 두 차례의 각료급회의, 2016년 7월 중간점검회의를 통해 연내 협상 타결을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과 EU 등은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정부조달의 TiSA 포함 주장을 철회하고 국영기업(SOE), 직접판매 등 기존 자국 제안의 적용범위를 축소 내지 의무수준 완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양허수준 제고에 대한 압박 증대와 함께 규범분야에서는 현지화 부속서 합의 도출 가속화, 국영기업(SOE) 부속서의 공식 의제화, 금융 및 전자상거래 관련 신규제안 제출 등이 전망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58]

그러나 최근 들어 주요 쟁점에서 EU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현지화 요건(localization) 금지에 대하여 EU는 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려해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SNS와 인공지능(AI) 등 향후 서비스로 분류될 '신서비스(new services)'에 대한 비차별대우 제공에 대해서도 EU는 미국과 달리 반대하고 있다. 반면 양허분야에서는 EU가 제출한 수정양허안이 CETA(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58) 특히 TiSA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의가 형성된 부속서(Category A)로 미래 MFN 부여 여부(Core-text), 국내규제, 투명성,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현지화, 모드 4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준으로 양허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59] 이에 따라 향후 TiSA 협상은 주요 쟁점에서 EU의 입장 선회 내지 완화 여부에 따라 2016년 내 타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협상의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TiSA 협상의 2016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일부 회원국은 불가피한 경우 EU를 제외하고 TiSA 협상 타결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규범

가)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에서의 논의는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실패 이후 현재까지는 특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WTO 회원국간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TPP 등을 통해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DDA 차원에서의 논의에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수산보조금에 대한 복수국간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차 해양콘퍼런스를 통해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상 출범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였는데,[60] 13개국[61]의 해양·수산 분야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잉어획(over-fishing),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 불법어업(IUU)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62]

---

59) "Negotiators Question EU Commitment to Services Deal," (2016. 11. 4),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60) USTR(2016), "Joint Statement Regarding Fisheries Subsidies,"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09142016_STATEMENT_joint_statement_fisheries_partners_FINAL.pdf(검색일: 2016. 10. 25).

61)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상에 참여하기로 공표한 13개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스위스, 콜롬비아, 페루, 파푸아뉴기니, 우루과이이다. 반면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은 불참하고 있다.

62) 이 13개국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수산보조금은 세계 수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과잉

미국의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정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반응은 적극 참여와 신중한 검토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특히 EU는 미국이 제안한 복수국간협상보다는 WTO 차원에서의 수산보조금 다자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는 세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일부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협정보다 WTO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다자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이로비 각료회의 전후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유해 수산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아직은 WTO 차원의 수산보조금 다자협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의 이러한 반응은 규제대상 수산보조금에 대한 미국과의 입장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 역시 WTO 차원의 다자적 규제에는 동의하나 그 경우 예상되는 개도국우대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자 차원의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EU는 어획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IUU 어업 관련 보조금을 중심으로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자는 입장으로, 금지대상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유류보조금 등에서는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EU는 수산보조금 감축에서 개도국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개도국에 유연한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산보조금 규제 논의는 한동안 복수국간협상과 다자 차원의 협상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을 통해 금지대상 수산보조금의 종류 및 개도국 예외허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범화될 것인지, 또는 유류보조금을 포함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어획능력에 기여하

어획과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해한 수산보조금(과다·과잉 어획 및 IUU 어업과 연계된 수산보조금 등) 금지를 위한 협상을 복수국간협상 차원에서 진전시키고, 이를 향후 WTO 다자협상으로 발전 및 확대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유해한 수산보조금을 금지한다는 목표를 위해 수산보조금의 통보의무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 WTO 틀 내에서의 다자협정 체결을 위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가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는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규제하며 개도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범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의 수산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모든 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수산보조금의 지급 관련 WTO 통보 및 정보제공 의무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 반덤핑

반덤핑협정 개정 협상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분야이다. 2002년 1월 규범협상이 출범한 이후 2009년 8월까지 규범협상그룹에 제출된 제안서 등의 문서가 모두 45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될 만큼 회원국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러한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협상을 주도하는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장 주도적인 그룹은 반덤핑 프렌즈 그룹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63] 반덤핑 프렌즈 국가들은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반덤핑절차에 대한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하고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발굴하며 협상의 기초를 위한 협정문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역할을 하였다.

반덤핑 프렌즈 그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회원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반덤핑협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소를 당한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공정무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로서 반덤핑조치의 활용도가 가장 큰 국가로서,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덤핑협정 개정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반덤핑 프렌즈 국가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제로잉(zeroing), 일몰재심(sunset review), 최소부과원칙(lesser

63) 반덤핑 프렌즈 국가들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홍콩,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15개국이다.

duty rule) 등과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조사절차 개선 및 우회덤핑 방지(anti-circumvention) 등이다.[64]

2013년 발리 각료회의 이후 규범협상그룹은 논란이 많은 쟁점을 제외하고 투명성 제고 차원의 논의만 추진하기로 하였다.[65] 이에 각국은 반덤핑제도의 투명성과 절차(due process)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실패로 반덤핑 규범협상은 논의의 모멘텀조차 상실된 상황이다. 다만 규범협상그룹 산하 기술그룹회의와 반덤핑 이행작업반 회의 등에서 반덤핑제도 관련 기술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정도로 규범협상 차원에서는 반덤핑분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덤핑분야 협상은 회원국들간 현저한 의견차이로 더 이상 추가 협상은 의미가 없고, 정례위원회 회의를 활용하여 현행 반덤핑협정의 이행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 등은 반덤핑과 수산보조금에 대한 협상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반덤핑 논의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 제안에 대하여 관심 표명국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덤핑협상은 당분간 진전을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규범협상그룹 산하 기술그룹회의 및 반덤핑 이행작업반회의 등에서 반덤핑제도 관련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반덤핑 정례위원회 차원에서 각국의 반덤핑 조사제도 및 관행에 대한 정보공유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은 특별한 진전을 기대하

64) 각 쟁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노형, 박성훈(2010), pp. 55~63 참고.
65) WTO(2015a), "Report by the Chairman, H.E. Mr Wayne McCook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RL/27. (7 December)

기 어려운 가운데 2017년 12월로 예정된 제11차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성격의 협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 NAMA, 서비스 등 DDA 핵심 의제의 주요 이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이가 근본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형식적인 협상을 계속해봐야 실질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점을 WTO 회원국들이 냉철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타협이 어려운 의제나 이슈를 계속 논의하기보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각료회의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협상을 전환해나가는 것이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에 보다 실질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전망에 설득력을 더 하는 것이 DDA 협상의 실질 주도국 중 하나인 미국의 협상 태도이다. 미국은 나이로비 각료회의 직전부터 현재와 같은 성격과 구조의 DDA 협상 지속은 의미 없는 '시간 보내기'임을 강조하고 DDA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이어진 다자협상에서 미국이 형식적인 참여만 할 뿐 의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졌으며, 사실상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DDA 다자협상보다는 WTO 틀 안에서, 그러나 DDA 밖에서 복수국간협상에 열중하면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은 기존 형식의 DDA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실천해보이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기존 DDA는 사실상 종료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DDA가 출범했다고 판단된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기존 DDA의 부진과 대조적으로 DDA 밖 복수국간협상의 확산현상이다. 비록 아직은 복수국간협상이 대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GPA, ITA 등이 타결되어 이미 발효된 상태이며, 다자 차원 협상인 DDA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EGA, TiSA 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형식은 차이가 있어도 공통적인 것은 더 이상 164개국의 컨센서스 방식에 기초한 합의 도출은 참가국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상당한 융통성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일괄타결방식의 컨센서스에 기초한 DDA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DDA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DDA 종료의 증거는 협상내용이다. DDA의 특징은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개발이 강조된 것으로 이와 불가분의 관계가 모든 의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도국을 배려하는 개도국우대정신이다.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반영한 농업과 NAMA의 의장수정안은 개도국우대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개도국우대가 각 요소에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수국간협상에서는 개도국 개발 차원에서의 배려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의장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더더욱 없다. 개도국우대는 개도국의 개발 차원이라기보다 효율적인 이행 차원에서 극히 제한된 개도국우대만이 존재할 뿐이다. 결국 DDA 출발의 근본이념이 서서히 바래고 있고 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임은 이미 앞서 언급한 그대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은 형식적이며 포스트 나이로비 WTO 협상만이 실질적인 개념이 된다(즉 DDA 밖에서만 활발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기존 DDA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시각에서 DDA 2.0으로 볼 수 있다. 또는 DDA라는 단어를 빼고 포스트 WTO 협상으로 보아야 정확한 현실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도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언급된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전망과 제2장에서 살펴본 국제무역의 구조 변화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전망을 토대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시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자통상정책은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2017년 12월 11차 WTO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예상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이후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무역 감소라는 국제무역의 구조적 변화와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환경과 무역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반무역자유화 및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감안하되 실제 복수국간협상방식 위주로 통상협상이 추진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포스트 나이로비 DDA 농업협상이 계속될 경우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중단된 평균관세감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보조에서는 무역왜곡보조감축이 그나마 논의가능한 이슈이다. 평균감축은 추가적인 개도국우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선진국들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논의의 출발점은 4차 의장수정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관세감축방식별 영향 분석

포스트 나이로비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될 핵심 쟁점은 관세감축에 따른 시장접근으로 선진국들이 의장수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

안으로 거론된 평균감축방식은 여전히 유력한 타협방안의 하나이다. 이에 여기서는 기존 협상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제시한 4차 의장수정안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4차 의장수정안이 상호 타협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차 의장수정안의 관세감축은 구간별 관세감축으로 만일 농산물 관세가 구간별로 동일하게 분포되었다면 구간별 감축의 평균감축률은 60.25%(선진국)가 된다. 이때 최저감축률은 민감품목(특별 품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50%가 된다.

표 4-1. 4차 의장수정안의 구간별 관세감축에 따른 감축률

(단위: %)

	선진국		개도국	
	관세구간	감축률	관세구간	감축률 (선진국의 2/3)
1구간	≤20%	50	≤30%	33.3
2구간	20%〈 ≤50%	57	30%〈 ≤80%	38
3구간	50%〈 ≤75%	64	80%〈 ≤130%	42.7
4구간	75%〈	70	130%〈	46.7
단순평균		60.25		40.17

자료: Rev.4를 저자 정리.

가) 4차 의장수정안에 기초한 구간별 감축(민감 및 특별 품목 미고려)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를 4차 의장수정안에 따라 구간별 감축방식을 적용해 감축할 경우 평균감축률은 35.4%로 계산된다. 반면 CoA(Cut of Average)에 의한 감축률은 43.1%가 된다(감축하기 이전 단순평균 양허관세 71.4%에서 구간별 감축 이후 잔여관세의 평균(양허관세)은 40.6%가 되어 Cut of Average 방식에 따른 감축률은 43.1%가 된다).[66] 즉 4자 의장수정안 구간별 감축방식에 상응하는 평균감축률은 Average of Cut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35.4%가 되며, Cut of Average 방식으로 계산하면 43.1%가 된다.[67]

66) (71.4% - 40.6%) / 71.4% *100 = 43.1%.

표 4-2.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의 평균관세감축률

(단위: %)

4차 의장수정안 구간별 감축(개도국)		평균감축방식	
관세구간	감축률	AoC에 의한 평균감축률	CoA에 의한 평균감축률
30% 이하	33.3	35.4	43.1
30%〈 ≤80%	38.0		
80%〈 ≤130%	42.7		
130% 초과	46.7		

자료: 저자 계산.

구간별 관세감축에 상응한 평균감축률인 35.4%(average of cut 방식)를 UR 방식에 따라 모든 농산물 세번에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때, 잔여관세는 구간별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높아진다. 이는 구간별 감축방식이 고율관세감축에 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가 전반적으로 80% 이하 구간에 분포되어 있어(전체 세번의 88%가 관세율 80% 이하) 나타난 결과이다. 즉 관세율 80% 이하 구간에 분포되어 감축률 33.3% 또는 38.0%가 적용되기 때문에 Average of Cut 방식의 감축률이 35.4%로 계산되었고, 이를 모든 세번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고율관세 세번에 상대적으로 적은 감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68]

67) 평균감축률 계산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방식 1은 AoC(Average of Cut)라고 하여 세번별 감축률을 평균하여 최종감축률로 설정하는 것이다. 과거 UR 방식에서 이와 같이 계산하였다. 다른 하나는 방식 2로 CoA(Cut of Average)라고 한다. 이 방식은 먼저 감축 이전과 이후의 평균관세율을 계산한 다음 각각의 평균관세율의 차이에 기초하여 감축률을 설정하는 것이다.

세번	품명	초기 관세(%)	개별 감축률(%)	감축 후 최종관세(%)
0201 20 1000	갈비(신선)	40	10	36
0203 29 1000	삼겹살(냉동)	25	20	20
0703 10 1000	양파(신선, 냉장)	135	20	108
0805 40 0000	자몽(신선)	30	70	9
평균		57.5	30(방식 1)	43.25
		(57.5-43.25)/57.5*100 = 24.8(방식 2)		

68) 예를 들어 관세가 130%를 초과하는 세번에 구간별 감축방식이 적용될 경우 46.7% 감축률이 적용되지만 평균감축방식에 따를 경우 감축률은 35.4%가 적용되어 구간별 감축방식이 상대적으로 고율관세 감축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은 고율관세의 감축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반면 평균감축방식은 이러한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고율관세 비중이 큰 경우 구간별 감축에 상응하는 평균감축률이 커지고, 반대로 그 비중이 적으면 평균감축률도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30% 이상 고율관세 비중이 작은 국가의 경우(예: 우리나라) 평균감축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잔여관세수준이 구간별 방식에 의한 잔여관세수준보다 높아지게 된다. 결국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평균감축방식이 구간별 관세방식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1. 감축방식별 관세감축 이후 잔여관세수준(특별 품목 미고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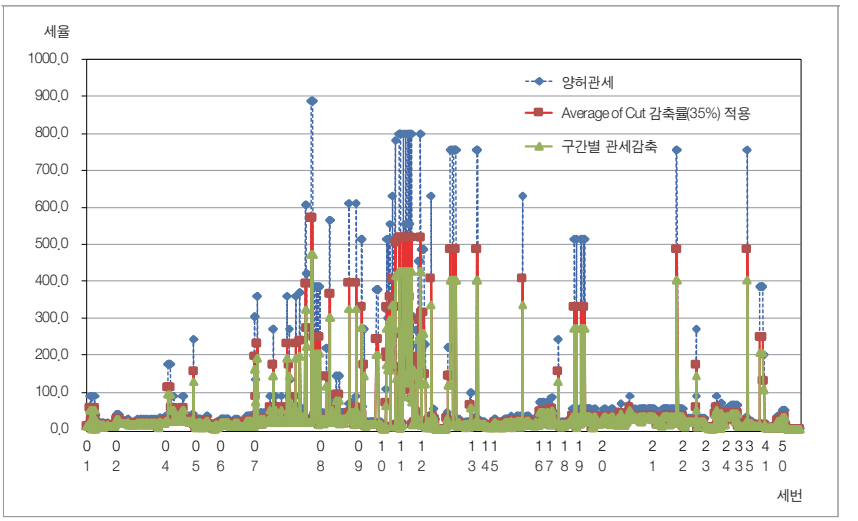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나) 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구간별 감축(민감 및 특별 품목 고려)

4차 의장수정안은 개도국에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에 모두 구간별 관세감축의 예외를 주는 민감 · 특별 품목이 존재한다. 개도국의 민감품목은 농산물 세번의 5.3%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선진국은 4%), 적용

감축률은 구간별 감축률의 1/3~2/3 수준이다. 경우에 따라 구간별 감축률의 1/3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세감축혜택에 비례해서 TRQ를 증량하는 부담(소비량의 2~2.7%)이 있다. 한편 개도국은 특별한 보상 없이 농산물 전체 세번의 최대 5%까지 관세감축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개도국의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의 혜택을 받는 대신 TRQ를 제공해야 하므로 관세감축과 TRQ 증량의 정확한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이상 신축성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개도국 특별 품목은 TRQ 보상 없이 관세감축혜택이 주어져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특별 품목만을 신축성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 전체 세번의 12% 내에서 5%까지는 관세감축을 면제하고, 나머지 7%는 평균 18.9%를 감축해 전체 12% 세번의 평균감축률을 11%로 맞추었다.[69]

개도국 특별 품목을 고려하여 구간별 관세감축을 할 경우 감축률 평균(Average of Cut)은 32%로 나타났다. 특별 품목을 고려할 경우 총세번의 12%

표 4-3. 민감품목의 관세감축과 TRQ 증량

(단위: %)

조건	TRQ 증량(국내 소비량의)	
	선진국	개도국
구간별 감축률의 2/3를 적용	3.0	2.0
구간별 감축률의 1/2을 적용	3.5	2.3
구간별 감축률의 1/3을 적용	4.0	2.7

자료: 저자 계산.

표 4-4. 개도국 특별 품목

대상	개수	감축률
개도국	농산물 전체 세번의 12%	평균 11% (관세감축 면제는 최대 5%까지)

자료: Rev.4를 저자 정리.

69) 우리나라의 농산물 총세번 수는 1,616개로 이의 12%는 194개이고, 이 중 5%는 81개 세번이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액 및 고율관세를 기준으로 특별 품목 194개 세번을 설정하고, 중요성을 감안하여 81개 세번에는 관세감축을 면제하여 전체 감축률을 11%로 설정하였다.

까지 평균감축률 11%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구간별 관세감축에 따른 평균감축률은 특별 품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3.4%p 낮은 32.0%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이때 잔여관세의 평균은 48.9%로 특별 품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40.6%에 비해 8.3%p 높아졌다. 따라서 Cut of Average 방식에 의한 평균감축률은 31.5%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특별 품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평균감축률 43.1%에 비해 11.6%p 낮은 수치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의장수정안의 특별 품목을 고려할 경우, 구간별 관세감축에 상응하는 평균관세감축률은 계산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별 품목 등 4차 의장수정안상 개도국에 주어진 민감성을 고려할 경우 구간별 관세감축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평균감축률은 32% 안팎으로 볼 수 있다(단 이러한 동등성은 총세번의 5%까지의 최소감축률 0%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만일 민감품목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70] 따라서 향후 농산물 관세감축 논의가 평균감축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은 평균감축률 32% 내외가 될 수 있을

표 4-5.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의 평균관세감축률(특별 품목 고려)

(단위: %)

Rev.4상 구간별 감축(개도국)		평균감축방식	
관세구간	감축률	Average of Cut에 의한 평균감축률	Cut of Average에 의한 평균감축률
30% 이하	33.3	32.0 (35.4)	31.5 (43.1)
30%〈 ≤80%	38.0		
80%〈 ≤130%	42.7		
130% 초과	46.7		
특별 품목 고려 (5%까지 면제, 12% 평균 11% 감축)			

주: ( ) 안의 특별 품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평균감축률.
자료: 저자 계산.

70) 특별 품목 선정은 부록 1을 참고.

것이다. 즉 개도국 지위 유지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관세감축전략은 평균감축률 32% 내외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를 과거 UR 때의 24%와 비교하면 약 30% 정도 감축폭이 확대된 것이다.

그림 4-2. 감축방식별 관세감축 이후 잔여관세수준(특별 품목 고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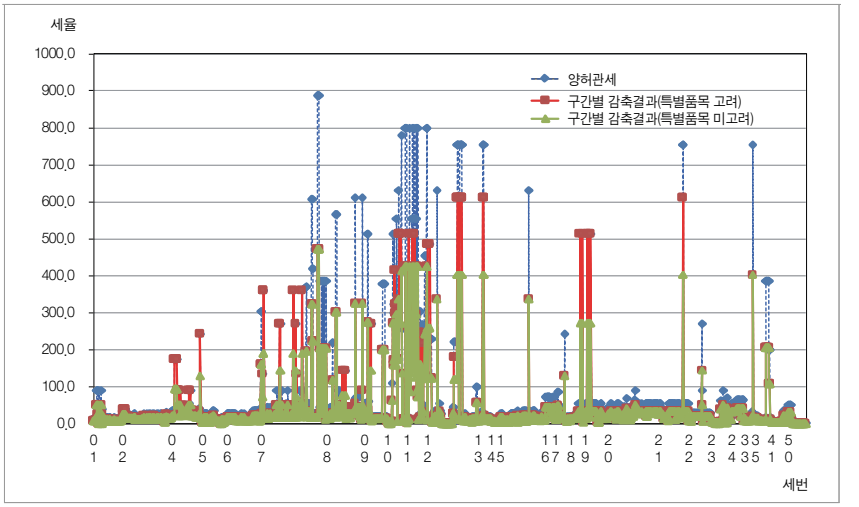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2) 농업보조감축에 따른 영향 분석

농업보조 역시 MC11의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이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일단락된 이상 민감품목과 특별 품목 등 기술적으로 한층 복잡해진 시장접근보다 국내보조가 논의는 용이하기 때문이다.

가) 감축기준 [71]

농업보조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DDA 협상은 과거 UR 협상과 달리 개별 감축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설정하고 있을 뿐만

71) 서진교, 박지현(2009, pp. 26~32, 재인용).

아니라 그 합계인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왜곡보조총액은 최종적으로 양허된 감축대상보조(Total AMS: Final Bound Total Aggregated Measurement of Support)와 최소허용보조(DM: De minimis), 그리고 블루박스(BB: Blue Box)보조의 합으로 정의된다. 한편 국내보조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산한 총액

② 감축대상보조(AMS):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보조

③ 최소허용보조(DM)): AMS에 속하지만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④ 블루박스(BB): AMS와 허용대상보조의 중간성격의 과도기적 보조. 생산제약요건을 두어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한 보조로 감축의무는 없다(통보의무만 존재).

⑤ 허용대상보조(GB):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에서 면제되는 보조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감축은 지급규모 순으로 구간을 나누어 지급규모가 클수록 더 큰 폭의 감축률이 적용된다. 구간은 3개(1구간: 600억 달러 초과, 2구간: 100억~600억 달러, 3구간: 100억 달러 이하)이며, 1구간 감축률은 80%이고 EU가 여기에 속한다. 2구간 감축률은 70%로 미국과 일본이 여기에 속하며, 3구간 감축률은 55%로 나머지 회원국 모두가 여기에 속한다. 개도국은 1, 2구간에

표 4-6. 국내보조의 종류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허용보조 (GB: Green Box)
감축대상보조 (AMS)	최소허용보조 (DM: De-minimis)	블루박스 (BB: Blue Box)	

자료: 서진교, 박지현(2009, p. 27, 재인용).

속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3구간 감축률의 2/3인 36.7%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왜곡보조총액이 100억 달러 이하로 추산되기 때문에 선진국 대우를 받을 경우 제3구간에 속해 55%를 감축하며, 개도국일 경우 약 37%를 감축하게 된다.[72)]

한편 개별 보조인 감축대상보조(AMS)는 UR 농업협정 이행에 따라 이미 자국의 AMS 상한이 양허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감축대상보조총액으로 1995년 2조 1,826억 원을 상한으로 양허한 이후 매년 감축해왔으며, 2004년 최종양허액은 1조 4,900억 원이다.

감축대상보조도 무역왜곡보조총액과 같이 지급규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AMS가 많은 국가가 더 큰 폭으로 감축하게 되어 있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AMS 총액 감축률은 3구간 감축률(45%)의 2/3인 30%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AMS 총액이 150억 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30%(개도국 유지) 또는 45%(선진국일 경우) 감축하게 된다.

표 4-7.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

구 간	감축률(%)	이행기간
1구간(600억 달러 초과)	80	첫날 총 OTDS의 33.3%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2구간(100억 달러 초과 600억 달러 이하)	70	
3구간(100억 달러 이하)	55	첫날 총 OTDS의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개도국	36.7	첫날 총 OTDS의 20% 감축, 나머지는 8년 균등 감축

자료: 서진교, 박지현(2009, p. 28, 재인용).

72)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표 4-8. 감축보조(AMS) 감축률

양허된 감축대상보조(AMS) 상한		적용 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1구간	400억 달러 초과	70	30
2구간	150억 달러 초과 400억 달러 이하	60	
3구간	150억 달러 이하	45	

자료: Rev.4를 해석하여 저자 작성.

한편 감축대상보조(AMS)는 총액(Total AMS)뿐만 아니라 품목별로도 상한이 설정되어 품목별로 지원가능한 보조금의 규모가 제한된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1995~2000년 통보된 개별 품목에 지급된 품목별 AMS 평균을 상한으로 설정(미국은 1995~2004년 품목 지원 비율을 1995~2000년 품목특정 지원액에 적용하여 상한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도국은 ①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동안 통보된 품목특정 AMS 평균이나 ②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동안 농업협정 제6조 4항의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수준의 2배 혹은 ③ DDA 이행기간 동안 적용되는 당해연도 AMS 총액의 20%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최소허용보조(DM: De minimis)는 감축대상보조(AMS)와 성격이 같지만, 지급규모가 작기 때문에 UR 농업협상에서 감축의무가 면제된 보조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상한이 설정되어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기준(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을 50% 낮추고(기준이 5%→2.5%로 낮아짐), 이행은 첫날부터 적용된다. 개도국도 현행 최소허용보조기준(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10%)을 33.3% 감축하도록(기준이 10%→6.7%로 낮아짐) 되어 있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생산제한조건이 있는 기존의 블루박스(Old BB) 외에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New BB)를 신규도입하였다. 신규 블루박스는 기존 블

루박스와 달리 생산제한조건이 없는 대신 생산을 요구하지 않고, 고정불변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블루박스의 경우 지급가능 블루박스 총액은 선진국의 경우 1995~2000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2.5%가 되며, 개도국은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5%가 된다. 한편 품목별 블루박스 상한은 기준기간 동안 통보된 품목별 블루박스 평균지급실적으로 설정하되, 품목특정 AMS를 품목특정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 감축에 따른 영향 분석[73)]

(1)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

우리나라가 UR 협상에서 양허한 최종연도 총 AMS는 1조 4,900억 원으로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12억~13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총 AMS 감축률은 30%(개도국 기준)~45%(선진국 기준)가 된다.

감축에 따른 우리나라의 총 AMS 한도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일 경우 이행 첫날 총 AMS 한도는 1조 3,783억 원, 1년차 말에는 1조 2,665억 원이 되며, 마지막 5년차에는 8,195억 원으로 축소된다. 개도국일 경우 이행 첫날 총 AMS 한도는 1조 4,403억 원이 되며, 1년차 말에는 1조 3,907억 원이 되고, 마지막 8년차에는 1조 430억 원으로 축소된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 총 AMS 사용실적을 보면 주로 쌀 1개 품목에 대한 보조로 사용되어 향후 쌀에 대한 보조가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2005년부터 쌀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쌀의 변동직불금만 총 AMS로 계산되어, 2005년의 총 AMS 실적은 약 3,600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쌀 가격이 15% 급락해 변동직불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총 AMS 실적은 약 1조 1,956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

73) 서진교, 박지현(2009, pp. 44~46, 54~64, 재인용).

표 4-9. 우리나라 총 AMS 한도 변화

구 분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의 경우		
		실적액 (억 원)	감축률 (%)	한도액 (억 원)	실적액 (억 원)	감축률 (%)	한도액 (억 원)
2004		14,584			14,584		
2005		3,598		14,900	3,598		14,900
2006		11,956			11,956		
이행 1년차	첫날		7.5	13,783		3.3	14,403
	마지막날		15.0	12,665		6.7	13,907
이행 2년차			22.5	11,548		10.0	13,410
이행 3년차			30.0	10,430		13.3	12,913
이행 4년차			37.5	9,313		16.7	12,417
이행 5년차			45.0	8,195		20.0	11,920
이행 6년차						23.3	11,423
이행 7년차						26.7	10,927
이행 8년차						30.0	10,430

자료: 서진교, 박지현(2009, p. 46, 재인용).

(2) 최소허용보조(DM: De minimis)

4차 의장수정안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상한은 [표 4-10]과 같다. 단 제시된 최소허용보조 상한 인하에도 불구하고 만일 해당 연도에 설정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이 양허수준을 넘으면 추가적으로 최소허용보조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지급실적은 매우 미미하여 2004년의 경우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지급액은 농업총생산액대비 0.3%,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지급액도 1.2%에 불과하며,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최근 연도인 2011년의 경우 약 2.7% 수준이다. 따라서 최소허용보조기준이 낮아진다 해도 특별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 다만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콩(2006년 품목 생산액 대비 50%), 그리고 연도에 따라 보조금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최소허용보조수준을 보이고 있는 소(1997년 9.3%), 우유(2002년

9.1%), 마늘(2002년 8.2%), 양파(2006년 4.6%) 등은 최소허용보조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 AMS 계산에 산입하게 될 수도 있어서 품목별 AMS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10.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감축률

	품목불특정		품목특정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기준 감축률(%)	50	33.3	50	33.3
기준 DM(생산액의 %)	5	10	5	10
이행 첫날(생산액의 %)	2.5	8.9	2.5	8.9
이행 1년차(생산액의 %)	2.5	8.9	2.5	8.9
이행 2년차(생산액의 %)	2.5	7.8	2.5	7.8
이행 3년차(생산액의 %)	2.5	6.7	2.5	6.7

자료: 서진교, 박지현(2009, p. 55, 재인용).

(3) 블루박스(BB: Blue Box)

블루박스 총액 상한(Overall BB)은 선진국의 경우 1995~2000년 생산액의 2.5%이고, 이행 첫날부터 적용되며, 개도국은 1995~2000년, 1995~2004년 평균생산액의 5%로 상한이 설정된다. 단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한 품목이 있는 경우 DDA 이행 직전 5년 평균생산액의 5%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급가능 블루박스보조는 선진국이 될 경우 1995~2000년 농업총생산액은 30조 5,605억 원이고, 이것의 2.5%인 7,640억 원이 블루박스 보조총액 상한이 된다. 개도국일 경우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이 각각 30조 5,605억 원, 32조 681억 원이기 때문에 이의 5%(블루박스 총액 상한)인 1조 5,280억 원, 또는 1조 6,034억 원이 블루박스보조 상한이 된다.[74]

74) 서진교, 박지현(2009, p. 56, 재인용).

표 4-11. 우리나라의 블루박스 총액 상한

	선진국	개도국		
기준연도	1995~2000년	1995~2000년	1995~2004년	AMS에서 BB로 전환하는 품목 존재(2002~06년)
생산액(억 원)	305,604.8	305,604.8	320,680.6	352,823.2
블루박스 총액 한도율(%)	2.5	5	5	5
한도액(억 원)	7,640.1	15,280.2	16,034.0	17,641.2
이행 첫날(억 원)	7,640.1	15,280.2	16,034.0	17,641.2

자료: 서진교, 박지현(2009, p. 57, 재인용).

(4)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경우 기준 OTDS는 ① Total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 ②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10%인 3조 561억 원 ③ 1995~2000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5%인 1조 5,280억 원의 합인 6조 741억 원으로 계산된다.

개도국인 경우 기준 OTDS는 기준기간을 1995~2000년으로 정할 경우 ① Total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 ②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0%인 6조 1,121억 원 ③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인 1조 5,280억 원의 합인 9조 1,301억 원이 되나, 기준기간을 1995~2004년으로 정한다면 OTDS 감축기준은 ① Total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 ② 1995~2004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20%인 6조 4,136억 원 ③ 1995~2000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5%인 1조 6,034억 원의 합인 9조 5,070억 원이 된다.[75]

75) 위의 책(p. 63, 재인용).

표 4-12.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기준

	선진국(억 원)		개도국(억 원)		
	1995~2000년 기준			1995~2000년 기준	1995~2004년 기준
(b)부문	생산액의 10%	30,560.5	생산액의 20%	61,121.0	64,136.1
(c)부문	생산액의 5%	15,280.2	생산액의 5%	15,280.2	16,034.0
(a)부문	총 AMS 한도	14,900.0	총 AMS 한도	14,900.0	14,900.0
합 계		60,740.7	합 계	91,301.2	95,070.2

자료: 서진교, 박지현(2009, p. 63, 재인용).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경우 기준 무역왜곡보조총액은 약 52억 달러(6조 741억 원)가 되어, 기준 무역왜곡보조총액이 100억 달러 이하이므로 OTDS의 감축률은 5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OTDS 한도는 기준 OTDS 금액인 6조 741억 원에서 이행 첫날 25%를 감축하여 4조 5,555억 원이 되며, 그 이후 매년 6%씩 감축하여 마지막인 5년차에는 2조 7,333억 원이 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되는 경우 기준 무역왜곡보조총액이 1995~2000년 기준으로 할 때 9조 1,301억 원, 1995~2004년 기준으로 할 때에는 9조 5,070억 원이 된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100억 달러 이하가 되므로 우리나라의 OTDS 감축률은 55%의 2/3인 37%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될 경우 OTDS 한도는 기준 OTDS 금액인 9조 1,301억 원(1995~2000년 기준)에서 이행 첫날 20%를 감축하여 7조 3,041억 원이 되며, 그 이후 매년 2.1%씩 감축하여 마지막인 8년차에는 5조 7,824억 원이 된다. 기준기간을 1995~2004년으로 할 경우 기준 OTDS 금액은 9조 5,070억 원에서 이행 8년차엔 6조 211억 원이 상한이 된다.

지금까지와 같은 검토결과에 따를 때 4차 의장수정안에 따라 국내농업보조를 감축할 경우 국내농정을 제약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쌀의 국내가격이 급락할 경우 변동직불금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품목별 AMS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품목별 AMS 상한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13.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지급 상한액

(단위: 억 원)

	선진국	개도국	
기준년도	1995~2000년	1995~2000년	1995~2004년
감축률(%)	55	36.7	
기준 금액	60,740.7	91,301.2	95,070.2
이행첫날	45,555.5	73,041.0	76,056.2
1년차	41,911.1	71,138.9	74,075.5
2년차	38,266.6	69,236.7	72,094.9
3년차	34,622.2	67,334.6	70,114.3
4년차	30,977.8	65,432.5	68,133.6
5년차	27,333.3	63,530.4	66,153.0
6년차		61,628.3	64,172.4
7년차		59,726.2	62,191.8
8년차		57,824.1	60,211.1

자료: 서진교, 박지현(2009, p. 64, 재인용).

나. NAMA

1) 관세감축방식별 영향 분석

지금까지 논의된 관세감축방식은 스위스 공식[76]에 의한 감축으로 스위스 공식은 관세가 높을수록 감축률도 커지는 특징으로 계수 a가 감축 이후 잔여관세의 상한 역할을 한다. 3차 의장수정안에 따를 경우 선진국은 계수 8, 개도국은 계

76) 스위스 공식: $T = at/(t+a)$,(단, t: 감축 이전 관세, T: 감축 이후 관세, a: 계수).

수 20, 22, 25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도국에는 감축계수 선택에 따라 [표 4-14]와 같이 신축성이 주어진다.

표 4-14. NAMA 관세감축과 신축성(개도국)

관세감축		신축성	
		공식 적용 감축률의 1/2 적용	감축 면제
스위스 공식 계수	20	NAMA 세번의 14%까지 (단 NAMA 총수입액의 16% 이하)	NAMA 세번의 6.5%까지 (단 NAMA 총수입액의 7.5% 이하)
	22	NAMA 세번의 10%까지 (단 NAMA 총수입액의 10% 이하)	NAMA 세번의 5.0%까지 (단 NAMA 총수입액의 5.0% 이하)
	25	없음.	

자료: 저자 요약.

가) 공산품

(1) 스위스 공식 vs 평균감축방식

공산품 미양허품목 816개 세번에 대해 2001년 기준 실행세율을 확인해 그 값에 25%p를 더한 값을 미양허품목의 양허관세로 설정한 다음, 양허관세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평균은 11.1%(무관세품목 고려)로 미양허품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9.2%에 비해 1.9%p 높아졌다. 실행세율은 미양허품목을 고려할 경우 평균값이 종전 5.9%에서 6.0%로 0.1%p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산품에 계수 8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할 경우 Average of Cut 방식에 따른 평균감축률은 47.7%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즉 계수 8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한 다음 세번별 감축률을 계산하여 이를 단순평균하면 47.7%가 된다(단 평균값 계산 시 무관세품목을 제외할 경우 57.4%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계수 8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여 감축한 이후의 잔여 양허관세의 평균은 3.8%로 계산되었다(무관세 세번을 제외하면 4.6%). 따라서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 시 Cut of Average 방식의 평균감축률은 65.8%가 된다. 즉 감축 전

양허관세 평균 11.1%에서 감축 후 양허관세 평균이 3.8%로 하락한 바 Cut of Average 방식의 평균감축률은 65.8%로 계산된다.[77]

표 4-15. 미양허품목/무관세품목 포함 여부에 따른 평균관세 변화

		무관세품목	고려 세번 수	평균세율(%)
미양허품목 제외	양허관세	포함	9,179	9.2
		배제	7,493	11.3
	실행관세	포함	9,179	5.9
		배제	7,343	7.3
미양허품목 포함	양허관세	포함	9,995	11.1
		배제	8,309	13.4
	실행관세	포함	9,995	6.0
		배제	8,132	7.4

자료: 저자 계산.

표 4-16.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평균관세감축률

(단위: %)

스위스 공식 (계수 8 적용)		평균감축방식	
		Average of Cut에 의한 평균감축률	Cut of Average에 의한 평균감축률
적용 이전 양허관세 평균	11.1 (13.4)	47.7 (57.4)	65.8 (65.8)
적용 이후 양허관세 평균	3.8 (4.6)		
실질감축률[1)]		29.2 (38.4)	36.8 (38.0)

주: 1) 실질감축률은 실행세율대비 감축률이다. 즉 세번별로 감축 이후 양허세율이 감축 이전 실행세율에서 몇 % 감축한지를 계산해서 이를 평균한 것이 Average of Cut 방식에 의한 평균감축률이다. Cut of Average 방식의 평균감축률은 감축 이후 양허세율 평균인 3.8%가 감축 이전 실행세율 평균 6.0%에서 몇 % 감축한지를 계산한 값이다.
2) ( ) 안은 0 및 (-) 감축률을 제외한 경우이다.
자료: 저자 계산.

77) (11.1% - 3.8%) / 11.1% *100 = 65.8%.

따라서 NAMA에서의 평균관세감축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은 평균감축률 48%에 기초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이행하되 기존 3차 의장수정안과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평균감축률을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 48% 감축이 기존 3차 의장수정안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48% 평균감축률 적용 시 실행관세를 감안하면, 이는 약 29%의 실행관세감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water 문제에서 일정 부분 기여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양허관세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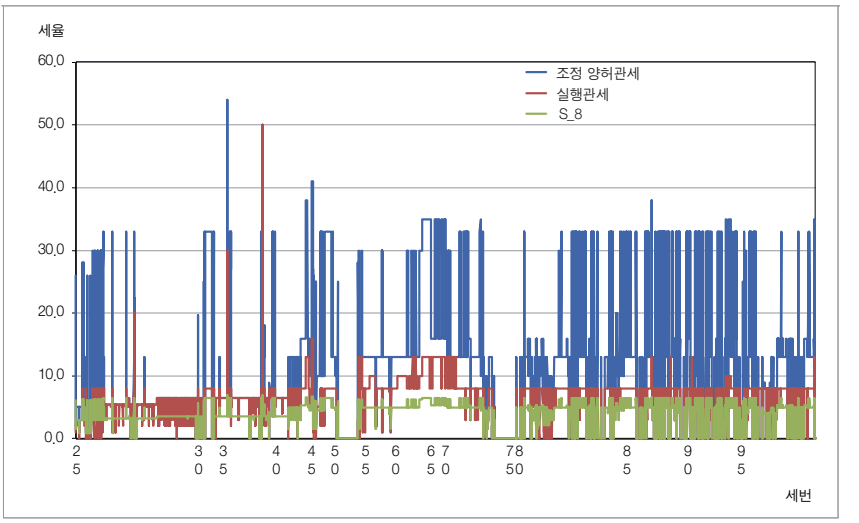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나) 수산물 관세감축

수산물의 경우 미양허품목 비중이 매우 높다.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미양허품목 400개에 대해서 2001년 기준 실행세율에 25%p를 더해 미양허품목의 양허

관세로 설정하면, 조정된 양허관세의 평균은 34.0%로 미양허품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19.3%에 비해 14.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세율은 미양허품목을 고려할 경우 종전 18.6%에서 17.8%로 0.8%p 하락하였는데, 이는 미양허품목의 실행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표 4-17. 미양허품목/무관세품목 포함 여부에 따른 평균관세 변화

		무관세품목	고려 세번 수	평균세율(%)
미양허품목 제외	양허관세	포함	232	19.3
		배제		
	실행관세	포함		18.6
		배제		
미양허품목 포함	양허관세	포함	632	34.0
		배제		
	실행관세	포함	632	17.8
		배제	625	18.0

자료: 저자 계산.

(1) 3차 의장수정안의 스위스 공식 적용 감축(선진국 계수 8 적용)

먼저 수산물에 선진국 감축을 적용, 계수 8의 스위스 공식을 대입하면 Average of Cut 방식에 따른 평균감축률은 77.7%로 계산된다. 즉 모든 세번에 계수 8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여 세번별 감축률을 계산한 후 이를 단순평균하면 77.7%로 계산된다(무관세품목 없음).

한편 계수 8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여 감축한 다음, 잔여 양허관세의 평균은 6.2%로 나타나(무관세품목 없음)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 시 Cut of Average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감축률은 81.7%로 나타난다. 즉 감축 이전 양허관세 평균이 34.0%에서 감축 이후 6.2%로 떨어져 Cut of Average 방식의 평균감축률은 81.7%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산물 관세감축에서 선진국 수준의 평균감축률을 논의할 경우 기본감축률은 약 78%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8.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평균관세감축률(수산물)

(단위: %)

스위스 공식 (계수 8 적용)		평균감축방식	
		Average of Cut에 의한 평균감축률	Cut of Average에 의한 평균감축률
적용 이전 양허관세 평균	34.0	77.7	81.7
적용 이후 양허관세 평균	6.2		
실질감축률[1)]		59.5 (60.6)	65.0 (65.4)

주: 1) 실질감축률은 실행세율대비 감축률이다. 세번별로 감축한 이후의 양허세율이 감축 이전 실행세율에서 몇 % 감축한지를 계산해서 이를 평균한 것이 Average of Cut 방식에 의한 평균감축률이다. Cut of Average 방식의 평균감축률은 감축 이후 양허세율 평균인 6.2%가 감축 이전 실행세율 평균 17.8%에서 몇 % 감축한지를 계산한 값이다.
2) ( ) 안은 0 및 (-) 감축률을 제외한 경우이다.
자료: 저자 계산.

한편 계수 8의 스위스공식과 그와 동등한 평균감축을 비교할 경우 대체로 평균감축이 계수 8의 스위스 공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잔여관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 시 감축 이후 양허관세의 평균은 6.2%인데 반해 평균 77.7% 평균감축 시 감축 이후 양허관세 평균은 7.6%로 나타났다. 이는 스위스 공식 적용 시보다 평균감축 적용 시 평균적으로 더 높은 관세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수입국 입장에서 평균감축이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3차 의장수정안의 스위스 공식 적용 감축(개도국 계수 20 적용)

수산물 관세감축에서 개도국 입장을 취하여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할 경우 신축성은 ① 수산물 세번의 6.5%까지 감축 면제(단 수산물 수입액의 7.5% 초과 금지)와 ② 14%까지 기준감축률의 50% 감축(단 수산물 수입액의 16% 초

그림 4-4.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양허관세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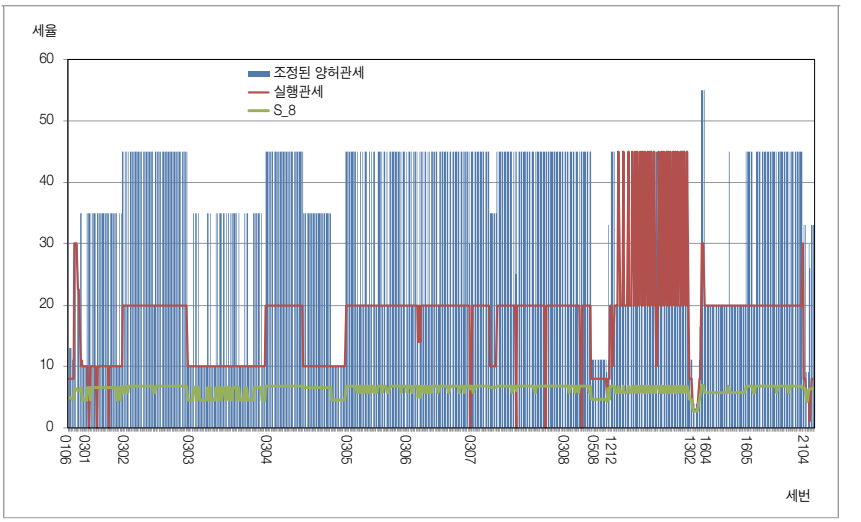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5. 계수 8의 스위스 공식과 평균감축(77.7%)에 따른 양허관세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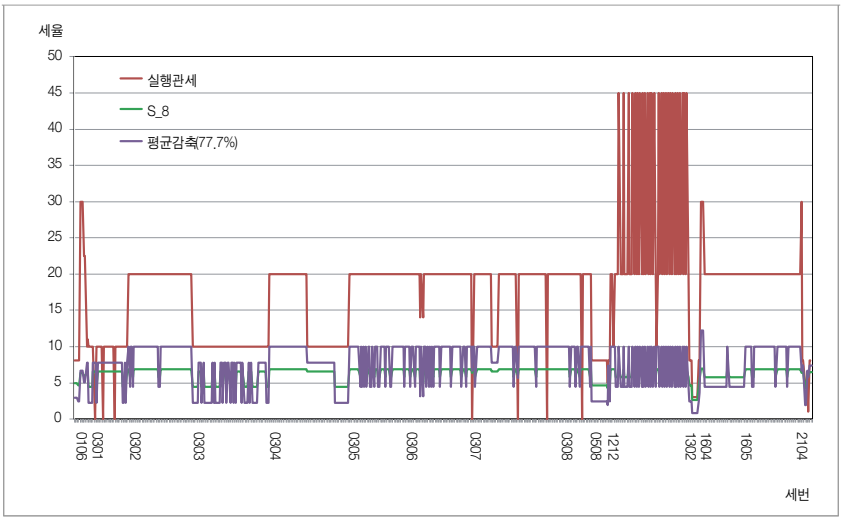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과 금지)이 주어진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신축성 대상 세번을 실행관세가 높은 순으로 설정하고(수산물 총세번 수 632개의 14%와 6.5%는 각각 88개와 41개이다), 실행관세가 높은 순으로 41개까지 관세감축을 면제하는 경우와 88개까지 감축률을 50%로 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할 경우 첫 번째 신축성(S-20-1)의 평균감축률은 55.5%(Average of Cut)로 계산되며, 두 번째 신축성(S-20-2)의 평균감축률은 55.1%(Average of Cut)로 두 신축성간의 감축률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되 첫 번째 신축성을 고려해 감축한 다음 잔여 양허관세의 평균을 계산하면 13.8%가 되며, 두 번째 신축성을 고려하여 감축한 후 잔여 양허관세의 평균을 계산하면 14.0%가 된다. 감축 이전 양허관세의 평균이 34.0%였기 때문에 Cut of Average 방식에 따른 평균감축률을 계산하면, 첫 번째 신축성의 경우 59.4%, 두 번째 신축성의 경우 58.9%로 계산된다.[78)]

표 4-19.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평균관세감축률

(단위: %)

스위스 공식 (계수 20 적용)		평균감축방식			
		Average of Cut에 의한 평균감축률		Cut of Average에 의한 평균감축률	
적용 이전 양허관세 평균	34.0	신축성 1	신축성 2	신축성 1	신축성 2
적용 이후 양허관세 평균(신축성 1)	13.8	55.5	55.1	59.4	58.9
적용 이후 양허관세 평균(신축성 2)	14.0				
실질감축률[1)]		26.1 (34.3)	25.5 (34.5)	22.3 (23.2)	21.3 (22.2)

주: 1) 실질감축률은 실행세율대비 감축률이다. 즉 세번별로 감축 이후 양허세율이 감축 이전 실행세율에서 몇 % 감축한지를 계산해서 이를 평균한 것이 Average of Cut 방식에 의한 평균감축률이다. Cut of Average 방식의 평균감축률은 감축 이후 양허세율 평균인 13.8%, 14.0%가 감축 이전 실행세율 평균 17.8%에서 몇 % 감축한지를 계산한 값이다.
2) ( ) 안은 0 및 (-) 감축률을 제외한 경우이다.
자료: 저자 계산.

78) (34.0% - 13.8%) / 34.0%×*100 = 59.4%, (34.0% - 14.0%) / 34.0%×*100 = 58.94%.

그림 4-6.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적용 시 기준 양허관세율 변화: 신축성 1과 신축성 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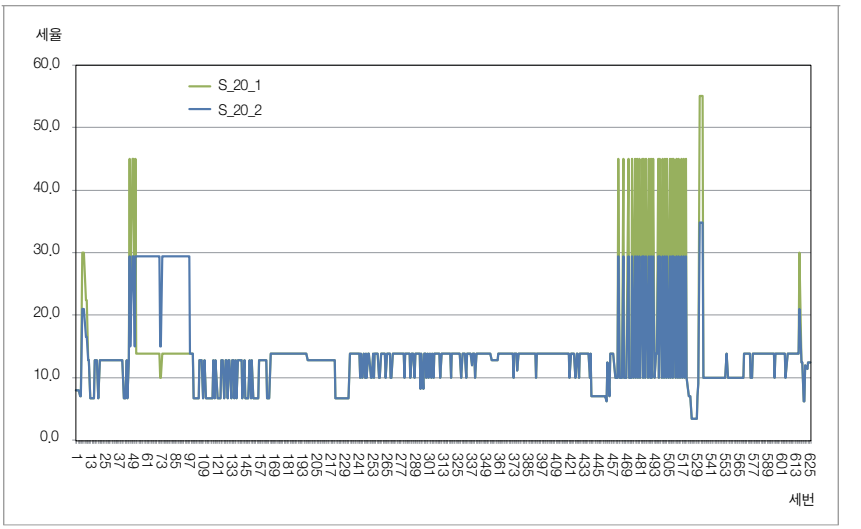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7.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적용 시 영향: 신축성 1과 신축성 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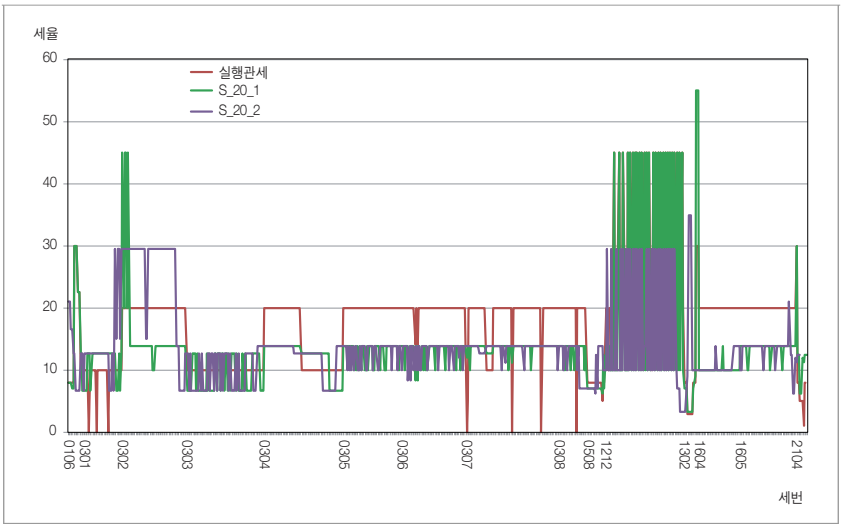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결국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적용 시 평균감축률 측면에서 주어진 두 신축성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소수인 특정 품목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첫 번째 신축성과 좀 더 많은 품목의 관세감축 폭을 축소하는 두 번째 신축성은 최소한 평균감축률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물 관세감축에서 개도국 지위를 활용할 경우, 소수의 특정 품목을 확실히 지킬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품목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킬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한편 스위스 공식 (계수 8)과 (계수 20+신축성)의 차이는 평균감축률 기준으로 약 22%p로 나타나 예상했던 대로 개도국 지위 유지가 높은 관세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규범: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관련 WTO 회원국의 논의동향은 수산보조금 유형 중에서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 IUU 어업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규제한다는 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자 내지 복수국간 협정 차원에서 관련 규범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단 현재로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금지대상 보조금의 유형 및 개도국 예외 등 쟁점사항이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규범화될 것인지, 또는 WTO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다자협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을 도입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범화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두 접근의 차이는 규제대상 수산보조금의 범위 및 개도국에 대한 예외인정범위로 모아진다. 미국 주도의 복수국간협상이 보다 포괄적 범위의 보조금을 규제하려는 동시에 개도국우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 반면 후자의 다자적 접근은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한정되며, 보다 폭넓은 개도국우대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1)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상 대책

미국 주도의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상은 지난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8개국이 채택한 수산보조금 공동성명[79]의 내용 및 TPP 협정의 수산보조금 관련 내용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미국이 제안하는 '과잉어획상태의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란 표현은 금지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유류보조금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복수국간협상 참여국들이 금지대상 수산보조금의 범위와 규제 모두 TPP보다 높은 수준(TPP-plus)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복수국간협상 참여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수국간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일본은 복수국간협상의 규제범위가 TPP 수준의 과잉어획, 과잉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IUU 어업보조금 금지수준을 넘어선 추가규제를 포함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수국간협정의 내용이 TPP 수준과 차이가 없다고 해도 단순히 참여하는 대신 여타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이 가능한 내용이 있어야 복수국간협상에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일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복수국간협상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공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려움이 예상되어 복수국간협상 참여를 미루다가 모든 규율이 만들어진 다음 가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이보다는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상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산보조금의 규제범위 등 기술적인 논의 및 규율제정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과잉어획상태에 있는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규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하고, 실제 그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여 실제 어획

79) WTO(2016b).

활동의 4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 및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안이다. 감축은 각국 정부가 자국에 가장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각국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하도록 하여 이행의 융통성과 동시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UNFCCC의 파리협약 체결 결과 각국이 자국에 맞는 INDC를 공약하고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자국의 형편에 맞게 구체화도록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추는 동시에 정책적 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수산보조금 관련 다자협상 대책

EU를 포함한 일부 WTO 회원국은 미국과 달리 세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복수국간협상보다는 WTO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다자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산보조금 다자협상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다자 차원의 협상에 대한 대처로 DDA 출범 이후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TFA)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다. TFA는 본문에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한 다음, 의무 이행은 부속서에서 경제개발수준에 따라 3개 그룹군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의무화 수준을 규정,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TFA는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유연성(flexibility)으로 인해 성공적인 협상 타결이 가능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다자협상이 진행된다면 유사한 합의 및 타협안 도출을 위해 TFA 모델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적인 의무로서 과잉어획에 영향을 미치며 IUU 어업과 관련된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이행은 국가별 과잉어획 비중 내지 경제개발수준에 따라 차별화하는 규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을 도입함으로써 수산보조금 관련 WTO

회원국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커짐은 물론이고 합의 도출가능성도 커지는 장점이 있다.[80]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브렉시트 및 미국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반무역자유화 정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무역자유화정책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먼저 지금까지의 무역자유화가 눈에 보이는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 위주로 진행된 결과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관세라는 국경장벽 철폐 결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국경 통과는 용이해졌다. 그러나 국경장벽 너머 통관절차나 국내규제라는 또 다른 장벽 앞에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대기업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국내규제를 돌파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 시장접근이 가능해져 무역자유화의 혜택은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위주로 돌아갔다. 결국 통상정책이나 통상협상이 눈에 보이는 국경장벽 철폐에 중점을 둔 나머지 국경 내 또 다른 실질적 장벽인 국내규제 철폐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를 돌파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향후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

80) 다만 이 접근은 개도국의 차별적 의무 이행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각종 규제나 절차, 제도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위한 다양한 국제규제의 완화가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자통상정책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방향의 하나이다.

가) 상품분야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 발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역 및 통관과 관련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하거나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설령 이와 같은 장벽들이 철폐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투명성을 높이면 중소기업의 대응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 발효가 갖는 의미가 크다. 현재 무역원활화는 회원국별 국내절차를 거친 후 의정서 기탁이 진행 중이다.[81]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 및 반출을 촉진하고,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며,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국경 안의 통관절차 및 관련 국내규제의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무역자유화와 보호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무역원활화 협정 의정서 수락으로 협정 발효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나) 서비스분야 무역원활화 협상 추진

한편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중요하다. 현재 서비스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분야의 시장접근보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 관련 국경 너머의 관련 규제 개혁을 의제로 제시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중소기업 서비스시장의 실질적 접근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즉 상품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 국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81) 2016년 12월 현재 103개국 비준 통보, 164개 WTO 회원국의 2/3 수락 시 발효 예정.

다) 소비재 중심의 무역자유화

소비자 측면에서 무역자유화의 혜택은 주로 자본가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격차 확대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정책으로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일반 중산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며, 통상정책으로 이를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통상협상에서 산업용 중간재보다 최종 소비재에 대한 장벽 철폐에 더 큰 관심을 둠으로써 일반적 의미의 소비자후생증대를 추구할 수는 있다.

라) 관세보다 비관세 및 국내규제 (철폐)완화 내지 투명화에 중점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며,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바(서비스 관련 국내규제의 조화), 중장기적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1) 복수국간협정 확산에 대한 대비

WTO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은 WTO의 일부 회원국이 특정 의제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협정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협정이 타결되면 참여국에 한해서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기도 한다.

향후 WTO 협상은 일괄타결방식의 DDA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선진국이 주도하는 복수국간협상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복수국간협상의 확산 이면에는 관심 있는 국가끼리의 협상으로 합의 도출이 DDA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외 참여국 측면에서 개도국들의 협상력이 DDA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선진국 중심의 이해반영이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DDA 협상이 계속된다고 해도 성과 도출 면에서 DDA가 더 이상 적절한 협상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점에서도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다자통상은 복수국간협상 위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복수국간협상 위주이다. 대표적으로 이미 체결된 정부조달협정(GPA)과 2015년 12월 타결된 확대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상품협정(EGA)이나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등도 DDA 협상에 비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복수국간협상 참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복수국간협상이 특정한 의제를 놓고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NAMA에서의 분야별 무세화협상(sectoral)과 다름이 없으며, 이에 따라 향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에서(예를 들면 미국은 화학 등) 새로운 복수국간협상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NAMA 전 분야를 대상으로 복수국간 무세화협상이 가능한 분야 및 그렇지 못한 분야를 사전에 설정해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에서의 관세 감축 내지 철폐는 원산지규정 충족을 위한 별도의 절차 및 조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철폐의 효과가 양자 FTA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2) 복수국간협정을 주도- 상품 외 규범에서도 규제 개선 추진

향후 NAMA 협상이 멈춰진 상태에서 분야별 무세화가 진전되면 우리나라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의 무세화 가능 및 어려운 분야를 선정해서 가능한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다자통상무대에서 수동적 방관자 입장에 서 왔던 우리나라로서는 기존의 전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적극 관철시킬 수 있는 분야에 한정된 시장접근 확대

차원이기 때문에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는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의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 '규제개선'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에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대부분은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친환경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정책수단인 보조금 제공 및 국내사업자에 대한 특혜대우 등은 WTO 무역규범과의 잠재적 상충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엄격한 환경 관련 기술 규제 등은 환경 관련 상품의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산업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국가간 WTO 분쟁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문제는 세계 각국의 동참을 통해 국제적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중심의 국제무역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의 상충으로 인해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목적의 정책조치를 마음 놓고 도입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WTO 협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DDA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협정 개정의 현실적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 무역규범과 환경정책의 상충

GATT 및 WTO 협정을 중심으로 한 무역규범은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이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GATT/WTO 의무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82] 이는 WTO 설립협정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적에 따라 환경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일관적인 입장이라 볼 수 있다.[83]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해석 및 적용 또한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환경 관련 정책조치에 대하여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규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규정을 활용하여 친환경 정책수단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WTO 보조금 협정상 허용보조금의 일환으로 특정 조건하에 환경보조금이 허용된 바 있다.[84] 그러나 허용보조금조항(제8조)은 1999년 말 이 조항의 연장 여부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 도출 실패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실효(失效)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 관련 보조금은 수출연계성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경우 금지보조금으로, 또는 다른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 및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조치가능보조금으로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될 수 있다.[85]

---

82) WTO(1994b), GATT 제20조 서두 및 (g)항.

83) WTO(1994a), WTO 설립협정인 Marrakesh Agreement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allowing for the optimal use of the world's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eking both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o enhance the means of doing so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needs and concerns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

84) WTO 보조금협정 제8.2(c)조에 의하면 다음 경우에 기업의 기존 시설이 새로운 환경규제에 적응하도록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 ① 일시적 일회성 조치 ② 적응비용의 20% 이내인 경우 ③ 지원대상시설의 대체 및 운영을 위한 비용 ④ 보조금 지원은 지원대상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계획과 직접적 연계 및 비례 ⑤ 새로운 설비 및 생산절차를 도입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85)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환경 보존 관련 조치에 대한 GATT 분쟁사례인 미국과 인도 등 간의 새우분쟁(US-Shrimp)에서 제소국인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은 미국이 멸종위기인 바다거북의 보존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탄소세 및 배출허용기준 등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친환경 정책수단이 공식적인 분쟁으로 비화된 바는 없다. 그러나 외국 기업 내지 제품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가 제공될 경우 GATT/WTO 규범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되는 조치로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다자무역규범은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상충하는 내용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을 마음 놓고 도입 및 이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보조금 지급을 다시 허용하는 등 WTO 보조금 규정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정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86]

2)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가) EGA를 통한 환경 관련 상품의 관세 감축 및 철폐

2001년 11월에 채택된 도하 각료선언은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WTO 규범과 다자환경협정(MEA)상 특정 무역의무와의 관계 설정(제31(i)항) ② WTO와 MEA 사무국 간 정기적 정보교환 및 옵서버 지위 부여기준 마련(제31(ii)항) ③ 환경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관세, 비관세 장벽 감축 또는 철폐(제31(iii)항)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87] 이와 관련해 WTO 무역과 환경위원

을 위해 도입한 새우잡이 어망(TED)에 대한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분쟁은 결국 미국의 TED 규정 적용에 따른 결과가 바다거북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국에 적용되는 규제를 수출국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융통성 없이 적용한 점과 수출국간에도 유예기간 및 사전협의 등 차별적 대우를 한 점에서 GATT/WTO 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로 결론이 났다.

86) WTO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3/4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가능한데, 대부분의 개도국은 이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개도국은 WTO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조항인 제8조의 부활을 통해 허용보조금의 일종인 환경보조금을 다시 허용하는 것은 선진국에 더욱 유리하며 개도국에는 이 보조금이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87) 도하 각료선언(2001. 11. 20), WTO(2001),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para 31(i)~(iii).

회(CTE)에서 최근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WTO 복수국간 무역협정인 환경상품자유화협상(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추진을 계기로 논의 진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G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그동안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WTO 규범과 특정 무역의무와의 관계(제31(i)항) 및 정기적 정보교환(제31(ii)항)에 대한 논의가 WTO 내에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제31(iii)항)에 대한 논의는 WTO 다자협상보다는 복수국간 무역협상인 EGA 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EGA 협정은 현재 44개 협상 참여국간 304개의 자유화 품목 리스트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품목 리스트는 2016년 7월 제15차 협상에서 의장이 304개 품목으로 구성된 잠정합의안(landing zone)을 회람한 것으로 현재 품목 리스트 협상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대다수의 참가국들은 자국의 우선순위품목이 제외되고 민감품목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어질 품목 리스트 협상의 기초로 간주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GA 협정은 발효될 경우 WTO의 최혜국대우(MFN)원칙에 따라 감축 또는 철폐되는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양허를 하지 않은 EGA 비회원국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EGA 협정은 비록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향후 WTO 다자통상체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88)]

---

88) 중국은 EGA 협상결과의 MFN 대우원칙 적용에 따른 무임승차문제를 우려, 발효요건 및 무임승차문제에 관한 수정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EGA 발효 후 참가국의 교역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거나 비참가국 1개국의 교역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게 될 경우, 비참가국에 EGA 참여를 요구하며 실패 시에는 비참가국에 대한 MFN 혜택을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안에 미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대신 정보기술협정(ITA) 수준의 임계질량(critical mass) 기준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나) 메가 FTA 등 복수국간협상을 통한 환경 관련 규범 수립

환경 관련 상품의 관세 감축 및 철폐에 대한 논의는 EGA 협상을 통해 진전되고 있지만 환경 관련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는 다자 차원에서는 거의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양국간 체결되는 FTA에서의 환경 관련 규정 및 조항이 포함되어 양국간 환경규범 관련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FTA에 도입되고 있는 환경 관련 규정은 체결국의 경제개발수준 및 기타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환경규정은 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것으로, 체결당사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의 분야와 내용이 다르다. 특히 선진국간 체결되는 FTA는 체결국 각국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 및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환경기준의 조화(harmonization) 노력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과의 FTA는 환경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인데, 이러한 환경규정이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자국 정부에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89] 이에 따라 FTA 환경규정은 권고적인 성격의 조항이거나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형태로 도입되어 있다.

반면 TPP 등 메가 FTA에서의 환경규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FTA 환경규정의 내용 및 이행 측면에서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야생 동식물 거래, 생물다양성, 해양수산자원, 저탄소 경제, 동식물 검역, 환경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등 매우 다양한 환경분야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PP 환경 챕터는 TPP 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되므로, TPP 체약당사국은 환경 챕터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분쟁해결절차로 회부될 수 있다. 특히 TPP 환경 챕터에는 기후변화 관련 조항이 '저탄소 배출 및 자생 경제로의 이행(Transition to a Low Emissions and Resilient Economy)'이라는 제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행위(collective action)가 요구되며 다른 당사국과의 협력

89) OECD(2007), *Environment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pp. 24-27.

및 역량 강화에 동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90] 이외에도 이 챕터는 다양한 협력가능분야로서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도시인프라 개발, 삼림보호 등을 예시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 구체적인 의무내용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TPP 환경규정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되는 다자통상정책의 추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변화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보조금 지원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다자무역규범하에서 환경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국제통상법적 합치성 여부는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WTO의 보조금규정을 최대한 따르는 방향으로 각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보조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다만 WTO 분쟁해결기구는 보조금협정에 근거한 해석과 적용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여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 허용보조금조항을 부활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현안에 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과 WTO 회원국 간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치들이 어디까지 허용될

90) TPP 협정문 제21.15조.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WTO DSB 중심으로 무역규범에서만 논의되고 있는데, UNFCCC 등 환경규범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역규범과 합치하는 환경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 법정에서 일방적인 임시(case-by-case) 판정을 내리게 되어 무역과 환경정책 간 진정한 조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91]

한편 이보다 다소 비공식적인 방안으로 WTO 각료선언문 등을 통한 WTO 회원국 모두의 합의에 기초한 기후변화 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기존 WTO 무역과 환경위원회 및 WTO 회원국에 대한 정기적인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체 등을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도입 및 이행하고 있는 환경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아울러 UNFCCC와 같은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환경조치 관련 공식적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여 환경문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 밖에 기후변화협약상 국가 차원의 공약(INDC 등)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WTO 회원국 간 합의하는 방안, 여타 회원국의 환경조치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평화조항(peace clause)」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92]

오늘날 DDA 등 다자협상 및 WTO의 전통적인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간협정을 통한 다양한 무역 관련 현안의 다자규범화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복수국간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

91) Bacchus(2016), "Global Rules for Mutually Supportive and Reinforcing Trade and Climate Regimes," Policy Options Paper, The E15 Initiative- Strengthening the Global Trade and Investment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 pp. 13-14.
92) *Ibid.*, p. 14.

해볼 수 있다. 최근 TPP 등 메가 FTA, ITA, EGA, TiSA 등을 통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형성되고 있듯,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무역조치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정 및 의무조항 등 규범의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 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도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한 다자 차원의 관세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 다자 및 양자 관세의 조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무역의 60% 이상이 FTA 체결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WTO 차원의 다자관세는 이러한 양자 FTA의 특혜관세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관세감축이 실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당연히 다자협상의 관세감축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운신의 폭도 좁아진다. 그러나 양자 FTA 차원의 특혜관세를 다자 차원의 관세감축협상에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입지는 대폭 향상된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양자 FTA 특혜관세를 다자관세에 반영시키면 대폭적인 관세감축 협의에도 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를 지렛대로 하여 다른 분야에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미 양자 FTA로 인한 교역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는 우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정립할 때 기초인프라로서 다양한 양자 특혜관세를 다자관세와 일치 내지 조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원산지규정 및 관련 무역규범의 조화

원산지규정의 조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FTA별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통일시킴과 동시에 WTO 차원의 원산지규정과도 조화시켜 무역거래비용을 줄이자는 방향은 언제나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이 양자관계에서 지역 또는 메가, 그리고 복수국간 통상으로 그 포함 국가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의 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이 한층 수월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자통상정책 수행의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FTA의 관세 및 원산지규정, 통관 및 무역 관련 규범을 WTO 다자 관세 및 규범과 상호 비교하여 이를 조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양자 및 복수국간 통상이 다자통상과의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이 장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핵심 결과를 요약하는 의미와 함께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의 장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 엄격히 말하면 포스트 나이로비 WTO 협상 대책으로서의 정책 제언과 함께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농업부문은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그 중에서도 시장접근분야는 쌀의 관세화와 맞물려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업에서는 3대 의제 중 수출경쟁이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시장접근과 국내보조만 남아 있고 그 핵심은 관세감축방식과 국내보조감축이 될 것으로 본다.

1) 관세감축방식으로서 평균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를 4차 의장수정안에 기초해 구간별 감축방식을 적용할 경우 평균감축률은 35.4%로 계산된다. 이를 평균관세감축방식으로 전환하면 평균감축률은 Average of Cut 방식 적용 시 35.4%가 되며, Cut of Average 방식 적용 시 43.1%가 된다. 따라서 향후 평균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의 감축률 협상의 출발점은 계산방식에 따라 35~43%가 합리적이다.

한편 기존 구간별 감축은 고율관세감축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반면 평균감축은 자체에 신축성이 내포되어 있어 고율관세감축효과가 구간별 감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즉 고율관세의 비중이 큰 경우 구간별 감축에 상응하는 평균감축률이 커지는 반면 반대로 그 비중이 작으면 평균감축률도 작아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130% 이상 고율관세 비중이 작은 국가는 평균감축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잔여관세수준이 구간별 감축방식 적용 시 잔여관세수준보다 높아진다. 이는 농업부문에서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협상의 목적이라면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목표 달성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평균감축방식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2) 국내농업보조에서는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AMS 사용실적을 보면 주로 쌀, 단일품목에 대한 보조로 사용되어왔다. 향후에도 쌀 소득보전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쌀에 대한 감축보조지급 상한을 최대로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급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감축보조의 경우는 품목별로 신축성 확보, 즉 지급가능 상한선을 최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지급실적은 미미하여(생산액의 3% 이하) 그 기준이 낮아진다 해도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은 작다. 다만 일부 품목은 최소허용보조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최소허용보조가 감축보조(AMS) 계산에 산입되기 때문에 AMS가 갑자기 급증할 수 있다. 따라서 쌀의 경우에서처럼 다시 품목별 감축보조 신축성 확보문제로 되돌아간다. 결국 농업보조에서 핵심은 쌀에 대한 보조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목표로 품목별 보조지급 상한선을 최대로 높이는 전략이 중요하다.

나. NAMA

NAMA도 포스트 나이로비 WTO 협상이 진행된다면 결국 핵심 쟁점인 관세감축 논의로 귀착될 전망이다. 이때 논의의 출발은 스위스 공식이 되겠지만 실제 최종 타결점은 개도국 신축성을 제한하기 위한 평균감축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1) 공산품: 스위스 공식보다는 평균감축이 유리, 단 최소감축률 확보에 중점

우리나라 공산품에 계수 8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할 경우 Average of Cut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감축률은 47.7%(단 평균값 계산 시 무관세품목을 제외할 경우 57.4%로 상향조정)이고 Cut of Average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감축률은 65.8%가 된다. 따라서 NAMA에서 평균관세감축 논의가 재개되면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은 평균감축률 48~57%에서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이행하되 기존 3차 의장수정안과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평균감축률을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8~57% 감축이 기존 3차 의장수정안에서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도국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최소감축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률보다는 최소감축률 확보에 더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수산물 관세감축: 평균감축을 지지하되 동시에 신축성 확보

수산물에 계수 8의 스위스 공식을 대입하면 Average of Cut 방식의 평균감축률은 77.7%, Cut of Average 방식의 평균감축률은 81.7%이다. 공산품과 같이 수산물 관세감축에서 선진국 수준의 평균감축이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 감축률은 약 78~82%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산물 관세감축에서 개도국 입장에 근거하여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① 수산물 세번의 6.5%까지 관세감축을 면제(단 수산물 수입액의

7.5% 초과 금지)하거나 ② 수산물 세번의 14%까지 기준감축률의 50%를 적용(단 수산물 수입액의 16% 초과 금지)하는 융통성이 주어진다.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과 첫 번째 신축성(S-20-1)을 적용할 경우 평균감축률은 55.5%(Average of Cut)로 계산되며, 두 번째 신축성(S-20-2)을 적용할 경우 평균감축률은 55.1%(Average of Cut)로 나타난다. 결국 두 신축성간에 평균감축률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 보호를 위해 해당 품목 감축을 완전히 면제로 하는 경우(신축성 1)와 좀 더 많은 품목에 대해 신축성을 적용하되 대신 그 수준은 완전면제가 아닌 일반감축 폭의 절반을 적용하는 경우(신축성 2) 중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한편 스위스 공식에서 선진국 대우의 (계수 8)과 개도국 대우의 (계수 20+신축성)을 적용한 결과 평균감축률의 차이는 약 22%p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수산분야 고율관세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 공산품에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부담하되 수산물 일부에 한해 개도국 공식을 적용하는 협상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다. 규범: 수산보조금

1)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상 대책: 파리 기후변화협약 합의모델 활용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상은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과 공조하되 적기에 협상에 참여하여 수산보조금 규제범위 등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핵심 사안에 대하여 규율 제정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과잉어획상태에 있는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는 UNFCCC의 파리 기후협약 합의 도출 결과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 목록을 도입하여 실제 그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 모색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감축은 각국 정부가 자국에 가장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각국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하여 이행토록 하면 이행의 융통성과 함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산보조금 관련 다자협상 대책: 무역원활화 합의모델 활용

수산보조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 대신 EU, 브라질 등이 주장하는 DDA 차원에서 다자협상이 진행된다면 지난 2013년 12월 다자합의를 도출한 상품분야 무역원활화(TFA) 모델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적인 의무로서 과잉어획에 영향을 주고 IUU 어업과 관련된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을 도입하되, 이에 대한 이행은 국가별 과잉어획 비중 내지 경제개발수준에 따라 차별화하는 타협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도입은 수산보조금 관련 WTO 회원국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타협의 여지를 크게 만들어 그만큼 합의 도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의무이행기간을 두고 상황에 맞추어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갑작스러운 보조금 금지와 같은 부작용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각종 규제나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실질적 시장접근의 장벽으로서 작용하는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 합의된 상품분야 무역원활화(TFA) 협정의 조기 발효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위해서는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 발효가 중요하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 및 반출을 촉진하고,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며,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 및 관련 국내규제의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품분야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 발효를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 서비스분야 무역원활화 협상 추진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중요하다. 서비스분야에서 시장접근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 관련 규제개혁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러한 서비스부문 무역원활화는 중소기업 서비스시장의 실질적 접근에도 효과적이다. 이에 인도가 주장하는 제안을 중심으로 상품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다) 관세보다 비관세 및 국내규제 (철폐)완화 내지 투명화에 중점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NTB 투명성 제고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NAMA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분야별 무세화가 진전되면 우리나라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단계로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 및 어려운 분야를 선정해, 가능한 분야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다자통상무대에서 수동적 방관자 입장에 서 왔던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적극 관철시킬 수 있는 한정된 분야에서의 시장접근협상이기 때문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는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 '규제개선'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에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무세화가 어려운 분야는 적합한 국내 산업구조정책을 수립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보조금이 중요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관련 보조금은 기존 다자무역규범하에서 통상법적으로 그 적법성 여부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보조정책은 WTO 보조금규정과 최대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립·이행하되, 최근의 WTO 분쟁해결기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해석과 적용에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WTO의 보조금협정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이외에도 잠정적으로 WTO 각료선언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의 하나로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합의문 채택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아울러 기존 WTO 무역과 환경위원회 및 WTO 회원국에 대한 정기적인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체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투명하게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오던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새롭게 추진해야 될 복수국간 통상과의 조화 또한 중요한 어젠다가 아닐 수 없다. 이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역시 당연히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특히 수많은 FTA 발효로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큰 시각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조화 내지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 역시 WTO 다자 차원의 관세와 비교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는 조정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문병기. 2016.「최근 세계무역 부진 원인과 전망」. Trade brief. 국제무역연구원.

박노형, 박성훈. 2010.『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이효영. 2016.「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서정민, 오수현, 박지현, 김민성. 2013.「WTO 발리 각료회의의 평가와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김민성, 송백훈, 이창수. 2014.『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연구보고서 14-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지현. 2009.『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상식, 강내영. 2014.「최근 세계교역 둔화가 우리 수출에 주는 시사점」.『Trade focus』. 국제무역연구원.

중국 해관통계. 2016.

환경부. 2016.『파리협정 길라잡이』.

[영문자료]

Ali Research. 2016. “Future of Global Trad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E-commerce.”

A VoxEU. 2015.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 edited by Hoekamn. Centre fore Economic policy Research.

Bacchus, James. 2016. “Global Rules for Mutually Supportive and Reinforcing Trade and Climate Regimes.” Policy Options Paper.

The E15 Initiative. ICTSD.
Constantinescu, Cristina, Aaditya Mattoo, and Michele Ruta. 2016. "Does the Global Trade Slowdown Matter?"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673, World Bank Group.
Hong, Gee Hee, Jaewoo Lee, Wei Liao, and Dulani Seneviratne. 2016. "China and Asia in Global Trade Slowdown." IMF Working Paper WP/16/105.
ICTSD and World Economic Forum. 2016. "Strengthening the Global Trade and Investment System in the 21st Century: Synthesis Report." The E-15 Initiative.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MF. 2016. 9. "Global Trade: What's behind the slowdown?" *World Economic Outlook*.
____. 2016. 10. *World Economic Outlook*.
OECD. 2007. *Environment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UNCTAD. 2015.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WTD. 2016. 10. 24. *The Oslo Mini-Ministerial*.

[WTO 문서]

WTO. 2001.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20 November)
____. 2005. "Doha Work Programme - Ministerial Declaration - Adopted on 18 December 2005." WT/MIN(05)/DEC. (22 December)
____.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 Rev.4. (6 December)
____. 2015a. "Report by the Chairman, H.E. Mr Wayne McCook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RL/27. (7 December)
____. 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____. 2016a. "Domestic support." JOB/AG/72. (22 June)
____. 2016b. "Fisheries Subsidies - Ministerial Statement on Behalf of Argentina,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nada, Colombia, Costa Rica, Fiji, Haiti, Iceland, Mexico, New Zealand, Norway, Pakistan,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Senegal, Solomon Islands, Switzerland, United States, Uruguay, Vanuatu and OECS Economic Union WTO Members – Revision." WT/MIN(15)/37/Rev.1. (7 January)

____. 2016c. "Possible Elements of Domestic Regulation Disciplines Mentioned at the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 on 16 June 2016." JOB/SERV/236. (28 June)

____. 2016d. "Report to the TPRB from the director-general on trade-related developments." WT/TPR/OV/W/10.

____. 2016e. "Reports on G20 Trade and Investment Measures."

[협정문]

Trans-Pacific Partnership. 2016. http://www.tpp.mfat.govt.nz/text(검색일: 2016. 10. 26).

WTO. 1994a.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04-wto.pdf(검색일: 2016. 10. 26).

____. 1994b.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4-scm.pdf(검색일: 2016. 10. 26).

[신문기사]

"Negotiators Question EU Commitment to Services Deal." 2016.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November 4)

[온라인 자료]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ihoo.or.kr/portal/2013_Portal/measure/international.jsp(검색일: 2016. 10. 19).

외교부. http://www.mofa.go.kr/trade/greengrowth/climatechange/index.jsp?mofat=001&menu=m_30_150_20(검색일: 2016. 10. 20).

IMF. 2016.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6. 10. 5).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검색일: 2016. 10. 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database(검색일: 2016. 10. 5).
UNFCCC, INDC portal. http://unfccc.int/focus/indc_portal/items/8766.php(검색일: 2016. 10. 24).
USTR. 2016. "Joint Statement Regarding Fisheries Subsidies."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09142016_STATEMENT_joint_statement_fisheries_partners_FINAL.pdf(검색일: 2016. 10. 25).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16. 10. 24).

부록

1. 주요국의 관세수준
2. 우리나라 관세 구조와 특징

1. 주요국의 관세수준

가. 전체

□ 세계 전체[93]의 양허관세 평균은 32.8%, 실행관세 평균은 7.9%로 계산됨.

○ WTO의 world tariff profiles 2015 자료에 기초할 때 35개 개도국의 양허관세 평균은 47.5%, 실행관세 평균은 9.4%로 나타난 반면 9개 선진국의 양허관세 평균은 10.3% 실행관세 평균은 4.9%로 계산되었음.

○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관세차이는 평균적으로 양허관세가 약 37.2%p, 실행관세가 약 4.7%p로 나타났으며,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인 water는 선진국의 경우 평균 39.5%, 개도국은 평균 64.8%로 나타났음.

□ 선진국 중 양허관세가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24.0%)와 노르웨이(20.4%)이며, 개도국 중에서 방글라데시(169.3%). 나이지리아(118.3%), 가나(92.5%), 케냐(95.1%), 모리셔스(97.8%) 등임.

○ 실행관세는 선진국 중 노르웨이(7.7%)와 스위스(6.7%)가 높은 편이며, 개도국 중에서는 이집트(16.8%), 방글라데시(13.9%), 아르헨티나(13.6%), 브라질(13.5%), 한국(13.3%), 가나(12.9%) 등이 높은 편임.

93) 여기서의 세계 전체는 분석대상 개도국 35개국, 선진국 9개국의 단순평균을 의미.

부표 1-1.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전체)

(단위: %)

	양허관세 평균 (A)	실행관세 평균 (B)	water	
			(A-B)	(A-B)/A*100
호주	9.9	2.7	7.2	72.7
캐나다	6.7	4.2	2.5	37.3
EU	5.0	5.3	0.0	0.0
아이슬란드	24.0	5.3	18.7	77.9
일본	4.6	4.2	0.4	8.7
뉴질랜드	10.3	2.0	8.3	80.6
노르웨이	20.4	7.7	12.7	62.3
스위스	8.0	6.7	1.3	16.3
미국	3.5	3.5	0.0	0.0
평균	10.3	4.6	5.7	39.5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부그림 1-1.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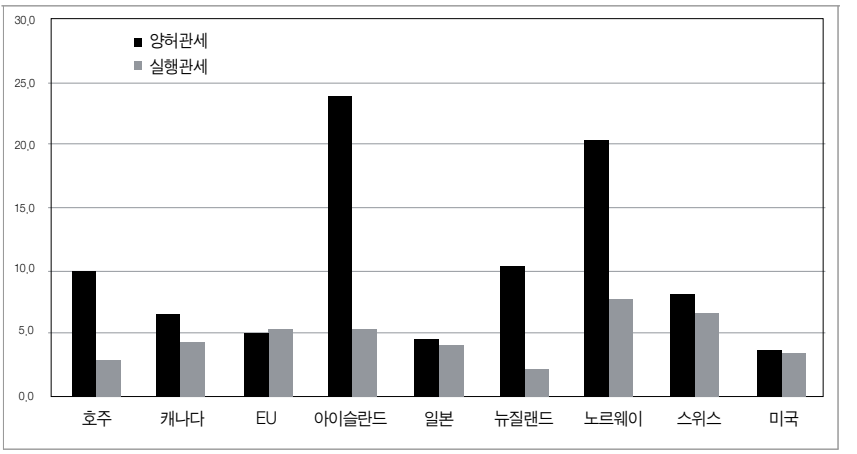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부표 1-2.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전체)

(단위: %)

	양허관세 평균	실행관세 평균	water	
	(A)	(B)	(A-B)	(A-B)/A*100
아르헨티나	31.8	13.6	18.2	57.2
방글라데시	169.3	13.9	155.4	91.8
브라질	31.4	13.5	17.9	57.0
캄보디아	19.1	11.2	7.9	41.4
칠레	25.1	6.0	19.1	76.1
중국	10.0	9.6	0.4	4.0
콜롬비아	42.1	5.8	36.3	86.2
코스타리카	43.1	5.6	37.5	87.0
에콰도르	21.7	11.9	9.8	45.2
이집트	36.8	16.8	20.0	54.3
가나	92.5	12.9	79.6	86.1
온두라스	31.9	5.7	26.2	82.1
인도	48.5	13.5	35.0	72.2
인도네시아	37.1	6.9	30.2	81.4
이스라엘	22.4	4.6	17.8	79.5
케냐	95.1	12.8	82.3	86.5
한국	16.6	13.3	3.3	19.9
말레이시아	22.2	6.1	16.1	72.5
모리셔스	97.8	1.0	96.8	99.0
멕시코	36.1	7.5	28.6	79.2
나이지리아	118.3	11.9	106.4	89.9
파키스탄	60.0	13.4	46.6	77.7
파나마	22.9	6.8	16.1	70.3
페루	29.5	3.4	26.1	88.5
필리핀	25.7	6.3	19.4	75.5
사우디	11.1	5.1	6.0	54.1
싱가포르	9.7	0.2	9.5	97.9
남아공	19.0	7.6	11.4	60.0
대만	6.4	6.5	0.0	0.0
태국	27.8	11.6	16.2	58.3
터키	28.6	10.7	17.9	62.6
우크라이나	5.8	4.5	1.3	22.4
UAE	14.4	4.7	9.7	67.4
우루과이	31.5	10.5	21.0	66.7
베트남	11.5	9.5	2.0	17.4
평균	47.5	9.4	38.1	64.8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부그림 1-2.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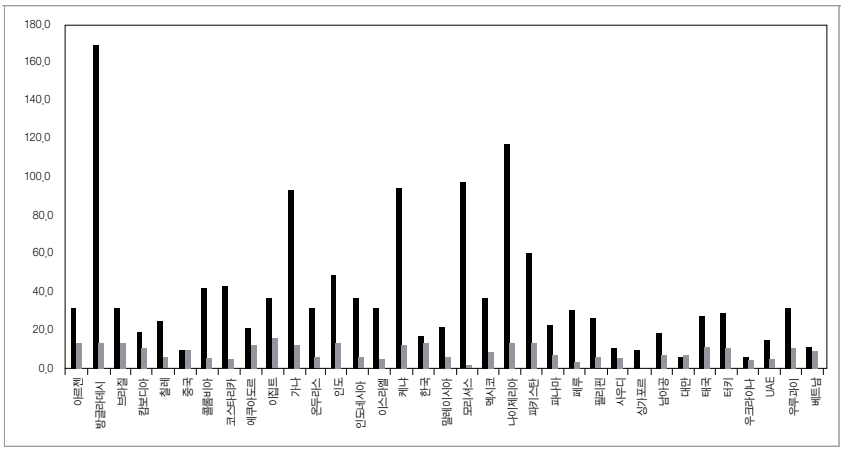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나. 농업

□ 세계 농산물 양허관세 평균은 52.7%, 실행관세 평균은 16.4%로 나타남.

○ 35개 개도국의 양허관세 평균은 67.1%, 실행관세 평균은 16.7%로 나타난 반면 9개 선진국의 양허관세 평균은 39.5% 실행관세 평균은 17.8%로 계산되었음.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관세차이는 양허관세가 약 27.6%p, 실행관세가 약 1.2%p로 나타남.

○ 아울러 선진국 water율은 평균 36.7%, 개도국은 평균 61.8%로 나타났음.

□ 선진국 중 양허관세가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113.6%)와 노르웨이(134.8%)이며, 개도국 중에서는 방글라데시(192.4%), 콜롬비아(91.6%) 이집트(98.3%), 가나(97.1%), 인도(113.5%), 케냐(100.0%), 모리셔스(119.6%), 나이지리아(150%), 파키스탄(95.5%) 등임.

○ 실행관세는 선진국 중 노르웨이(51.2%), 노르웨이(51.2%)와 스위스(36.1%), 아이슬란드(23.0%)가 높은 편이며, 개도국 중에서는 이집트(60.6%), 한국(52.7%), 터키(42.2%) 등이 높은 편임.

□ 선진국 중 water율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79.8%), 뉴질랜드(77.0%), 호주(65.7%), 노르웨이(62.0%) 등이며, 대부분의 개도국 water율은 60% 이상임.

○ 반면 미국, EU, 캐나다 등의 water율은 0에 가까우며, 개도국 중 중국(3.2%), 대만(3.5%), 한국(6.1%), 베트남(14.7%), 우크라이나(15.6%), 태국(19.1%)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water율을 보이고 있음.

부표 1-3.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농산물)

(단위: %)

	양허관세 평균 (A)	실행관세 평균 (B)	water	
			(A-B)	(A-B)/A*100
호주	3.5	1.2	2.3	65.7
캐나다	15.8	15.9	15.9	0.0
EU	12.5	12.2	12.2	2.4
아이슬란드	113.6	23.0	23.0	79.8
일본	18.2	14.3	14.3	21.4
뉴질랜드	6.1	1.4	1.4	77.0
노르웨이	134.8	51.2	51.2	62.0
스위스	46.1	36.1	36.1	21.7
미국	4.8	5.1	5.1	0.0
평균	39.5	17.8	17.8	36.7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부그림 1-3.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농산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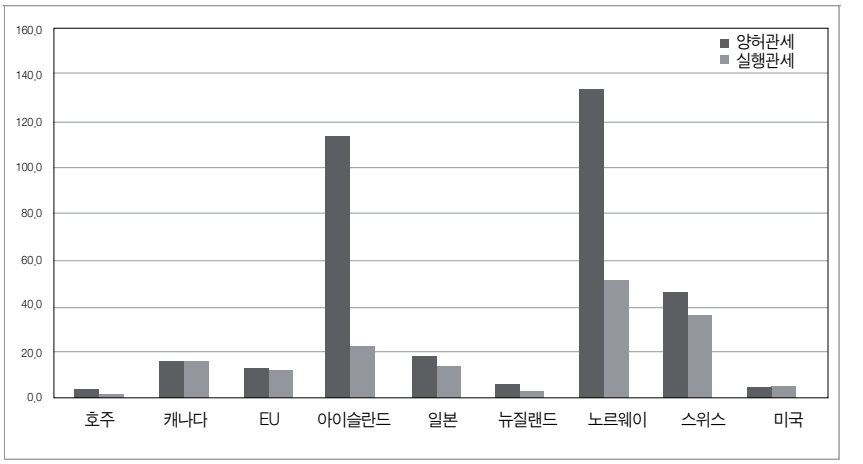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부표 1-4.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농산물)

(단위: %)

	양허관세 평균 (A)	실행관세 평균 (B)	water	
			(A-B)	(A-B)/A*100
아르헨티나	32.3	10.4	21.9	67.8
방글라데시	192.4	16.8	175.6	91.3
브라질	35.4	10.2	25.2	71.2
캄보디아	28.2	14.9	13.3	47.2
칠레	26.1	6.0	20.1	77.0
중국	15.7	15.2	0.5	3.2
콜롬비아	91.6	14.9	76.7	83.7
코스타리카	43.2	11.3	31.9	73.8
에콰도르	25.7	18.3	7.4	28.8
이집트	98.3	60.6	37.7	38.4
가나	97.1	17.2	79.9	82.3
온두라스	32.3	10.2	22.1	68.4
인도	113.5	33.4	80.1	70.6

부표 1-4. 계속

	양허관세 평균 (A)	실행관세 평균 (B)	water	
			(A-B)	(A-B)/A*100
인도네시아	47.1	7.5	39.6	84.1
이스라엘	76.7	12.3	64.4	84.0
케냐	100.0	20.3	79.7	79.7
한국	56.1	52.7	3.4	6.1
말레이시아	61.8	9.3	52.5	85.0
모리셔스	119.6	0.9	118.7	99.2
멕시코	44.5	17.6	26.9	60.4
나이제리아	150.0	15.6	134.4	89.6
파키스탄	95.5	14.6	80.9	84.7
파나마	27.7	12.1	15.6	56.3
페루	30.9	4.1	26.8	86.7
필리핀	35.1	9.9	25.2	71.8
사우디	15.7	5.9	9.8	62.4
싱가포르	23.5	1.1	22.4	95.3
남아공	40.4	8.4	32.0	79.2
대만	17.3	16.7	0.6	3.5
태국	38.7	31.3	7.4	19.1
터키	61.0	42.2	18.8	30.8
우크라이나	10.9	9.2	1.7	15.6
UAE	25.6	5.4	20.2	78.9
우루과이	34.0	9.9	24.1	70.9
베트남	19.1	16.3	2.8	14.7
평균	67.1	16.7	50.4	61.8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부그림 1-4.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농산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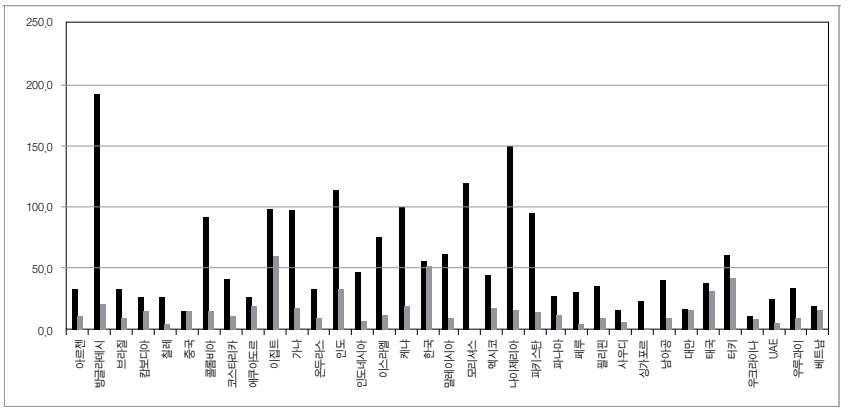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다. NAMA

□ 세계 NAMA 양허관세 평균은 21.5%, 실행관세 평균은 6.5%로 나타남.

○ 35개 개도국의 양허관세 평균은 30.2%, 실행관세 평균은 8.2%로 나타난 반면 9개 선진국의 양허관세 평균은 5.7%, 실행관세 평균은 2.4%로 계산되었음.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관세차이는 양허관세가 약 24.5%p, 실행관세가 약 5.7%p로 나타남.

○ 아울러 선진국의 water율은 평균 43.5%, 개도국은 평균 63.6%로 나타났음.

□ 선진국 중 양허관세가 높은 나라는 호주(11.0%), 뉴질랜드(10.9%), 아이슬란드(9.56%)이며, 개도국 중에서는 케냐(57%), 코스타리카(43.1%), 나이지리아(49.2%), 가나(39.75), 방글라데시(29.7%) 등임.

○ 실행관세는 선진국 중 EU(4.2%), 호주(3.0%)로 높은 편이며, 개도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14.2%), 브라질(14.1%), 방글라데시(13.4%), 파키스탄(13.2%) 등이 높은 편임.

□ 선진국 중 water율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83.9%), 뉴질랜드(79.8%), 호주(72.7%) 등이며, 대부분의 개도국 water율은 60% 이상

○ 반면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의 water율은 0에 가까우며, 개도국 중에서 중국(6.5%), 대만(0.0%), 한국(33.3%), 베트남(19.2%), 우크라이나(19.2%)로 낮은 수준

부표 1-5.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NAMA)

(단위: %)

	양허관세 평균	실행관세 평균	water	
	(A)	(B)	(A-B)	(A-B)/A*100
호주	11.0	3.0	8.0	72.7
캐나다	5.3	2.2	3.1	58.5
EU	3.9	4.2	0.0	0.0
아이슬란드	9.5	2.3	7.2	75.8
일본	2.5	2.5	0.0	0.0
뉴질랜드	10.9	2.2	8.7	79.8
노르웨이	3.1	0.5	2.6	83.9
스위스	2.2	1.8	0.4	18.2
미국	3.3	3.2	0.1	3.0
평균	5.7	2.4	3.3	42.7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부그림 1-5.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NAMA)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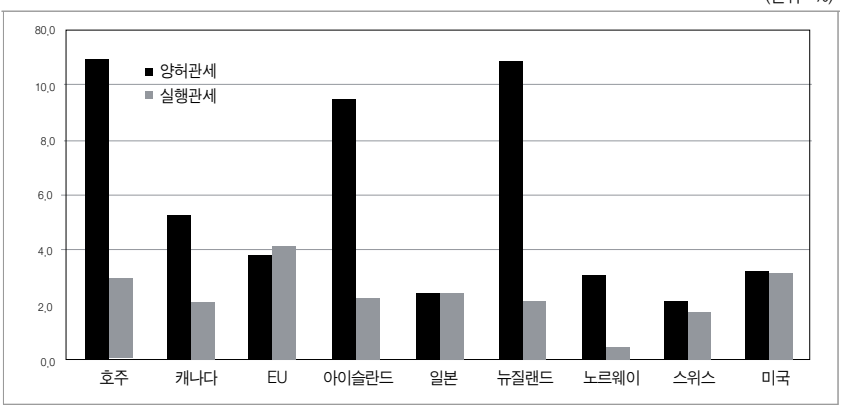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부표 1-6.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NAMA)

(단위: %)

	양허관세 평균 (A)	실행관세 평균 (B)	water	
			(A-B)	(A-B)/A*100
아르헨티나	31.7	14.2	17.5	55.2
방글라데시	39.7	13.4	26.3	66.2
브라질	30.8	14.1	16.7	54.2
캄보디아	17.8	10.6	7.2	40.4
칠레	25.0	6.0	19.0	76.0
중국	9.2	8.6	0.6	6.5
콜롬비아	34.6	4.2	30.4	87.9
코스타리카	43.1	4.6	38.5	89.3
에콰도르	21.1	10.9	10.2	48.3
이집트	27.5	9.5	18.0	65.5
가나	39.7	12.2	27.5	69.3
온두라스	31.8	5.0	26.8	84.3
인도	34.5	10.2	24.3	70.4
인도네시아	35.6	6.7	28.9	81.2
이스라엘	10.7	3.3	7.4	69.2
케냐	57.0	11.5	45.5	79.8
한국	10.2	6.8	3.4	33.3
말레이시아	14.9	5.5	9.4	63.1
모리셔스	27.6	1.1	26.5	96.0
멕시코	34.8	5.9	28.9	83.0
나이제리아	49.2	11.4	37.8	76.8
파키스탄	54.8	13.2	41.6	75.9
파나마	22.1	6.0	16.1	72.9
페루	29.3	3.3	26.0	88.7
필리핀	23.4	5.7	17.7	75.6
사우디	10.5	5.0	5.5	52.4
싱가포르	6.5	0.0	6.5	100.0
남아공	15.7	7.4	8.3	52.9
대만	4.7	4.8	0.0	0.0
태국	25.5	8.3	17.2	67.5
터키	17.0	5.4	11.6	68.2
우크라이나	5.0	3.7	1.3	26.0
UAE	12.7	4.6	8.1	63.8
우루과이	31.2	10.6	20.6	66.0
베트남	10.4	8.4	2.0	19.2
평균	30.2	8.2	22.0	63.6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부그림 1-6.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NAMA)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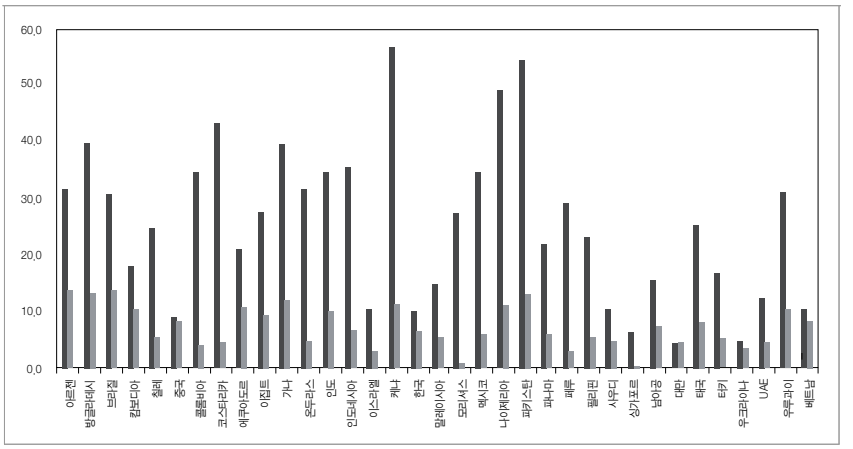

자료: WTO(2015b), *World Tariff Profiles 2015*.

2. 우리나라 관세 구조와 특징

가. 농산물 관세 구조와 특징

□ 농축산물 총세번은 1,616개

○ 농식품부는 2015년 기준으로 1,622개 세번을 농축산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중 5개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산물과 겹침.

- 해양수산부와 겹치는 품목 5개는 다음과 같음.

0106. 12. 1000 고래 또는 돌고래 류, 바다소 등

0106. 12. 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 등

0106. 20. 2000 자라

0210. 92. 1000 육과 식용설육(고래 또는 돌고래 류, 바다소 등)

0210. 92. 2000 육과 식용설육(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 등)

○ 또한 낚시용 떡밥(2309. 90. 9010)은 농산물보다 수산물에 가깝고, 특히 미양허 세번으로 수산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농축산물은 UR 이행으로 쌀을 제외하고 100% 양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농축산물 총세번 수는 1,616개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이 경우 농축산물 양허관세 평균은 71.4%(무관세품목, 총 34개 제외 시 72.7%)이고, 실행관세 평균은 60.5%임(무관세품목을 제외하면 61.7%).

○ 이에 따라 양허세율대비 실행세율의 비는 0.848로 water율은 약 15% 수준이 됨.

□ 주요 농축산물의 양허관세는 50% 이하이며, 최고 양허관세는 887%의 매니옥이며, 100% 이상의 세번은 171개로 전체의 10.6% 수준

○ 10~20% 구간과 20~30% 구간이 최빈 구간

- 10~20% 구간에 총세번의 27.1%인 438개 세번이 분포
- 20~30% 구간에 총세번의 19.6%인 316개 세번이 분포
- 반면 80~100% 구간은 26개 세번(약 1.6%)만이 분포

부표 2-1. 농산물 관세 분포도

(단위: 개, %)

구간	세번 수		누적 세번 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무세 (0세율)	34	2.1	34	2.1
0% 초과 10% 이하	189	11.7	223	13.8
10% 초과 20% 이하	**438**	**27.1**	661	40.9
20% 초과 30% 이하	**316**	**19.6**	977	60.5
30% 초과 40% 이하	127	7.9	1,104	68.3
40% 초과 50% 이하	141	8.7	1,245	77.0
50% 초과 80% 이하	174	10.8	1,419	87.8
80% 초과 100% 이하	26	1.6	1,445	89.4
100% 초과	**171**	**10.6**	1,616	100.0
계	1,616	100.0		

자료: 저자 계산.

부그림 2-1. 농축산물 양허관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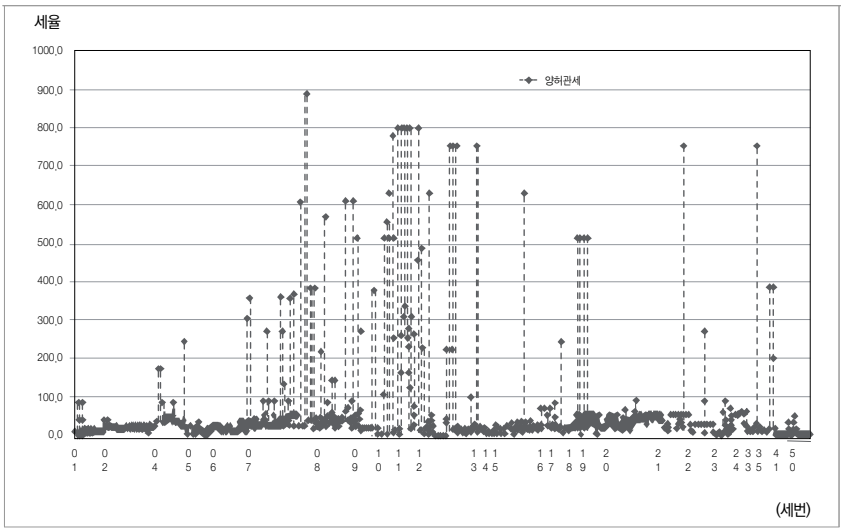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부그림 2-2. 농축산물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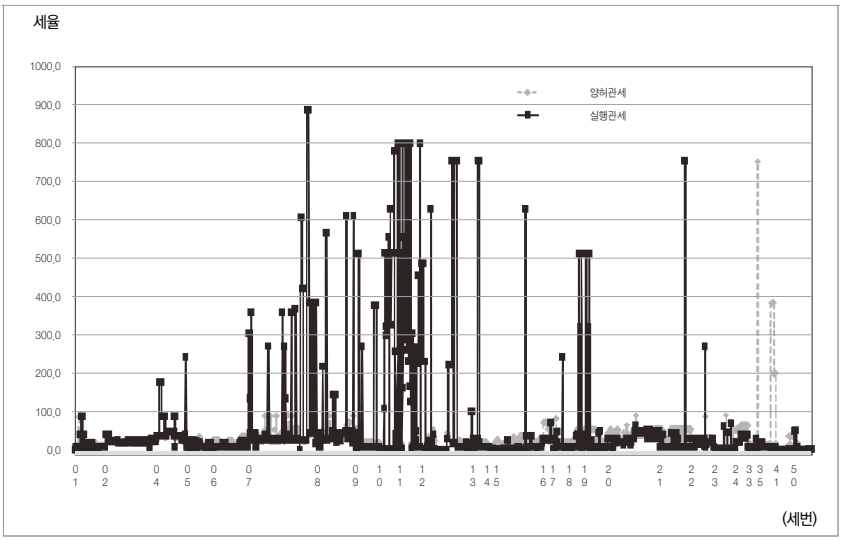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나. 공산품 관세 구조와 특징

□ 공산품 총세번은 HS 10단위(2015년 HK 기준) 9,995개로 파악됨.

○ 농산물 1,616개 및 수산물 632개를 제외한 공산품의 총세번 수는 9,995개로 계산됨.

□ 공산품의 양허율은 농산물보다 낮아 91.8%로 나타남.

○ 9,995개 세번 중 미양허 세번 수는 816개(8.2%), 공산품 양허율은 91.8%로 계산됨.

- 30류(의료용품), 44류(목재류), 84류(원자로, 보일러 등), 85류(전기기기, 녹음기, TV 등)에 미양허 세번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

부표 2-2. 공산품 유별 미양허 세번

(단위: 개, %)

유별		미양허 세번 수(비율)	
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화, 시멘트	3	0.4
26류	광, 슬래그, 회	1	0.1
27류	광물성 연료, 광물류, 역청 물질, 광물성 왁스	52	6.4
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 등의 유기/무기화합물 등	3	0.4
30류	의료용품	91	11.2
33류	정유, 조제향료, 화장품 등	1	0.1
34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등	5	0.6
38류	각종 화공 생산품	2	0.2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5	0.6
42류	가죽제품	28	3.4
43류	모피, 인조모피	25	3.1
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101	12.4
47류	목재나 펄프, 종이	1	0.1
50류	견	1	0.1
68류	돌,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등	10	1.2
69류	도자제품	16	2.0

부표 2-2. 계속

유별		미양허 세번 수(비율)	
70류	유리와 유리제품	27	3.3
73류	철강 제품	2	0.2
82류	비금속 공구, 두구	3	0.4
84류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104	12.7
85류	전기기기, 녹음기, TV 등	228	27.9
87류	철도용 차량 및 부속품	54	6.6
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28	3.4
90류	광학기기, 사진기, 검사기기, 측정기기 등	17	2.1
91류	시계와 부분품	3	0.4
94류	가구, 침대, 조명기구 등	1	0.1
96류	잡품	4	0.5
계		816	100.0

자료: 저자 계산.

□ 공산품 양허관세는 0%, 6.5%, 13.0%에 집중 분포

○ 13.0%가 최빈구간으로 전체 공산품의 32.2%가 분포

□ 공산품 양허관세의 평균은 9.2%(미양허품목 제외)이며, 무관세 세번(총 1,686개)을 제외한 평균은 11.3%임.

○ 최고 관세는 공업용 알코올 합성조제품(3302 10 2019)으로 54%이며, 진단용 시약(3822 00 3057)이 50%임. 실행관세의 단순평균은 5.9%(무관세 세번 제외 시 7.3%로 상승).[94]

○ 이에 따라 양허세율대비 실행세율의 비는 0.638로 water율은 약 36% 수준

94) 미양허품목을 포함할 경우 실행관세 평균은 6.0%(무관세품목 포함), 7.4%(무관세품목 제외)이다.

부표 2-3. 공산품 양허관세 구조

(단위: 개, %)

구간	세번 수		누적 세번 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0세율	1,686	16.9	1,686	16.9
1.0%	59	0.6	1,745	17.5
2.0%	107	1.1	1,852	18.5
3.0%	16	0.2	1,868	18.7
5.0%	454	4.5	2,322	23.2
5.5%	642	6.4	2,964	29.7
6.5%	1,484	14.8	4,448	44.5
7.0%	1	0.0	4,449	44.5
7.5%	4	0.0	4,453	44.6
8.0%	208	2.1	4,661	46.6
9.0%	18	0.2	4,679	46.8
10.0%	374	3.7	5,053	50.6
13.0%	3,221	32.2	8,274	82.8
13.1%	7	0.1	8,281	82.9
15.0%	18	0.2	8,299	83.0
16.0%	455	4.6	8,754	87.6
18.0%	6	0.1	8,760	87.6
19.7%	1	0.0	8,761	87.7
20.0%	15	0.2	8,776	87.8
22.5%	1	0.0	8,777	87.8
30.0%	189	1.9	8,966	89.7
35.0%	209	2.1	9,175	91.8
40.0%	2	0.0	9,177	91.8
50.0%	1	0.0	9,178	91.8
54.0%	1	0.0	9,179	91.8
미양허	816	8.2	9,995	100.0
계	9,995	100.0		

자료: 저자 계산.

부그림 2-3. 공산품 양허관세 구조: 관세수준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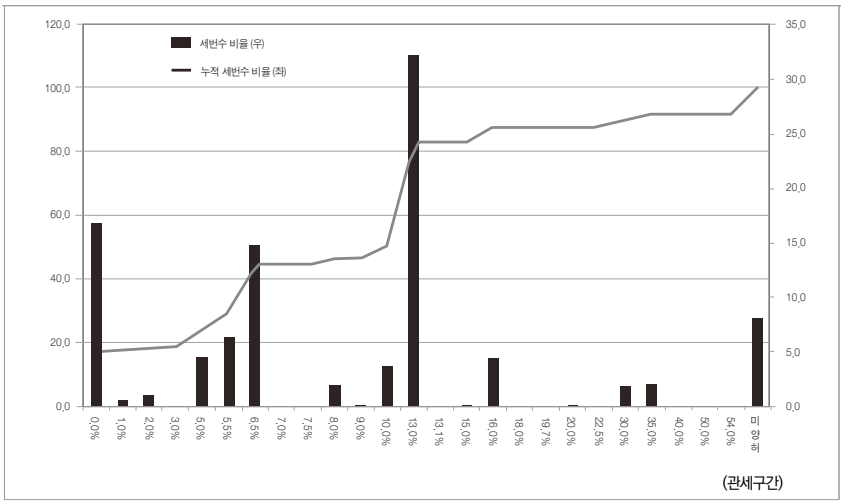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부그림 2-4. 공산품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구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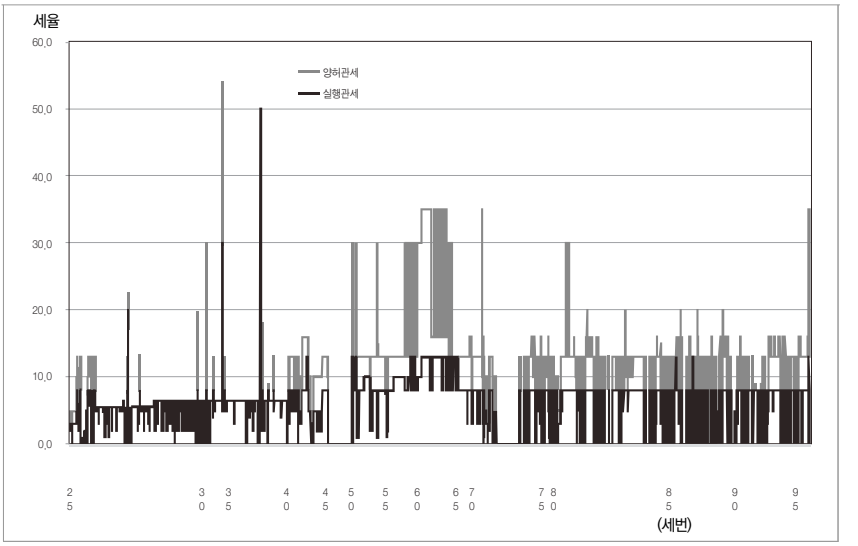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다. 수산물 관세 구조와 특징

□ 수산물 총세번은 HS 10단위(2015년 기준) 632개

○ 단초 631개에서 농산물에서 이전된 낚시용 떡밥 추가

□ 수산물의 양허율은 약 37%

○ 총 632개 세번 가운데 미양허 세번 수는 400개(63.3%)로 양허율은 36.7%

- 0302(신선/냉장 어류), 0304(어류 피레트),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 1605(조제 연체동물 등)에서 미양허 세번이 많음.

부표 2-4. 수산물 미양허 세번 개수 및 분포

(단위: 개, %)

호	품명	세번 수	비율
0301	활어	28	7.0
0302	**신선 또는 냉장 어류**	**51**	**12.8**
0303	냉동 어류	29	7.3
0304	**어류의 피레트, 기타 어육**	**56**	**14.0**
0305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어류	37	9.3
0306	**갑각류**	**43**	**10.8**
0307	**연체동물**	**76**	**19.0**
0308	수생 무척추동물	20	5.0
0511	기타 어류 생산품	1	0.3
1212	해초류	4	1.0
1603	어류 추출물, 즙	3	0.8
1604	조제한 어류, 캐비어 대용물	1	0.3
1605	**조제한 연체 및 수생무척추동물**	**44**	**11.0**
2106	기타 어류 조제품	2	0.5
2309	낚시용 떡밥	1	0.3
2501	천일염, 식염 등	4	1.0
계		400	100.0

자료: 저자 계산.

□ 수산물 양허관세는 10%, 20%에 집중 분포

○ 20.0%가 최빈구간으로 전체 수산물의 17%가 분포

□ 수산물 양허관세의 평균은 19.3%(미양허 세번 제외)이며, 무관세 세번은 없음.

○ 최고 관세는 45%이며, 최저 관세는 4%임.

○ 실행관세의 단순평균은 18.6%(미양허 세번 제외)이며, 미양허 세번을 포함할 경우 17.8%

○ 이에 따라 양허세율대비 실행세율의 비는 0.962로 water율은 약 3.8% 수준

부표 2-5. 수산물 양허관세구조

(단위: 개, %)

구간	세번 수		누적 세번 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4.0%	5	0.8	5	0.8
9.0%	3	0.5	8	1.3
10.0%	**57**	**9.0**	**65**	**10.3**
11.0%	20	3.2	85	13.4
13.1%	3	0.5	88	13.9
14.0%	2	0.3	90	14.2
16.4%	1	0.2	91	14.4
20.0%	**107**	**16.9**	**198**	**31.3**
22.5%	2	0.3	200	31.6
30.0%	4	0.6	204	32.3
45.0%	28	4.4	232	36.7
미양허	**400**	**63.3**	**632**	**100.0**
계	632	100.0		

자료: 저자 계산.

부그림 2-5. 수산물 양허관세: 관세구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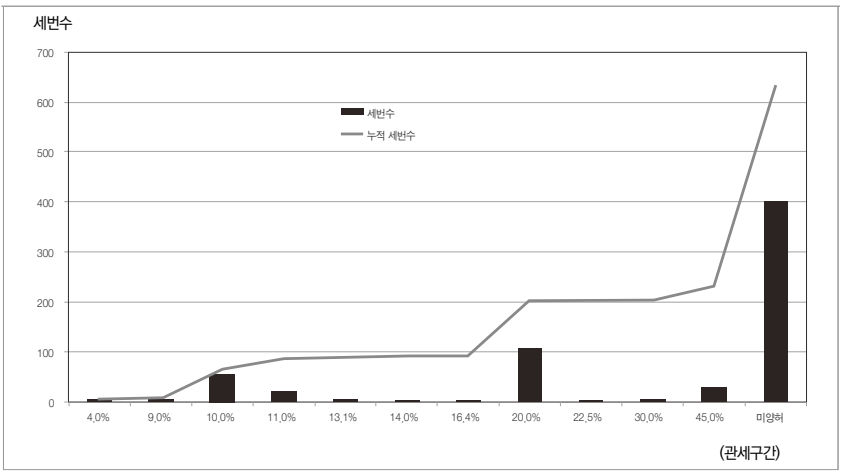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부그림 2-6. 수산물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구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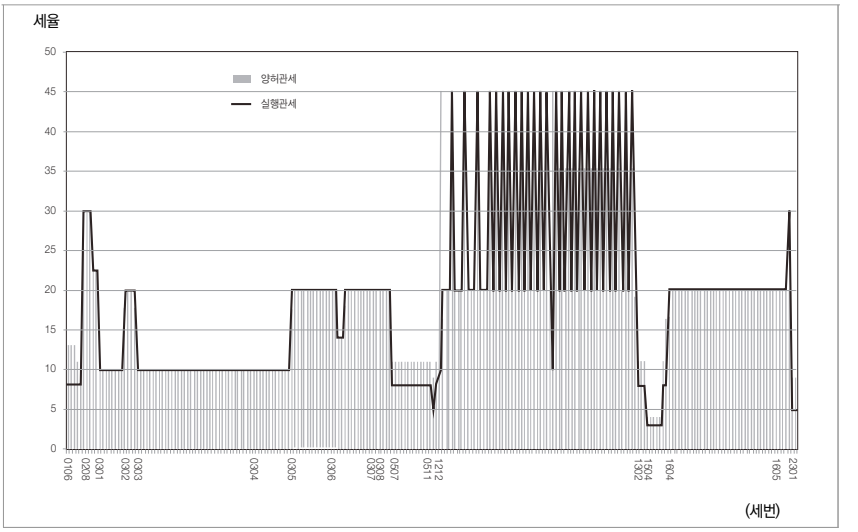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Executive Summary

Korea's Multilateral Trade Polices in the Changing Global Trade Landscape

SUH Jin Kyo, LEE Hyo Young, PARK Ji Hyun, LEE Joun Won, and KIM Do Hee

The WTO's Tenth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Nairobi on December 2015, concluded with the adoption of the "Nairobi Package", several ministerial decisions on agriculture, cotton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The Nairobi Package includes a historic decision to eliminate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the most important reform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agriculture since the WTO was founded. The biggest disagreement among WTO members, however, goes beyond specific substantive issues: it is about the future of the Doha agenda and the WTO's negotiating function itself. While developing countries wished to continue with negotiations, industrialized nations, chief among them the United States, called for an end to the Doha Round. The Nairobi Ministerial Declaration also acknowledges that WTO members "have different views" on the future of the Doha Round negotiations but notes the "strong commitment of all members to advance negotiations on the remaining Doha issues".

In this situation,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since recent decades. First, trade growth has been anaemic since 2010. Already before the 2008 Global Crisis hit, the rate of growth of the ratio of global trade to GDP had slowed considerably. Most recent data show trade values declining. Second, plurilateral negotiations are rapidly widespread in the WTO. In particular, developed members have pushed for more sectoral deals like the ITA-II. Currently, a similar deal on tariff reductions for environmental goods is being negotiated. More sectoral tariff liberalization of this sort might be a good area to pursue. Along the same lines, the trade in services talks going on in Geneva could be brought formally into the WTO framework.

Third, at the Paris climate conference (COP21) in December 2015, 195 countries adopted the first-ever universal, legally binding global climate deal, which is expected to affect a significant impact on global trade. At the heart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re national-level plans, called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lthough these INDCs are voluntary, they are considered a critical first step for an agreement designed to progressively ratchet up national commitments to collectively limit a global temperature rise to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age levels. It is now time that we have to design a harmonization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s.

Finally, increasing anger over globalization would rapidly spread. The unhappiness is evident in Britain's vote in June 2016 to leave the European Union and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of Republican Donald Trump.

Under the above situations,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s new directions of Korea's multilateral trade policy. First, New multilateral trade policies should aim to spread benefits of trade liberalization out whole people, particularly focusing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nd the middle class. Small businesses often find the playing field for trade is not level. While the market is generally open with no tariffs, small businesses face a strong thicket of domestic regulations and non-tariff barriers, which are hardly to be overcome by SMEs.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o effectuate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t 2013 Bali Ministerial as soon as possible.

Second,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proliferation of plurilateral negotiations led by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WTO now reaching 164 members, we will rarely agree on all aspects of even one issue. That means we will likely also have to be flexible on who participates. In some cases, we will have to work on trade deals between smaller groups of countries as well—so-called plurilateral agreements. At the same time, it is highly projected that various plurilateral negotiations appear in near futur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 since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S. pursued continuously several plurilateral negotiations such as EGA, TiSA, Fishery subsidies. Prior to joining the plurilateral negotiations, a detailed examination for the economic impacts of plurilateral negotiations should be completed.

Third, it should fully consider free trade's negative impact on climate. Climate change is the biggest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has had to tackle to date.

Korea joined 175 countries in signing the United Nations Paris climate agreement setting a path forward to reduce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Thus, it is time that we should think how to harmonize trade polici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We have to think about environmental subsidies as green subsidies, which are allowed in the WTO system.

Finally, Korea also should pursue the harmonization among bilateral, plur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policies. Particularly, long-run multilateral trade policies need to pursue the harmonization of preferential ROOs consistent with WTO rules.

To break the current deadlock of WTO negotiations,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must commit to working together to prevent the re-emergence of protectionism, and strengthening of the rules based trading system, in a way that is fair, development oriented and inclusive. This is the only basis to resolve the current crisi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create a more secure and peaceful world. Losing the WTO as an effective forum for trade liberalization would be a setback for free trade. Despite its existing successes, there is much more the WTO could achieve, as trade liberalization is most beneficial when carried out multilaterally. It is therefore in the interests of all governments to make the WTO work by committing to trade liberalization in relation to their own protectionism. Trade is critical to development and growth. The world needs a WTO that can effectively develop global rules on the issues that matter to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Whether Doha is dead or alive, the WTO needs to spur growth and support development.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이현태 · 나수엽 · 조고운 · 오윤미 ·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경훈 · 최혜린 ·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이동은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 임수호 · 최장호 · 이효영 · 최유정 · 최지영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 · 임수호 · 이정균 · 임소정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16-11 한 ·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곽성일 · 정재완 · 김제국 · 신민이 · 라미령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웅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신주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노수연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김원기 · 윤여준 · 천소라 · 김종혁 ·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흥종 외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김흥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홍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 · 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얀

■ 2015년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림 ·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15-12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15-13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15-26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 서은숙 · 빈기범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 김한성 · 이홍식 · 강문성 · 송백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15-28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이순철 · 김완중

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15-29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 이미정 · 조희문 · 권정인 · 김혜민

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15-30 한 ·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 한홍열 · 윤성욱 · 변현섭 · 박지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15-31 21세기 한 · 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정경원 · 조구호 · 신정환 · 김원호 · 문남권 · 정기웅 · 하상섭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15-32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원동욱 · 성원용 · 김재관 · 백준기

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15-33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 · 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 박복영 · 김용복 · 박철형 ·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15-34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 윤택동 · 이성준 · 이재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15-35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 황규득 · 장용규 · 서상현 · 허서희 · 육숙희 · 최두영

15-36 중국 ·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임호열 · 김영찬 · 방호경 · 김준영 · 최필수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15-37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 / 양문수 · 이석기 · 김석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장형수 · 박해식 · 박춘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15-39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15-40 중 ·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찐저 · 쉬원지 · 위즈쌴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15-41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이누이 토모히코 · 권혁욱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15-42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 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 2014년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 ·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4-23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14-26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14-27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 진징이(金景一) · 진창이(金强一) · 삐야오인쩌(朴恩哲)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14-28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韓国統一と日本経済) / 후카오 쿄지(深尾京司) · 이누이 토모히코(乾友彦) · 권혁욱(権赫旭)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14-29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Анализз атративыгоддляр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 제빈(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 스베틀라나 수슬리나(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14-30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 성한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14-31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 강문성 · 김형주 · 박순찬 · 이만종 · 이영훈 · 이종화 · 이홍식 · 편주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14-32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 전재성 ·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14-33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 선주연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최유정

서진교(徐溱敎)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메릴랜드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 석 ·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jksuh@kiep.go.kr)

저서 및 논문

『포스트 발리 DDA협상의 전개방향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공저, 2014)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공저, 2013) 외

이효영(李效映)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hy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Remedying' the Remedy System for Prohibited Subsidies in the WTO: Reconsidering its Retrospective Aspect," Asian Journal of WTO and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10(2), 2015, 423-463.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공저, 2014) 외

박지현(朴芝賢)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h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공저, 2014)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공저, 2013) 외

이준원(李準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wlee2@kiep.go.kr)

저서 및 논문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공저, 2015)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공저, 2014) 외

김도희(金度希)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조지타운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연구원
(現, E-mail: dh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TPP 국영기업/지정독점 유보전략 연구」(공저, 2016)
「한 · 미 FTA 3년의 이행현황과 쟁점」(공저, 2015)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16-04

Korea's Multilateral Trade Polices in the Changing Global Trade Landscape

SUH Jin Kyo, LEE Hyo Young, PARK Ji Hyun
LEE Joun Won and KIM Do Hee

세계적으로 반무역자유화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무역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복수국간협상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으로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나타난 주요한 변화를 고려하여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단기 DDA 협상대책과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ISBN 978-89-322-1619-5
978-89-322-1072-8(세트)

정가 7,000원